



발 간 등 록 번 호
11-1210000-000126-14

공익법인 세무안내

2019. 2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 머리말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익사업에 힘쓰고 계시는 공익법인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공익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공익법인에게 다양한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한편,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납세협력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최근 공익법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조세지원제도 및 납세협력의무의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한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가 공익법인의 세무처리와 납세협력의무 이행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납세서비스와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2019. 2.

법인납세국장 이 준 오

목 차

I | 공익법인이란

- 1. 공익법인의 개념 20
- 2. 공익법인 등의 범위 20
- 3.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 29

II | 공익법인과 세금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지원 36
- 2. 수익사업이 있는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44
- 3. 토지 등 양도소득과 관련한 내용 77
-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지원 82
- 5. 출연자의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 과세 86

III |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 1.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의무 88
- 2.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90
- 3.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93
- 4.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 의무 95
- 5.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 101
- 6.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102
- 7. 공익법인 등의 회계기준 적용의무 106
- 8.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보관·제출 의무 107
- 9.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 109

목 차

IV |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1.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112
2.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121
3.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	127
4. 주식의 취득 및 보유시 지켜야 할 일	136
5.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시 지켜야 할 일	157
6.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 금지	160
7. 자기내부거래 시 지켜야 할 일	161
8.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 제공 금지	164
9. 공익법인 해산시 지켜야 할 일	165

V | 기부금단체

1. 공익법인과 비교	168
2. 기부금의 개념	168
3. 기부금단체의 범위	169
4. 기부금단체의 의무사항	173
5. 기부금단체 사후관리	176
6. 주무관청과 국세청간 협조	181

VI | 부 록

1.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서류	184
2.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활용실적 공개	184
3. 공익법인의 제출서류	185
4. 출연재산 보고서 서식	186
5. 결산서류 등 공시 서식	201
6.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서식	225
7.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서식	237
8.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서식	239
9. 기타 공익법인 관련 서식	242
10. 출연재산 보고 등 전자신고 서비스	243
11. 결산서류 등 공시 및 기부금공개시스템	244

• • 일러두기 • •



편의상 현행 세법령 명칭을 아래와 같이 약어로 표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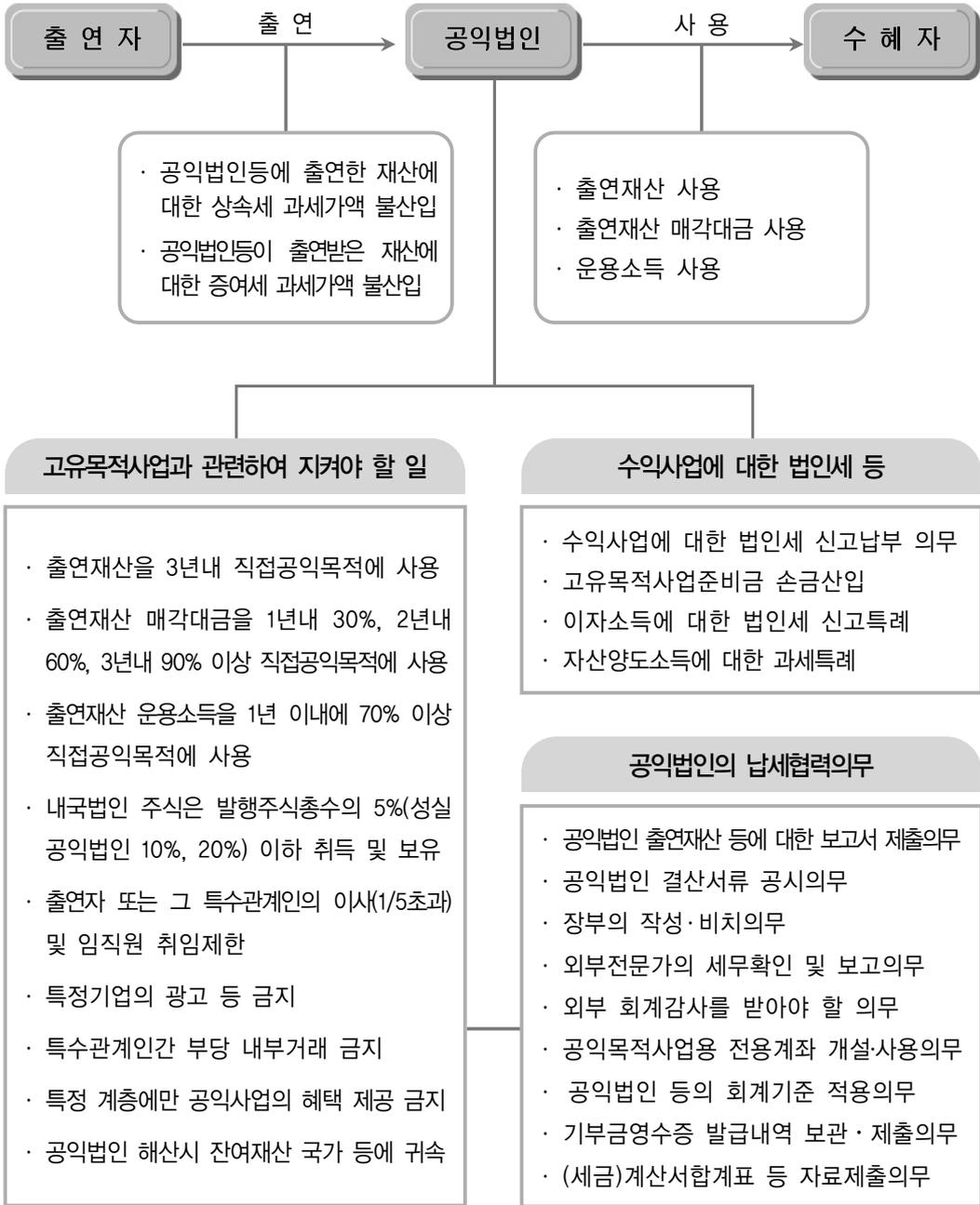


- 국 기 법 국세기본법
 - 국 기 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 법 법 법인세법
 - 법 인 령 법인세법 시행령
 - 법 규 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 법 통 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 소 법 소득세법
 - 소 령 소득세법 시행령
 - 소 규 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 부 법 부가가치세법
 - 부 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부 규 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부 통 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 상 증 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 증 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상증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상증통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 ⇨ <적용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 상증법 §48 ② 4호



본 책자에 실린 세법령 조문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제처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찾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익법인의 납세업무 개요



※ 고유목적사업 :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

2. 공익법인 세무안내

공익법인 세무일정(예시:12월말 법인)

월	의무 사항과 기한	의무이행 대상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1/25) ◦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교부한 경우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산서합계표 제출(매년 2/10) 	계산서를 수취 또는 교부한 경우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3/31)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결과 보고(3/31)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3/31)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 ☞ '1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의료법인, 정부로부터 인·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단체 등도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등 보고 (2년마다 3/31까지) ☞ '1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3/31)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산서류 등 공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 종교단체 제외(자율공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4/25)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제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7/25) ◦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교부한 경우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10/25)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익법인 남세영력 의무

의무사항	관련 법령	내 용	의무위반시 가산세
보고서 등 제출 의무 ☞ p.88	상증법 §48 ⑤, §78 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출연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 (제출) 결산에 관한 서류, 공익법인 출연 재산 등 보고서 ·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공익법인보고서 제출 	미제출 · 불분명금액 관련 증여세액 x 1% (5천만원 한도)
결산서류 등 공시 의무 ☞ p.90	상증법 §50의3, §78 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 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 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게재 ☞ 홈택스(www.hometax.go.kr) > 공익법인 공시(우측상단) > 결산서류 등 공시 	시정 요구(1개월 이내 공시, 오류 시정)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자산총액 x 0.5%
장부의 작성 · 비치 의무 ☞ p.93	상증법 §51, §78 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한 장부 작성하고 관계 증명서류와 함께 10년간 보존 	(수입금액+출연재산) x 0.07%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보고 ☞ p.95	상증법 §50, §78 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 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 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 (제출)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 내역 등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제출 ·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MAX (①,②) ① (수입금액+출연재산) x 0.07% ② 100만원

의무사항	관련 법령	내 용	의무 위반시 가산세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 ☞ p.101	상증법 §50 ③, §78 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인 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단, 종교, 교육단체는 제외) · (제출) 감사보고서 ·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수입금액+출연재산) × 0.07%
전용계좌 개설 · 사용의무 ☞ p.102	상증법 §50의2, §78 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 · (기한) 최초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개설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사용금액의 0.5% ◦ 미신고시 MAX(①,②) ① 공익수입금액 × 0.5% ② 대상거래금액 × 0.5%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의무 ☞ p.106	상증법 §50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외부 회계감사의무, 결산서류 공시의무 이행시 기획재정부 「공익법인 회계기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회계기준 적용(의료법인, 학교법인 제외)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제출의무 ☞ p.107	법법§112의2, 법법 §75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 · (제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에 제출, 5년간 보관 · 미작성·미보관시 불성실기부금 수령 단체 명단공개 대상(국기법§85의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 2% ◦ 명세서 미작성 금액 × 0.2%
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 ☞ p.109	법법§120의3, 법법 §121, 법법 §75의8, 부법 §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계산서를 수취 또는 교부한 경우 · (제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 (기한)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 · 국가·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수익사업부분 제외)은 가산세 적용 제외 	◦ 미제출한 공급가액 × 0.5%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의 무 사 항	관 련 법 령	의 무 위 반 시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p.112 재산을 출연받은 때에는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여야 함	상증법§48②1호 상증령 §38	◦ 증여세 부과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 3년내 미사용금액에 부과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p.121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상증법§48 ② (4·5호) 상증령§38④⑦ 상증법§78⑨	◦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 90%에 미달 사용한 금액에 증여세 부과 ◦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미달 사용시 가산세 부과 ☞ 미달사용한 금액의 10%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p.127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상증법§48 ② 3·5호 상증령§38⑤⑥ 상증법§78⑨	◦ 증여세 부과 $\text{출연재산평가액} \times \frac{\text{목적외사용금액}}{\text{운용소득금액}}$ ◦ 가산세 부과 운용소득금액의 70%에 미달 사용한 금액의 10%
주식취득 및 보유시의 지켜야 할 일 ☞ p.136		
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10%, 20%*) 초과 금지	상증법 §48 ① 상증령 §37	◦ 증여세 부과 초과하는 가액에 부과
나.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등의 5%(10%, 20%*) 초과 금지	상증법 §16 ② 상증법 §48②2호 상증령 §37	◦ 증여세 부과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
다. 5% 초과 보유주식에 대한 매각의무 '96. 12. 31. 현재 동일한 내국법인에 대한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기한까지 매각하여야 함 · 5%~20% 이하 : 3년 이내('99. 12. 31.) 처분 · 20% 초과 : 5년 이내('01. 12. 31.) 처분	상증법 §49 상증법 §78 ④	◦ 가산세 부과 5% 초과 보유주식의 매사업연도말 현재의 시가 × 5% (부과기간 : 10년) ◦ 성실공익법인 등은 제외

* '08. 1. 1. 이후 출연·취득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에 적용('17. 7. 1. 이후부터는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 등에 적용)
 ** '18. 1. 1. 이후 출연받은 주식 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식 등을 출연받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에 적용

의 무 사 항	관련법령	의무위반시
<p>라.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한도 총재산가액 중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30%(50%) 초과 금지 * 외부감사, 전용계좌개설·사용, 결산서류 공시 이행하는 경우</p>	<p>상증법 §48 ⑨ 상증법 §78 ⑦</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산세 부과 30%(50%) 초과 보유 주식의 매사업연도말 현재의 시가 × 5% ◦ 성실공익법인 제외
<p>마. 성실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의무 사용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등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 등은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 5% 초과 : 출연재산가액 1% 이상 · 10% 초과 : 출연재산가액 3% 이상</p>	<p>상증법 §48 ⑦호 상증법 §78 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산세 부과 (사용기준금액 - 직접 공익목적 사용금액) × 10%
<p>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시 지켜야 할 일 ⇨ p.157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료법인 제외)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으로 취임 금지</p>	<p>상증법 §48 ⑧ 상증법 §78 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산세 부과 기준 초과한 이사등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간접경비 상당액 전액
<p>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 금지 ⇨ p.160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 금지</p>	<p>상증법 §48 ⑩ 상증법 §78 ⑧</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산세 부과 ㄱ. 신문, 잡지 등 ⇨ 광고, 홍보매체비용 ㄴ. 팸플렛·입장권 등 ⇨ 행사비용 전액
<p>자기내부거래시 지켜야 할 일 ⇨ p.161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수익 금지</p>	<p>상증법 §48 ③ 상증법 §3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세 부과 ㄱ. 무상사용 ⇨ 출연재산가액에 부과 ㄴ. 낮은가액으로 사용 ⇨ 차액이 증여가액
<p>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 제공 금지 ⇨ p.164 출생지·직업·학연 등 특정계층에만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봄</p>	<p>상증법 §48 ② 8호 상증법 §38 ② 2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세 부과 특정계층에 제공된 재산가액·이익이 증여가액
<p>공익법인 해산 시 지켜야 할 일 ⇨ p.165 공익사업을 종료하고 해산 시 그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켜야 함</p>	<p>상증법 §48 ② 8호 상증법 §38 ① 1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세(법인세) 부과 국가 등에 귀속하지 않은 재산가액



공익법인 등이 유익할 사항

- 최근 주요 세법개정 내용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① 공익법인의 범위 정비(상증령 § 12)

- 공익법인의 범위 합리화
 - * '19. 1. 1. 이후 적용 (단, '18.12.31.에 舊상증령 §12 5호~8호 및 11호에 해당하는 법인은 '20.12.31.까지 공익법인 지위 유지)

② 공익법인 공시대상 서류 추가(상증법 § 50의3)

-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결산서류 등 공시 의무 이행시 회계감사 보고서도 공시
 - * '19. 1. 1. 이후 공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③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신고 법인에 대한 신고기간 부여(법률 제8828호 상증법 부칙 § 13)

- 소규모 공익법인에게 전용계좌 신고기간 부여
 - '17년 또는 '18년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19. 6. 30.까지 전용계좌 신고 시 가산세 면제

④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준 마련(상증법 § 50의4)

- 회계감사 및 결산서류 등 공시 의무 이행시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함
 -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등은 해당 근거 법률에 따른 회계기준 적용 가능
 - * '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단, '18. 1. 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의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20억원 이하인 공익법인과 '18. 1. 1.부터 '18.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신설되는 공익법인은 '18. 1. 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와 그 다음 회계연도에는 단식부기를 적용할 수 있음)

⑤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 강화(상증령 § 38 ④)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등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실적에서 제외
 - * '19. 2. 12.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⑥ 자기내부거래 산정 시 공익법인의 출연받은 재산 범위 명확화 (상증법 § 48 ③)

- 자기내부거래 산정 시 출연받은 재산의 범위에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도 포함
- * '19. 1. 1. 이후 적용

⑦ 성실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의무지출 강화 (상증법 § 48 ②, § 78 ⑨)

- 주식 5%초과 10%이하 보유한 성실공익법인은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1% (주식 10%초과 20%이하 보유한 성실공익법인은 3%)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의무화
- 미사용한 경우 가산세 부과(미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10)
- * '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18. 2. 13. 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⑧ 공익법인 자기내부거래 관련 대가 범위 등 합리화(상증령 § 39 ②,③)

- 자기내부거래 제외 사유 추가
- 출연 부동산을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경우는 과세 제외
- 정상적인 대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① 상증령 §32 ③
 - ② 법령 §52 ②에 따른 시가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 있는 금액
- 증여세 과세가액 보완
- 정상적인 대가(①, ②) 중 적은 금액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에 과세
- * '18. 2. 13.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⑨ 산학협력단 주식보유기준 명확화(상증령 § 37 ⑥)

- 산학협력단 등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의 주식보유한도 계산방법 명확화
- 산학협력단 등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산학협력단 등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
- * '18. 2. 13. 이후 적용

⑩ 공시자료 제공 확대 (상증령 § 43의3 ⑥)

- 국책연구기관 및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한 공익법인 등이 공시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제공
- * '19. 2. 12. 이후 공시한 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법인세법 관련

1] 기부금단체 범위 조정 (법인법 § 24, 법인령 § 39 ①)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
-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을 법정기부금단체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
- '정부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환경보호운동 단체'를 법령에 따라 당연 지정되는 지정기부금단체에서 지정 심사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
- 舊 법인칙 별표6의2로 정하였던 '기타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단체'를 지정 심사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체로 변경
 - * '18. 2. 13.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단, '18. 1. 1. 이전에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은 舊 법인칙 별표6의7에서 각각 지정한 기한(2018~2022년)까지 법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고, '18. 2. 13. 전에 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단체 등은 '20. 12. 31.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됨)

2] 기부금단체의 의무 강화 (법인령 § 39 ⑤)

- 사회복지법인, 초·중등·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의료법인 등 법령에 따라 당연 지정되는 지정기부금단체도 기부금단체의 의무 이행 (단, 종교단체는 예외)
- 외부회계감사, 결산서류 등 공시, 전용계좌 개설·사용을 의무 규정에 추가
 - * '1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3]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여부 보고기한 단축 (법인령 § 39 ⑥, 법인칙 § 18의2)

- 의무이행여부 보고주기를 매년 보고하는 것으로 단축
 - * '1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에 대해 의무이행여부 등을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취소 사유 합리화 (법인령 § 39 ⑧)

- 지정취소 판정시 상증법§48②·③에 따른 추정세액과 상증법§48⑧ ~ ⑩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을 합산하여 1천만원 이상 추정되는 경우 지정취소
 - * '1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지정기부금 범위 조정 (법인령 § 39 ①)

- 지정기부금에서 특별회비 등 제외
 - 등록된 영업자 단체 특별회비,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지정기부금에서 제외
- * '18. 2. 13.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6 기부금단체의 추천 및 지정시기 조정 (법인령 § 38, 법인칙 § 18 ⑤)

- 법정기부금단체
 - 법정기부금단체의 추천시기를 매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로 조정(2·5·8·11월)하고 매분기 말일(3·6·9·12월)로 지정시기 조정(지정기부금단체와 일치)
 - * '18. 4. 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 지정기부금단체의 추천시기를 매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까지로 조정(1·4·7·10월)
- * '18. 3. 21. 이후 추천서류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7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시기 변경 (법인령 § 39)

- 공개시기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에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로 변경
- * '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8 고정자산 처분수입 비과세 범위 조정 (법인령 § 3 ②)

- 수익사업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한 고정자산의 경우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시 전출 이후 발생한 처분수입만 비과세
- 비과세 처분수입 = 양도가액 - 고유목적사업 전출 시 시가
- * '18. 2. 13. 이후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하는 분부터 적용

9 고정자산 취득비용의 고유목적사업 지출간주 규정 합리화 (법인령 § 56 ⑥)

- 고정자산 등 취득 후 일정기간 사용의무 규정 신설
- 고정자산 등 취득 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 '18. 2. 13. 이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국세기본법 관련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 추가 등 (국기령 § 66 ⑩)

- 당연지정 기부금단체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에 추가
 -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 법령에 따른 당연지정 기부금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상의 의무이행 사항을 위반하거나 주무관청의 요구에도 의무 이행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되는 경우 명단 공개
 - * '1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명단공개 요건 합리화
 - 명단공개 요건 판단 대상 기간에 불복청구의 기간은 불산입
 - * '19. 2. 12. 이후 불복청구 절차가 끝나는 경우부터 적용

□ 제정 배경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와 외부회계 감사는 의무화 되어 있으나, 그 기초가 되는 회계기준은 부재하여 상이한 회계기준으로 공익법인 간에 비교하기 곤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6.12.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시 공익법인회계기준 및 공익법인회계기준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제정하여 '17.12. 고시하였음

□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제1장 총칙	적용범위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의 외부 회계감사와 결산서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 적용
	재무제표의 구성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식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른 복식부기 방식에 대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없는 내용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름
제2장 재무상태표	작성기준	고유목적사업 부분과 수익사업 부분으로 구분하여 표시
	자산	· 유동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 매출채권, 선급비용, 미수금 등 · 비유동자산 :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의 비유동자산
	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미지급비용, 등 · 비유동부채 : 장기차입금, 임대보증금,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법인세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비용 계상하면서 동일한 금액으로 인식한 부채 계정



	순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순자산 : 법령 등에 의해 사용이나 처분시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 · 보통순자산 : 기본순자산 또는 순자산조정이 아닌 순자산 · 순자산조정 : 순자산 가감성격의 항목(매도가능증권평가 손익 등)
제3장 운영성과표	작성기준	고유목적사업 부분과 수익사업 부분으로 구분하여 표시
	사업수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목적사업수익 : 공익법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부금 수익, 보조금수익, 회비수익 등으로 구분 · 수익사업수익 : 공익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구분 정보를 기재
	사업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목적사업비용 : 활동의 성격에 따라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으로 구분 * 공익법인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에서 발생 하는 비용 ** 모금홍보, 모금행사 등 모금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 수익사업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
제4장 자산·부채의 평가	취득가액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원가로 인식하되,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이 있는 경우 장부금액을 조정하고 손실로 처리 ·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할 금액으로 함
제5장 주식	공익기업 일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법인의 개황, 주요사업 내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용 등 재무제표 이해가능성을 높이는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 ※ 필수적 주석기재사항: 공익법인 개황 및 주요사업 내용, 특수관계인과 중요한 거래 내용, 기본순자산의 취득 원가와 공정가치 비교 정보 등

< 공익법인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비교 >

구 분	공익법인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대상	상증법상 외부 회계감사 의무 또는 결산서류 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 * 의료·학교법인, 종교단체는 제외	외감법 적용대상기업 중 한국채택국 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회계처리 하지 않는 기업
재무제표	① 재무상태표 ② 운영성과표 ③ 주식	① 재무상태표 ② 손익계산서 ③ 현금흐름표 ④ 자본변동표 ⑤ 주식
자본	자본 및 자본금의 개념이 없으며, 대신 순자산 개념을 사용	자본은 기업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잔여청구권(주주지분), 자본금은 주주 들이 납입한 법정자본금
순자산· 자본 구분	① 기본순자산* ② 보통순자산 ③ 순자산조정 * 법령 등에 의해 사용이나 처분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순자산	① 자본금 ② 자본잉여금 ③ 자본조정 ④ 기타포괄손익누계액 ⑤ 이익잉여금
구분경리	고유목적사업 부문과 수익사업 부문으로 구분하여 표시	구분경리가 요구되지 않음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부채로 인식	부채로 인식하지 않음



공익법인 주요 추정 사례

사례1 출연받은 재산 직접 공익목적 미사용

□ 관련 법령 : 상증법 § 48 ② 1호

-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

□ 적출사항

- A공익법인은 계열그룹 명예회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금 ○○억원을 출연받아 토지를 취득함
- 취득한 토지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나대지 상태로 확인됨
- 출연재산 3년내 미사용하여 증여세 ○○억원 추정

사례 2 출연부동산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

□ 관련 법령 : 상증법 § 48 ② 1호

-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용도 외로 사용금지

□ 적출사항

- B장학재단은 계열기업 총수일가의 문중소유 토지를 출연 받음
- 출연재산의 사용용도를 확인한 바, 일부 토지는 문중 제실의 수목장, 조경 등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됨
- 장학재단 등록시 전통제례 문화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승인 받은 사실이 없으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공익사업 성격상 특정 문중행사를 공익목적 사업으로 볼 수 없음
-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 ○억 원 추정

사례 3 **출연자의 출연재산 무상임차 및 제3자에게 전대**

- **관련 법령** : 상증법 § 48 ② 1호, 상증령 § 39 ② 2호
 -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용도 외로 사용금지
 - 교육기관이 연구시험용 시설, 건물 등을 출연받아 이를 해당 교육기관과 출연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제외
- **적출사항**
 - C학교는 교내 도서관을 신축 기부한 출연자에게 도서관 1~2층 편의시설(문구점, 매점 등)을 ○○년간 무상 임대하고 출연자는 제3자에게 전대함
 - 출연자가 교육기관에게 출연한 출연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전대한 것은 증여세 과세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C학교에게 증여세 ○억원 추정

사례 4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반으로 주식보유한도 초과**

- **관련 법령** : 상증법 § 48 ⑨, 상증령 § 78 ⑦
 - 성실공익법인 등이 아닌 경우,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30%초과 금지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
- **적출사항**
 - D공익법인은 성실공익법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보유한도를 적용받지 않음
 - D공익법인은 회계감사, 전용계좌개설·사용, 결산서류 공시의무 등을 이행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총 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함
 - D공익법인의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여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반
 -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50% 초과분에 대하여 가산세 추정



사례 5	세법상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선임한 특수관계 이사에게 지급한 급여 등에 대하여 가산세 추정
-------------	--

□ 관련 법령 : 상증법 § 48 ⑧, 상증법 § 78 ⑥

-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수의 5분의1 초과 금지, 임직원으로 취임 금지

□ 적출사항

- E학교법인은 특수관계인이 이사(무급)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음
- 계열사 임원으로 퇴직 후 5년이 미경과한 자를 등기이사로 추가 선임하고 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
- 특수관계 이사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 급여 등 직·간접 경비 전액 〇〇억 원을 가산세로 추정

사례 6	전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부과
-------------	------------------------

□ 관련 법령 : 상증법 § 50의2, 상증법 § 78 ⑩

-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은 전용계좌를 사용
-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신고

□ 적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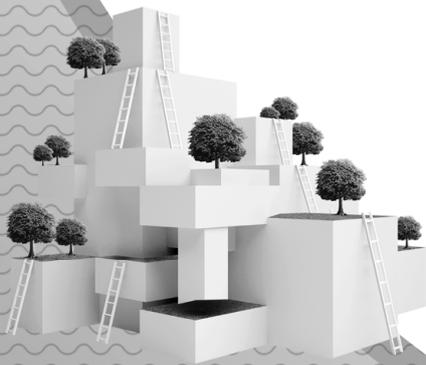
- F공익법인은 설립 후 3개월을 도과하여 전용계좌를 신고함
- F공익법인은 공익사업과 관련한 인건비를 전용계좌 외의 계좌를 통해 지출함
- 전용계좌 기한후신고 및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가산세 〇억원 추정



I

공익법인이란

1. 공익법인의 개념
2. 공익법인 등의 범위
3.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





I. 공익법인이란

1. 공익법인의 개념

세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 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란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하며,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은 불특정다수의 이익(공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공익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2. 공익법인 등의 범위 [상증령 §1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사업 중 다음의 열거된 공익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을 말합니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19.1.1. 이후부터 적용)
6.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7.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 舊 상증령 §125호~8호, 11호 및 舊 상증규칙§3의 사업은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공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됨 (단, '18.12.31.에 종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0.12.31.까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임

「향교재산법」에 따라 설립된 향교재단이 유교의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함 (재삼 46014-1914, '95. 7. 25.)

▶ 종교활동을 위한 인적·물적시설이 있어야 함

등록요건이 미비하여 소속교단에 등록되지 못한 상태이고 종교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인적조직 및 물적시설이 없는 경우 공익법인이 아님 (감심2009-197, '09.10. 8.)

▶ 종교단체는 법인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고유목적사업으로 공익법인 여부 판단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재산-274, '11. 6. 7.)

▶ 국외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이 아님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하는 공익법인(종교단체)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함 (서일46014-11530, '03. 10. 28.)

②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 사립학교법 시행일 이전 설립의 경우

「사립학교법」 시행일('63. 6. 26.) 이전에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되어 운용되는 경우도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

▶ 교육법에 의해 설립되지 않은 '화교소학교'는 공익법인에 해당 안됨

(재삼 46014-1755, '98. 9. 14.)

☞ '01. 4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의해 외국인학교 관련 규정이 신설(초·중등교육법 §60의 2)됨에 따라 '01. 4월 이후 외국인학교도 공익법인에 해당됨



③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다음의 법률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아동복지법 • 노인복지법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입양특례법 • 장애인복지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한부모가족지원법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영유아보육법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의료급여법
- 기초연금법 • 긴급복지지원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 장애인연금법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청소년복지 지원법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⑤ 법인세법 §24 ③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 <법정기부금의 범위>

[법인령 § 24 ③]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

-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사.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 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학교
- 5.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 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 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 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마.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 바.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 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 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 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 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 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6.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㉔ 법인령 §39 ① 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 및 소령 §80 ① 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

▶ <지정기부금 단체의 범위> [법인령 § 39 ① 1호]

-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다.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소속단체를 포함)
- 마.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 바.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 舊 법규칙 별표6의2의 비영리법인과 '18. 2. 13. 이전에 주무관청에 인·허가받은 학술연구·장학·문화예술·환경단체 등은 '20. 12. 31.까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는 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지정·고시함

☞ '18. 2. 13. 이후 설립된 학술연구·장학·문화예술·환경단체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심사를 거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함

▶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범위> [소령 § 80 ① 5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일정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⑦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법인령 § 39 ① 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

▶ <기획재정부장관 지정 기부금의 범위 ('18.12.31. 기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출연하는 기부금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립비와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설만 해당한다)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의 정보자원(정보 및 설비, 기술, 인력 등 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을 말한다) 도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 조성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여성경제인박람회 개최비 또는 연수원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방송법」에 따라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지역협의회 및 그 전국연합회에 청소년 선도보호와 범법자 재범방지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지출하는 출연금

-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시도체육회, 시·군·구 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군·구 회원종목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추천하는 자에게 지출하거나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생활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로 기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에 근로자훈련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숙련기술장려법」 제6조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숙련기술장려적립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와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에 각각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단법인 한국중화총상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화상대회 개최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한다)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 사업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농수식품씨이오연합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에 직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한국장애경제인협회에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비, 장애경제인 창업지원사업비, 장애경제인협회 회관·연수원 건립비, 장애경제인대회 개최비 및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른 대한민국헌정회에 정책연구비 및 헌정기념에 관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신용대출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그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단체에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13제1항에 따른 영세한 중소기업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정보공유·분석센터에 금융 분야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 예방, 취약점의 분석·평가 등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 지원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에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사회공헌기금 등을 통하여 수행하는 사회공헌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시행하는 노사상생협력증진에 관한 교육·상담 사업, 그 밖에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노사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해외난민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5호 각 목의 병원에 자선의료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 기재부장관에게 지정받은 기부금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함
재단법인 ××발전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을 경우에는 같은 호 사목에 따른 지정 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1032, '10. 11. 2.)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개인이 설립한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령해석재산-21431, '15. 4. 10.)
- 공원묘원을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원묘원의 운영 및 위탁관리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재단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 (재산-141, '10. 3. 9.)
-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4팀-3510, '06. 10. 25.)
- 상증령 §12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공익법인이 아님
공익사업 종류는 예시규정이 아니라 열거규정이므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과세가액 산입함 (대법96누 7700, '96. 12. 10.)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는 사례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법인 중 종중, 동창회, 영업자 단체 등
- 국가기관, 정당, 조합법인
- 영리기업의 사업자단체(주무관청의 허가여부에 불구함)
- 사내근로복지기금
- 인가받지 아니한 유치원이 수행하는 사업
- 공원묘원, 납골당



3.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구분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민법은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만 구분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포함되므로 크게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나 「교육기본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서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익법인과 구분

재단·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대하여 민법의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그 법인이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건전한 활동을 하도록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 중 일부 유형에 해당하였으나, '19. 1. 1. 이후부터는 「법인세법」 상 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합니다. (단, '18. 12. 31. 현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공익법인은 '20.12.31.까지 공익법인의 지위 유지)

다.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과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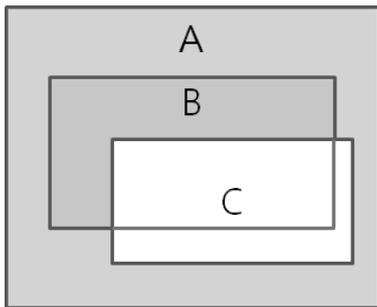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의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등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법인세법」은 법인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의 목적과 적용방법이 다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도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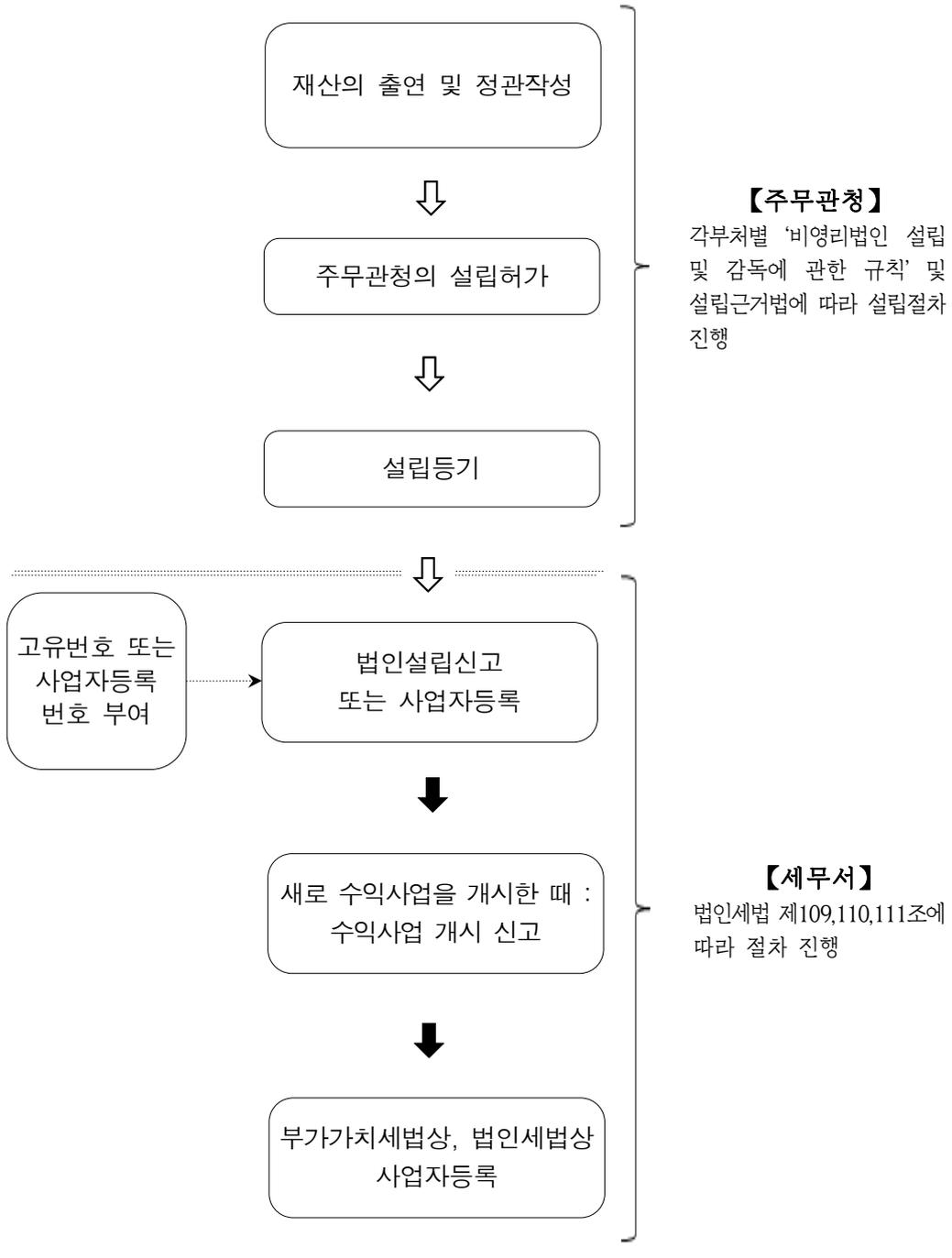
- A: 비영리법인
- B: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 C: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

공익법인의 설립근거법

공 익 유 형	설 립 근 거 법
종교	민법, 기타 특별법 등
학술, 장학, 자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	사회복지사업법
교육	사립학교법 등
의료	의료법
문화·예술	문화예술진흥법
기타	민법, 기타 특별법 등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 및 법인설립신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주무관청

주무관청	소관사무
기획재정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
교육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
외교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
통일부	통일 및 남북대화 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
법무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
국방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
행정안전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
산업통상자원부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
보건복지부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
환경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
여성가족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 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에 관한 사무
국토교통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
해양수산부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



주무관청의 법인업무 위임 또는 위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하급행정기관의 장 등에 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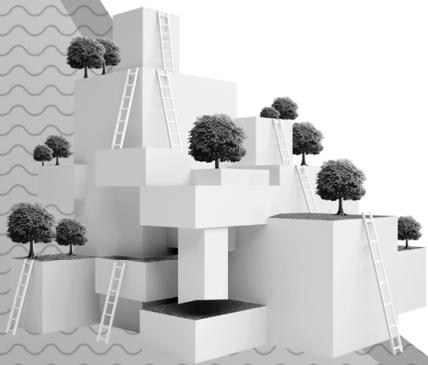
주무관청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장 (우정사업관련 비영리법인) 국립전파연구원장 및 중앙전파관리소장 국립과천과학관장(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강원도 소재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 국립중앙과학관장(그외 소재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
교육부	교육감
외교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행정안전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소방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문화재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농촌진흥청	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 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도 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자치시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자치도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보건복지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환경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
여성가족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국토교통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해양수산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수산 및 해양 레저스포츠 분야)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II

공익법인과 세금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지원
2. 수익사업이 있는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3. 토지 등 양도소득과 관련한 내용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지원
5. 출연자의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 과세



II. 공익법인과 세금

세법에서는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공익법인에 대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이러한 조세지원 제도를 탈세나 부의 편법 상속 등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세법상 의무를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증여세나 가산세 등을 부과함으로써 공익법인이 본래의 공익목적사업에 전념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법 외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각 특별법에서 공익법인의 정관이나 임원의 임면, 이사회 운영, 주무관청의 감독 등에 관한 특별규정을 둬으로써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공익목적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여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도록 한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지원

가. 출연재산이란

「민법」상 ‘출연’이라 함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이라 함은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출연행위에 따라 제공된 재산을 ‘출연재산’이라고 합니다.

즉, 공익법인이 무상으로 얻은 재산이 출연재산이 되는 것이며, 대가를 수반하여 제공받은 재산은 출연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현금을 말하되, 부동산 및 주식 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은 상증법상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상증법 §48 ② 본문단서, 상증령 §38 ①]

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법 §16 ①·②]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후 해당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이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추징합니다.

1) 피상속인이 출연하는 경우

공익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의 특수관계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2) 상속인이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하되, 상속인이 출연받는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어야 합니다. [상증령 §13 ②]



- ☞ 상속인에는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
- ☞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의 이사 등에서 물러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상속인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 상태로 전환한 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된 재산가액은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증통칙 16-13...3 ①]

- ☞ 영 제1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이사에는 이사회 의결권을 갖지 아니하는 감사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상증통칙 16-13...3 ②]

3) 출연 시한

재산을 출연한다는 것은 출연할 재산의 소유권을 공익법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재산을 출연할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면 결과적으로 출연하지 않은 것과 같으므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출연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상속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이유로 소유권이전 및 설립허가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출연시기는 동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말한다. [상증통칙 16-13...2 ①]

4) 상속재산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주식이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또는 10%, 20%)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총 발행주식수의 5%(또는 10%,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자세한 사항은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중 '4. 주식취득 및 보유시의 지켜야 할 일' 참조

다.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법 §48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공익법인이 동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또는 10%, 2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상기 '나. 4)의 경우와 같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가액 불산입한 공익법인 등이 공익사업을 지원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공익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조세회피 또는 탈루의 수단 등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출연재산 등의 사용 및 각종 보고의무 등을 규정하여 이를 위반하는 공익법인에게는 증여세 등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참조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출연재산 해당 여부>

- 종교헌금의 출연재산 해당 여부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8, '16. 5. 26)
-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출연받은 재산에는 국외주식을 포함함
(상속증여세과-552, '13. 9. 16.)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를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과-176, '13. 6. 4.)
- 채무면제액도 출연재산에 포함
출연재산 및 출연 받은 재산의 범위에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재산-577, '11. 11. 30.)
- 비영리사단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의 출연재산 해당여부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소속회원 모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부회원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4팀-1274, '08. 5. 26.)
cf) 일반회비 외에 찬조금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출연재산에 포함
- 개인명의로 등기된 재산의 출연재산 해당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개인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4팀-2189, '05. 11. 15. 외 다수)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공익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란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하며 출연받은 재산에는 현금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하는 것임
(서일46014-11530, '03. 10. 28.)
-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출연재산이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된 출연재산을 말하는 것임
(서일46014-11532, '03. 10. 28.)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하는 것임
(서일46014-10529, '02. 4. 23.)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 여부>

- 2인 이상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출연하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612, '17. 6. 8.)
-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기 전에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재산을 출연받아 비영리법인이 출연일 직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과-494, '17. 5. 17.)
- 종교단체가 교단(상호)을 변경할 경우 교회건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종교단체가 종교단체의 명칭만 변경하여 부동산소유자를 새로운 종교단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출연이 아님
(상속증여세과-529, '16. 5. 18.)
- 공익법인등이 출연 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받은 출연자는 반환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과-122, '14. 5. 1.)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을 이행한 경우 그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과-609, '13. 11. 18.)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그 출연받은 재산으로 신축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건물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82, '13. 8. 16.)



-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매각한 대금을 출연시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재산-431, '12. 11. 30.)
-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재산세과-330, '12. 9. 17.)
- 토지를 출연받은 후 출연자 등으로 하여금 건물의 부지로 사용·수익하게 하였다면 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학교법인이 토지를 출연받은 후 출연자 및 그 친족으로 하여금 건물의 부지로 사용·수익하게 하였다면 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원고를 위하여 건물을 물상담보로 제공한 것은 토지의 사용·수익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음 (대법원2009두17575, '11. 10.13.)
-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출연일을 기준으로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임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재산-299, '11. 6. 22.)
- 의료기기 취득목적으로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자산을 구입하는데 사용시 과세 여부
의료기기 등의 취득목적으로 기부받은 현금으로 임대용건물을 매입하여 동 사업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으로 의료기기 등을 구입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것임. 다만,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며, 그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재산-932, '09. 5. 14.)
- 공익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받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규상증 2009-0355, '09. 3. 25.)



●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2개의 비영리법인으로 분리되는 경우

특정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조직·직원 및 재산 중 일부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시키는 등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두개의 비영리법인으로 분리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서면4팀-1675, '07. 5. 21. 외 다수)

●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출연한 것에 대해 상속세 부과한 사례

실제 출연하지 않은 채 출연한 것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가 되었고,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에야 출연이 이루어졌으며, 쟁점출연금이 민법상 자필증서, 녹음 등 적법한 방식을 갖춘 유언에 의하여 출연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출연금의 출연은 피상속인의 생전처분이나 유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상속인들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음(국심2005서3786, '06. 4. 7.)

●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명의 재산을 출연했음에도 과세가액불산입한 사례

상속인 명의의 현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나중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정산함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모두 끝났고, 공익법인에 출연한 이후 당해 금액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므로 공익법인에게 출연한 재산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 (국심2005중1885, '05. 12. 30.)

● 조직변경과정에서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그 소유자의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팀-1656, '05. 10. 17.)

● 공익법인 아닌 비영리법인의 무상취득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같은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서면4팀-1189, '05. 7.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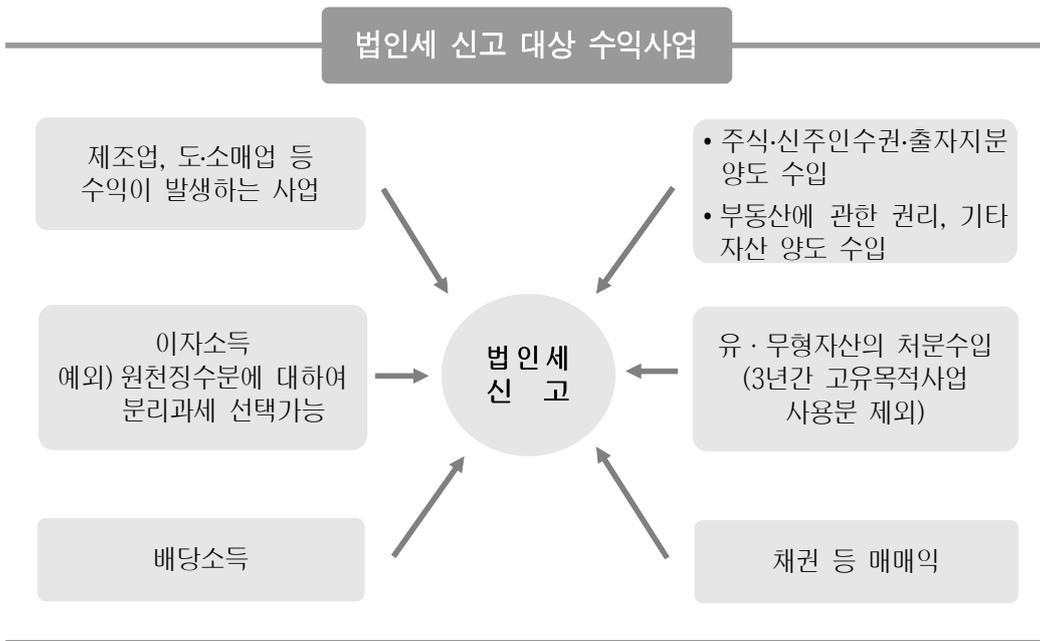
● 유언이 적법한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등 적법한 방식을 갖춘 유언을 따르지 않은 장학재단의 설립을 위한 부동산의 출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됨 (대법2005두3271, '05. 6. 23.)

2. 수익사업이 있는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상증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므로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청산소득과 미환류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유형



가.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가 과세되는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의 수익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합니다. [법법 §4 ③]

①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함 [법인령 §3 ①]

▶ 제외대상



-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 포함)·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제외)
-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 ☞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는 '13. 2. 15.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 시설 및 결핵·한센인 시설
 -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 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
 -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 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 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피해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 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
- 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 하.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연금 및 공제업 중 국민연금사업 및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함)
- 사회보장보험업 중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소속단체 포함)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26 ①18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 소속단체는 '1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중 예금보험제도 등을 운영하는 사업 등
-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 지급사업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소액신용대출사업
-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함)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국기원의 승단·승급·승품 심사사업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II

- ②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 ③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 ④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⑤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원래부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고유목적사업(①의 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하고 처분한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과세제외
 - * 비과세 처분수입 = 양도가액 - 최초 취득시 취득가액
 - 수익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처분한 경우 전입 이후 발생한 처분수입*만 비과세
 - * 비과세 처분수입 = 양도가액 - 고유목적사업 전입시 시가
 - ☞ '18. 2. 13. 이후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으로 임대사업을 하여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경우 해당 부동산 자체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됨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 특례 적용가능)
 - ☞ 상증법상으로는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님(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용으로 운용한 경우 상증법상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봄)
 -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 수입 등 부수 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봄
- ⑥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
- ⑦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등(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 제외)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 전산정보교육원 등의 교육서비스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임
영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이란 같은 법에 의한 교육과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서비스업을 말하는 것으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기관인 전산정보 교육원 등의 운영과 관련된 교육서비스업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3-2...6]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수취하는 이용료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함
(서면-2017-법인-2509, '18. 7. 18.)
-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재화 또는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원 받는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129, '18. 5. 17.)
- 비영리내국법인이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1958, '16. 7. 20.)
- 연구 및 개발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3364, '16. 5. 11.)
- 공제조합이 분담금으로 폐기물 회수·인계·재활용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령해석법인-2495, '16. 4. 6.)
-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종전부동산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규법인2014-434, '14. 9. 29.)



-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수탁운영하는 노인전문 병원의 의료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제1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107, '14. 3. 31.)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중 하나인 교육·지원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연수원을 조성하고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아 무상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기관으로부터 수탁 교육비 또는 교육생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을 받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규법인2014-5, '14. 3. 27.)
- 손해배상책임 공제료 등의 관리·운용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협회가 회원사로부터 손해배상책임 공제료를 받아 보험회사에 납부하고 운영수수료를 징취하는 경우 운영수수료 및 공제료의 관리·운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432, '11. 6. 30.)
- 회비의 실질이 용역제공 등의 대가인 경우 과세대상임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회비의 실질이 용역제공 등과 관련한 대가인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 것임 (법인-1198, '10. 12. 27.)
-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임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자산의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더라도 양도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법인-804, '10. 8. 27.)
- 관리비 외 별도로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아파트형공장 입주자로부터 관리비 외에 별도로 징수하는 주차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팀-1068, '08. 6. 2.)
- 고정자산 처분손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시, 정당한 사유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 과세대상이며, 소득금액의 5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상 가능함 (재법인46012-151, '03. 9. 19.)



- 교회가 묘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임
교회가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한 묘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묘지 운영이 교회의 고유목적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토지의 양도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팀-820, '05. 6. 15. 국심2003서614, '03. 4. 22.)
-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에 따른 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규정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수련비용 등을 받는 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이 46012-10302, '01. 10. 5.)
- 회보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회보 등을 발간함에 있어서 동 회보에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생기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그 회보 발간비는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하고 광고수입을 초과하는 회보 발간비는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회보'라 함은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법인 46012-828, '99. 3. 6.)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65, 2018.7.2.)
-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 사업 종료 후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령해석법인-5039, '17. 5. 29.)



-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4471, '16. 8. 24.)
-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3855, '16. 8. 11.)
-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의해 법인세가 면제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당초 면제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지 않는 것임
(법령해석법인-3523, '16. 7. 11.)
-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399, '14. 9. 24.)
-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을 영위하면서 위·수탁협약에 따라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과-777, '14. 7. 22.)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로서 청소년육성사업을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육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 하면서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 해당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규법인2012-168, '12. 5. 30.)
-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법인2010-364, '10. 12. 21.)
- 연구개발업에 대한 용역대가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
비영리법인이 연구 및 개발업을 수행하면서 용역대가 없이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 출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치를 수익사업에 전입하고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당해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재법인-667, '04. 12. 10.)



- 장기요양기관이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재법인-535('09. 6. 9.)호의 유권해석은 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재법인-866, '10. 10.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재법인-535, '09. 6. 9.)

-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해 국가, 지자체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수익사업의 소득이 아님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소득이 아니며,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OO(주)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함 (재법인-635, '08. 10. 17.)
- 비영리 공익법인이 기부채납 조건부로 받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고보조금(부동산을 취득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동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수익권을 취득하는 조건)을 수령하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46012-12053, '03. 11. 29.)
-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경조사 등에 사용하고 탈퇴시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회비를 반환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 안됨
(서이46012-10400, '02. 3. 6.)

나.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구분경리

[법법 §113, 법규칙 §75, §76]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 기록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자산과 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합니다.

1) 자산·부채의 구분경리

자산 및 부채는 구분경리의 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며, 수익사업의 자산 및 부채라 함은 수익사업의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산과 수익을 발생시키는 원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채를 말합니다.

그러나,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손익의 구분경리

① 개별손익금

-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별로 그 발생원천이 분명한 개별손익금은 그 원천별로 귀속시켜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 기장합니다.

② 공통손익금

- 수익 또는 비용을 구분 경리함에 있어 그 구분이 불분명한 공통손익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구분 계산합니다.

◇ 공통익금

-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

◇ 공통손금

-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으로 안분계산
-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 :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 수개의 업종을 경영하고 있는 법인의 공통손익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하고 다음에 동일업종내의 공통손익을 안분계산함 [법통칙 113-156...5]
- ☞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 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함. 이 경우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함 [법통칙 113-156...1]

3) 수익사업의 자본금

-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자본금이라는 개념이 별도로 있지는 않지만, 세무조정 등에 필요하므로 다음 산식에 따라 자본금을 산정합니다.

수익사업의 자본금

$$= \text{수익사업 자산합계액} - \text{수익사업 부채(충당금 포함)합계액}$$

4)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간의 자본원입 [법규칙 §76 ③, ④]

- ①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는 경우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시가)은 자본의 원입으로 함
 -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 [법통칙 113-156...2]

- ② 수익사업용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하는 경우
-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처리함

◇ 비영리법인의 잉여금의 범위 [법통칙 113-156...3 ②]

- 규칙 제7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때에는 당해 자산가액을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과 순차적으로 상계처리 하여야 한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산입된 금액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부인된 금액
 3. 법인세 과세후의 수익사업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
 4. 자본의 원입액

-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금전 외의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 그 자산의 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자산의 평가이익(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전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익금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64, '12. 5. 16.)
-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는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임
(법인-553, '09. 5. 12.)
-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함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3조에 의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526, '09. 5. 4.)
- 공통 사용 자산의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임
(서면2팀-867, '07. 5. 8.)
-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전출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전출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3 제2항에 따라 상계 처리하는 것임
(서면2팀-1376, '06. 7. 20.)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법법 §29]

비영리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 손금산입 한도
 -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 등 × 100%
 - 기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50%(또는 80%)
 -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100% 등)
- 고유목적사업이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에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2 ①의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법인령 §56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한도액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법 §29①]

비영리법인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지정기부금의 회계처리

구	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고유목적사업비 및 지정기부금 지출액의 회계처리
1. 법인격이 있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등		설정 가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처리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1) 지정기부금대상단체, 법령상 설치된 기금		
	(2)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회의·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3) 기타단체	설정대상 제외	지정기부금 등으로 처리

* '18. 2. 13.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설정 제외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과 청산중에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통칙 29-56...1]
- 과세표준신고 특례적용 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특례를 적용받는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당해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비영리내국법인 (법인46012-1004, '00. 4. 22.)
-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 제외)을 적용받는 비영리법인(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한 경우는 제외) [법인령 §56⑧]
- 법인세법 제1조에도 불구하고 '13. 12. 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 [조특법 §104조의7②]

※ 지정기부금으로 처리시 손금산입한도

-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령§36 ②]
- 손금산입 한도액 [법법 §24 ①]
= {수익사업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기부금을 손금산입하기 전의 소득 금액) - 법정기부금 - 이월결손금} × 10%
- ☞ '11. 7. 1. 이전 지출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도 차감하여 한도계산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소득 [법법 §29 ①]

가) 법인세법상 준비금 설정대상 소득

- ① 다음의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100%)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
(1) 소득세법 §16 ①의 이자소득의 금액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
다음의 금액은 이자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법령§56 ②)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
- 법인령 §2 ① 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연금 및 공제업 법인의 채권투자 등 금융자산 운용소득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보증료 수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17 ① 의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증법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금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 금액은 제외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회원 및 조합원에게 대출한 용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 ② 기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 소득에 5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 다만,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의 80% 범위 내에서 설정가능

◇ 기타의 수익사업 소득금액 [법인령 §56 ③]

- =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정기부금 및 특례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
 - (-)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 (-) 배당소득금액
 - (-) 특별법인의 용자금 이자금액
 - (-) 이월결손금
 - (-)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11. 7. 1. 이전 지출분)



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설정대상금액 [조특법 §74, §121의23]

- ① 다음의 법인에 대하여는 '19. 12. 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전액(100%)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 산입
 - (1)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발전기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발전기금
 - (2) 사회복지법인
 - (3) 국립대학교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대한적십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 (4) 해당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 (5) 지방문화원, 예술의전당, 기획재정부 고시 제2001-11호(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정동극장, 서울예술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 (6)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 (7)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8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 (8)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②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이자배당소득(100%), 명칭 사용료(70%~100%), 그 외 수익사업소득(50%) [조특법 §121의23]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세무조정 (원칙 : 결산조정, 외감법인 신고조정 가능)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원칙적으로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법법 §29 ①]
 -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신고조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법 §29 ②]



- 신고조정의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그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법 §29 ②]
- 손금산입한 준비금에 상당한 금액을 적립하지 않거나 해당 준비금의 익금산입시 익금산입액보다 적립금을 초과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미달적립금 또는 초과처분액을 해당 준비금을 손금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함
- 다만,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적립할 수 있으며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적립 하여야 함 [법통칙 61-98...1]

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전입

결 산 조 정	신 고 조 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1,000 (비용계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0 (고정부채 계상)	미처분이익잉여금 1,0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0 (준비금 적립, 잉여금 계정)
(세무조정) 한도액 계산하여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 한도액까지 손금산입(△유보)

※ 임의로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외부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은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서이46012-11844, '03. 10. 23.)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의 처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규정의 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이를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다. 다만, 동 금액을 환입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통칙 29-56...3]



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결 산 조 정	신 고 조 정
<p>【수익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사업에서 비수익사업으로 전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800 (고정부채에서 차감) / 현 금 800 <p>⇒ [세무조정]없음</p>	<p>【수익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사업에서 비수익사업으로 전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800 (잉여금계정에서 차감) / 현 금 800 <p>⇒ [세무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 800 익금산입(유보)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목적사업 전출 800 손금산입(기타)
<p>【비수익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사업에서 비수익사업으로 전입 현 금 8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 800 - 비수익사업에서 사용 고유목적사업비 800 / 현 금 800 	<p>【비수익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사업에서 비수익사업으로 전입 현 금 8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 800 - 비수익사업에서 사용 고유목적사업비 800 / 현 금 800



※ 준비금의 사용순서 등 [법법 §29 ③]

- ①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사용한 것으로 봄
- ②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
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봄



※ 고유목적사업 지출(사용) 금액의 사용범위 [법인령§56 ⑥]

- 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법인령 §31 ②에 따른 자본적지출 포함)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

◇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과다 인건비 [법인령 § 56 ⑩]

- 다음의 법인이 임원·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총급여액* 중 8천만원 초과분
 - (1) **법법 §29 ①2호**에 따라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
 - * 해당 사업연도 근기간1년 미만 : 12개월로 환산 [총급여액을 근기간 월수(1월미만 1월)로 나눈 금액X12]
 - (2) **조특법 §74 ①2호¹⁾ 및 8호²⁾**에 따라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 **과다 인건비 제한 예외**
 -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기 전에 해당 임원, 종업원의 인건비 지급규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인건비 지급규정 및 주무관청의 승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 '1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기금 또는 준비금에의 적립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건강보험·연금관리·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함

③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연구개발사업에 지출하는 금액

◇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

- (1)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 (2)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 (3)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

◇ 의료 해외진출을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지출하는 금액

- (1)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를 임차하거나 인테리어 하는 경우
- (2)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를 임차하는 경우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가목에 따른 자체연구개발사업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사업('14년 지출분부터 적용)
- ☞ 이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상당액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 하여야 함
- * 의료발전회계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 및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함

※ 의료발전회계의 처리방법 [법통칙 29-56...6]

구분	병원회계(수익사업)	의료발전회계
100 전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 100 /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100	-
100 구입	자 산 100 / 현 금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 의 료 발 전 준 비 금 100	자산(별도관리) 100 /의료발전준비금 100
20 감가상각	감 가 상 각 비 20 / 감 가 상 각 누 계 액 20 의 료 발 전 준 비 금 20 / 의 료 발 전 준 비 금 환 입 (익금) 20	의료발전준비금 20 /자 산 20
50 처분	현 금 50 / 자 산 10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20 / 의 료 발 전 준 비 금 환 입 (익금) 80 처 분 손 실 30 의 료 발 전 준 비 금 80	의료발전준비금 80 /자 산 80

- ④ 조특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학교법인, 산학협력단,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및 발전기금)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금액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 [법규칙 §76 ④]
- ⑤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에게 무상대여하는 금액
- ⑥ 농협 등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 ⑦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관련법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단, ① 또는 ③에 해당하는 비용은 고정자산 취득 후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나 보건의업[보건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료법인)에 한정]에 3년 이상 고정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18. 2. 13.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

결 산 조 정	신 고 조 정
【수익사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00 (고정부채) /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 200 (수익항목) ⇒ [세무조정]없음	【수익사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00 (잉여금 항목) / 미처분이익잉여금 200 ⇒ [세무조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200 익금산입(유보)

※ 익금산입 사유 [법법§29 ④,⑤,⑥]

- ① 해산한 경우(다만, 위와 같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승계한 경우 제외)
- ②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 ③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 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
- ④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 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함)
- 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잔액 중 일부를 감소시켜 익금계상한 경우(익금계상금액으로 한정하며,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잔액부터 익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봄)

※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정되는 경우 [법법§29 ⑦]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법인이 5년 내에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년이 되기 전에 당해 준비금을 환입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위 익금산입 사유 중 ④와 ⑤의 경우에만 이자상당가산액 추정)



※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 [법인령§56 ⑦]

□ 이자상당가산액 = 제1호 × 제2호

- 제1호 : 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 제2호 :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계산사례

○ 2013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법인세 과세표준 2억, 산출세액 20백만원)에 5천만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였고,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4천만원만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 201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추가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은?

<계산> 미사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 ① 미사용액 1천만원을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의 법인세액
 $(2억 + 1천만원) \times 20\% = 22,000,000원$
* 2013년 법인세율 10%(2억 초과 ~ 200억 이하 : 20%)
- ② 미사용액 1천만원을 손금산입한 경우의 당초 법인세액 : 20,000,000원
- ③ 법인세액의 차액
 $22,000,000 - 20,000,000 = 2,000,000원$
- ④ 이자상당액 계산 = $2,000,000 \times (365 + 365 + 366 + 365 + 365) \times 0.03\%$
 $= 1,095,600원$

<결과>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1천만원 익금산입하고, 별도로 1,095,600원 추가 납부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손금산입 여부>

- 산학협력단의 부설단체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해당 산학협력단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창업보육센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2-122, '12. 5. 11.)
- 퇴직연금적립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이 아님
비영리내국법인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퇴직연금운용사업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퇴직연금적립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이자·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983, '10. 10. 26.)
- 개별교회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비영리법인 소속단체(약칭 '개별교회')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은 200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됨
(재법인-435, '10. 6. 3.)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불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를 제외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1317, '09. 11. 27.)
-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결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소 계상한 준비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서면2팀-477, '05. 3. 31.)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노동조합의 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
법인으로 등록된 노동조합 외에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노동조합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이나, 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 46012-2063, '00. 10. 7.)



<고유목적사업지출 해당 여부>

- 산학협력단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다른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규법인2013-82, '13. 3. 27.)

- 교비회계로의 전출이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전출시점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616, '11. 8. 25.)

- 비수익자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시 고유목적사업 지출 등에 해당여부
법인세법 제113조의 구분경리에 의하여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하는 것은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의 지출 또는 사용으로 보지 않는 것임 (재법인-31, '11. 1. 14.)

- 의료법인이 직원 기숙사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병원건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원 기숙사 및 연수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1121, '10. 11. 30.)

- 비영리법인간 일부 자산 및 부채 출연시 세무처리
의료법인이 운영하던 2개의 병원 중 1개 병원의 자산·부채를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법의 부속병원으로 포괄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출연하는 병원과 관련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의료발전준비금 잔액은 학교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함 (법인-735, '10. 8. 3.)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예금으로 예치한 것은 준비금을 사용한 것이 아님
사립학교법인이 고정자산양도차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적립 후 해당 금액을 수익용기본재산인 예금으로 예치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볼 수 없음
(법규법인2010-164, '10. 6. 9.)

- 학교법인이 연구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기금회계로 전입한 경우 고유목적사업 지출임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6조에 따라 연구적립금 등을 적립하고 그 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등을 비영리사업회계인 기금회계로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24, '10. 1. 12.)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지정기부금을 지출 시 시부인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순차로 상계해야 하며, 이 경우 지정기부금 시부인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1033, '09. 9. 21.)

- 사립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시점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당해 전출의 행위가 명목뿐인 경우로서 당해 재산을 계속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동 자산이 전출 후에도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되는 경우에는 그 전출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46012-4050, '99. 11. 22. 서면2팀-341, '06. 2. 14. 서면2팀-1370, '06. 7. 20.)

- 고유목적사업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경우 준비금 사용에 해당 안 됨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임대용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을 법법 §29 ①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한 후 이를 다시 고유목적사업의 기본재산(수익용)으로 편입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수 없음
(재법인46012-81, '03. 5. 12. 서면2팀-1347, '06. 7.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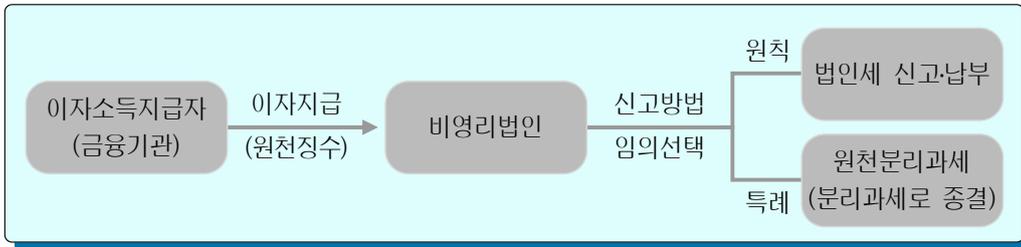


-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 그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법인46012-2758, '98. 9. 25. 서이46012-10111, '03. 1. 16.)
-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 위한 차입금의 상환은 준비금 사용에 포함 안 됨
의료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 등의 고정자산 취득 위해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제도46012-12671, '01. 8. 16.)
-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수익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취득 등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서이46012-10969, '02. 5. 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익금산입 여부 등>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승계할 수 있는 것이며, 해산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과-406, '13. 7. 30.)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2팀-792, '05. 6. 1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외부회계감사대상인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당해 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하여 환입 계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 29-56·5의 규정에 의하여 환입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46012-327, '02. 6. 7.)

라.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특례



1)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 특례

비영리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법법 §62 ①, 법령 §99 ①]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것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납부와 원천징수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또는 경정 등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법인령 §99 ②]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이자소득만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하고 과세표준신고기간이 경과된 후에 누락된 수익사업 부분의 과세표준을 추가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법령해석과-3544, '15. 12. 29.)
-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 이자소득에 대하여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 과세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과세절차가 종결된 것이므로, 기한 후 신고로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여 원천납부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음 (조심2011부88, '11. 4. 11.)
-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과세표준에 산입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을 통하여 원천징수에 의한 과세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음 (법인-3688, '08. 11. 28.)
- 비영리내국법인은 이자소득의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을 매사업연도마다 선택적용 가능하며,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서이46012-10574, '02. 3. 21.)



2)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 특례 [법규칙 §82 ②]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간이신고서식(별지 제56호 서식 등)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기납부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류(법규칙 §82 ②)

- ①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법규칙 별지 56호 서식)
-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법규칙 별지 27호 서식)(갑)(을)
- ③ 원천납부세액명세서(법규칙 별지 제10호 서식(갑)(을)) 내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법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 이자소득과 이자소득 외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부동산임대소득(수익사업)과 이자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등 법인세법 제60조의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함 (서면2팀-1355, '06. 7. 19.)

마. 수익사업 개시 신고

비영리법인이 새로 수익사업(법법 §4 ③ 1호 및 7호)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서(법규칙 별지 제76호의4)와 함께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 등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법 §110]

◇ 과세소득의 범위(법법 §4 ③)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및 소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그밖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작성사례

○ 재단법인 A장학재단은 이자소득외의 수익사업이 없으며 A장학재단과 지점 A1, A2의 2018사업연도('18. 1. 1. ~ '18. 12. 31.) 중 이자소득 및 사용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A장학재단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서식으로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

- 이자수익 내역 (단위 : 원)

구 분	수 입 이 자	원천납부액	실 수 입 액
합 계	100,000,000	14,000,000	86,000,000
A 장학재단	60,000,000	8,400,000	51,600,000
지점 A1	30,000,000	4,200,000	25,800,000
지점 A2	10,000,000	1,400,000	8,600,000

- 직전연도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내역 (단위 : 원)

설정연도	수입이자	직전연도말까지 고유목적사업지출액	잔 액
2017년도	50,000,000	30,000,000	20,000,000

- A장학재단은 금년도 발생한 이자소득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
- A장학재단은 2018년에 지점 A1의 내부수리비 2천만원, 불우학생에게 장학금으로 3천만원, 고유목적사업 관련 운용경비로 4천만원을 사용하였음

<참고> 고유목적사업비 지출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상계(법법 § 29 ③)

- ①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
- ②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봄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①소재지 서울특별시 중로구 중로5길 86(수송동)	②전자우편주소
③법인명 (재) A장학재단	④대표자성명 홍길동
⑤사업자등록번호 123-82-12345	⑥사업연도 2018. 1. 1. ~ 2018. 12. 31.
⑦전화번호 02) 123-1234	



	구 분	법 인 세	농 어 촌 특 별 세	
과세표준 계산	⑧이자소득금액계	100,000,000		
	⑨준비금손금산입액	100,000,000		
	⑩기부금손금산입액			
	⑪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손금산입			
	⑫각사업연도소득금액 (⑧-⑨-⑩-⑪)			
	⑬비과세소득			
	⑭과세표준(⑫-⑬)			
세액의 계산	⑮세율			
	⑯산출세액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 , 3/10,000)	
	⑰가산세액			
	⑱가감계(⑯+⑰)			
	기 납부 세액	⑲중간예납세액		
		⑳원천납부세액	14,000,000	
		㉑()세액		
	㉒계(⑲+⑳+㉑)	14,000,000		
	(세액, 미납일수, 세율)	(, , 3/10,000)		
	㉓추가납부세액			
㉔차감납부할세액 (⑱-㉒+㉓)	△14,000,000			
㉕문납할세액				
㉖차감납부할세액(㉔-㉕)	△14,000,000			

국세환급금	㉗예입처	공익은행	종로 (본)지점
계좌신고	㉘예금종류	보통예금	
	㉙계좌번호	123-12-1234567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종로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갑)]

(앞 쪽)

사 업 연 도	2018. 1.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갑)	법 인 명	(재) A장학재단
	~ 2018. 12. 31.		사 업 자 등 록 번 호	123-82-12345

1. 손금산입액 조정

① 소득금액	② 당기 계상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③ 「법인세법」 제 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④ 해 당 사 업 연 도 수 득 금 액 (①+②+③)	⑤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금액	⑥-1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	⑥-2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100,000,000	-	100,000,000	100,000,000	-	
⑦ 「법 인 세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⑧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3 제2호에 따른 금액	⑨ 수익사업 소득금액 (④-⑤-⑥-⑦-⑧)		⑩ 손금산입률	⑪ 손금산입 한도액 (⑤+⑧+⑨×⑩)	⑫ 손금부인액 [(②-⑪)>0]
-	-	0		$\frac{50(80,100)}{100}$	100,000,000	0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서

⑬ 사업연도	⑭ 손금산입액	⑮ 직전 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⑯ 해당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⑰ 익금산입액	⑱ 잔 액 (⑭-⑮-⑯-⑰)	
					⑲ 5년 이내분	⑳ 5년 경과분
2017	50,000,000	30,000,000	20,000,000	0	0	0
(당 기)	100,000,000	0	70,000,000	0	30,000,000	0
계	150,000,000	30,000,000	90,000,000	0	30,000,000	0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을)]

(앞 쪽)

사업 연도	2018. 1.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을)	법 인 명	(재) A장학재단
	~ 2018. 12. 31.		사업자등록번호	123-82-12345

지출내역				④금액	⑤비고
①구분	②적요	③지출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I. 지정기부금					
II. 고유목적 사업비	지점 내부수리비	○○공사	104-02-××××××	20,000,000	
	장학금 지급	김우등	820101-××××××××	10,000,000	
	장학금 지급	박착실	830301-××××××××	10,000,000	
	장학금 지급	최고수	830701-××××××××	10,000,000	
III. 고유목적 사업관련 운영경비	직원 급여	홍길순	700101-××××××××	23,000,000	
	사무실 월세	○○빌딩	106-03-××××××	12,000,000	
	전화요금	○○통신	106-85-××××××	2,000,000	
	전기요금등	○○전력	112-85-××××××	3,000,000	
IV. 기 타					
⑥계				90,000,000	

작성 방법

- 「법인세법」 제2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작성합니다.
- ②적요란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상세 항목을 적습니다.
예) 장학금 지급, 부동산(토지와 건물 구분 기재)취득, 의료기기 취득, 인건비 (임원과 직원 급여 구분 기재), 임차료, 전기료, 전화료 등
- 비영리법인인 장학재단의 경우에는 ③지출처란에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④금액란은 현금의 경우에는 현금지출액을, 현금 외의 기타의 경우에는 시가를 적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가액을 시가로 합니다.
- ⑥계란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감)(별지 제27호서식(감))”의 ⑥란의 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m²(재활용품))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갑)]

(앞 쪽)

사 업 연 도	2018. 1. 1. ~ 2018. 12. 31.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 인 명	(재)A장학재단
	사 업 자 등 록 번 호		123-82-12345	

원천징수 명세내용

①적 요	② 원천징수의무자		③ 원천징수일	④ 이자금액	⑤세율	⑥법 인 세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상호(성명)				
예금이자 (A재단)	xxx-xx-xxxxxxx	○○은행	2018.×.×	60,000,000	14%	8,400,000
" (A1)	xxx-xx-xxxxxxx	△△은행	2018.×.×	30,000,000	14%	4,200,000
" (A2)	xxx-xx-xxxxxxx	□□은행	2018.×.×	10,000,000	14%	1,400,000
합 계				100,000,000		14,000,000

210mm×297mm[일반용지 70g/m²(재활용품)]



3. 토지 등 양도소득과 관련한 내용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과세제의 또한, 비사업용 토지 등은 이와 별도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법법 §55의2]

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1)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

$$\begin{aligned} \text{각 사업연도소득} &= \text{익금} - \text{손금} \\ &= \text{양도가액} - \text{취득가액 등} \end{aligned}$$

- 양도가액이란 당해 자산의 양도금액, 취득가액 등이란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합니다.
 - 장부가액은 취득가액 또는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액에서 감가상각비 등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의 모든 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법 §60]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추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09. 3. 16. 부터 '12. 12. 31. 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부수토지 포함)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추가 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text{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text{양도가액} - \text{취득가액 등}) \times \text{세율}$$



○ 적용세율 [법법 §55의2 ①]

-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

과세대상 자산	세 율		
	'09.3.16~'12.12.31. 양도자산	'13.1.1~'13.12.31. 양도자산	'14.1.1~ 양도자산
투기지역에 있는 부동산 ■ 지정지역에 있는 주택 ■ 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 ■ 자가급등지역에 있는 부동산	10%	30% (미등기 40%)	10% (미등기 40%)
투기지역 외의 주택	비과세		
투기지역 외의 비사업용 토지	비과세		

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특례 [법법 §62의2]

법인세법 §4 ③ 1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60조 규정의 법인세 신고 대신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신고특례 적용대상 자산

- ① 소법 §94 ① 3호에 해당하는 주식과 법인령 §99의2 ①의 자산
 - ☞ 대주주의 상장주식과 장외거래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
- ② 토지·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
- ③ 소법 §94 ① 2호, 4호의 자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영업권, 이용권, 회원권 등

2)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등 양도소득 특례 신고 방법을 적용하여 신고한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손금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text{과세표준} = \text{양도가액} - \text{취득가액} - \text{자본적지출액} - \text{양도비} - \text{장기보유특별공제} - \text{양도소득기본공제}$$



☞ 과세표준 계산방법 [법법 §62의2 ④, 법인령 §99의2 ③]

양도가액, 필요경비 및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를 준용하여 계산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자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1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 제외)에는 그 자산을 출연한 자가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3) 세액의 신고 납부

2)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는 소득세법 제105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영리 내국법인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서」(법규칙 57의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정신고·납부기한 : 양도일이 속한 달(주식의 경우 양도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2월내

해당 사업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 등을 하여야 합니다. [법법 §62의2 ⑧ 단서]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법인령 §99의2 ⑤]



4) 양도자산이 비사업용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이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신고를 하는 경우라도 상기 '가.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하는 방법'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의 방법과 동일하게 추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소법 §104 ④에 따른 가중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법 §55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법 §62의2 ②]

◇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 법법 §3 ③ 1호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법법 §60 ①)하고,
 - 지정지역 등의 주택·비사업용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법법 §55의2)
- 법법 §3 ③ 1호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선택적용 가능)
 - ①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법 §62의2)
 -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하고
 - ☞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 제출(법인령 §99의2 ⑥)
 - 지정지역 등의 주택·비사업용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법법 §55의2)
 - ☞ 다만, 소법 §104 ④에 따른 가중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② ①로 신고·납부한 경우라도 법인세법 제60조 1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 가능
 - ☞ 이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은 법인세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법인령 §99의2 ⑤)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 비영리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고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라 자산양도소득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가중된 세율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납부 규정이 적용됨

(법규법인2014-92, '14. 7. 11.)



-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으로 임대하던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처분수입에 대하여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해당 토지의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198, '14. 6. 25.)
- 지역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규재산2013-176, '13. 6. 13.)
-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던 기간에 토지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는 지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던 기간에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후 같은 사업연도 내에 수익사업을 영위하였다도 위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특례조항(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을 적용할 수 있음
(대법원2010두3763, '12. 1. 26.)
- 비사업용 토지를 '09. 3. 16. 부터 '10. 12. 31. 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1095, '10. 11. 26.)
- 내국법인이 지정지역 안의 주택을 '10. 12. 31. 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함
(법인-241, '10. 3. 17.)
☞ '1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유예기간을 '12. 12. 31. 까지로 적용
- 비영리내국법인은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안 됨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을 양도하고 「법인세법」 제62조의2의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1290, '09. 11. 17.)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지원

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부법 §26 ① 18호, 부령 §45]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다음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에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②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③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 문화재를 제외)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한함)의 경내지 및 경내지 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 ④ 공익을 목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
 -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근로자를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⑤ 저작권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다음의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용역

- (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사) 한국방송작가협회
- (사) 한국음반산업협회
- (사)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 (재) 한국문화정보원
- (재) 한국언론진흥재단
- (사) 한국영화제작가협회
- (사)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 (사)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사)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 (사) 한국방송실연자협회
- (사) 한국영화배급협회
- (사)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⑥ 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교육재단이 「초·중등 교육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설립·경영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학교시설 이용 등 교육환경개선과 관련된 용역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공익법인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익단체 등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통칙 26-45-1]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에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예시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1. 한국반공연맹 등이 주관하는 바자(Bazaar)회 또는 의연금모집 자선회에서 공급하는 재화
2. 마을문고 본부에서 실비로 공급하는 책장 등 재화

●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부통칙 26-45-2]
주무관청에 등록된 영 제45조에 따른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다음 예시하는 경우와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산업. 다만, 영 제45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2. 자체기금 조성을 위하여 생활필수품·고철 등을 공급하는 사업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주무관청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비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대상임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79, '15. 8. 31.)
-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규부가2013-556, '14. 3. 14.)
-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법규부가2014-68, '14. 3. 7.)
- 비영리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현황 조사 및 분석, 과업방향 및 목표설정, 도시디자인 기본구상,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발굴 등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278, '13. 8. 28.)
-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683, '13.7.26.)
-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같은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에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236, '12. 12. 18.)
- 정부(고용노동부장관)에서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한 공익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직업세계관, 체험관, 진로설계관을 운영하여 청소년 등에게 이용하게 하면서 그 운영원가에 상당하거나 미달하는 입장료·체험료를 받는 경우 면세대상임 (법규부가 2012-355, '12. 9. 28.)



-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재)한국OOOO이 2010년 2월 19일 여성부 용역사업인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설치 및 행정지원’ 위탁사업을 조달청과 일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여성부에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0-101, '10.04.21.)
-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 면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학술, 전시, 후원광고, 부스임대에 대한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규부가2009-429, '10. 1. 11.)
-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재부가-175, '08. 12. 16.)
- 공익법인 소유의 체육시설(수영장, 헬스, 에어로빅 등)을 일반인에게도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국심2005서3130, '06. 6. 2.)
- 공익단체가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수익사업관련 재화는 과세대상임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단체 등이 자체기금 등의 조성을 위해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수익사업관련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면3팀-801, '04. 4. 23.)

나. 재화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부법 §274호, 부령 §52]

종교의식·자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다음의 재화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 사원 기타 종교단체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급여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 구호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구호 또는 사회복지용에 직접 제공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5. 출연자의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 과세

가.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 과세 [소법 §88 1호, 소령 §159]

출연자(개인)가 공익법인에게 채무인수 조건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출연하는 경우 채무상당액만큼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토지, 건물, 일정한 주식·출자지분, 사업용 고정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등 [소법 §94 ①]

나. 부담부 증여시 부가가치세 과세 [부법 §9 ①, 부법 §26 ① 20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법인에게 무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용 자산을 공익법인에게 채무인수 조건부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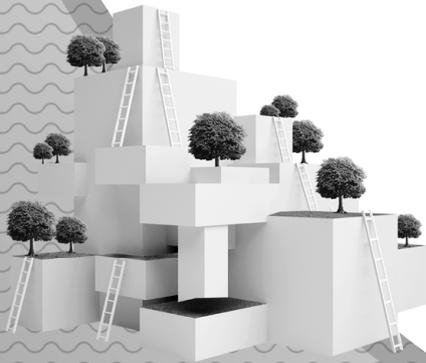
- 공익단체에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용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공익단체가 인수한 채무액 중 건물가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2, '14. 5. 28.)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익단체인 의료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동 사업자의 채무를 당해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1197, '12. 11. 30.)
- 출연받은 재산에 담보된 출연자의 채무를 공익법인 등이 인수하는 경우에 출연재산가액은 그 채무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차감한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출연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산-146, '12. 4. 13.)
-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공익단체에 채무인수부 조건으로 출연한 부동산에 대하여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함 (조심2011중1817, '11. 11. 22.)



III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1.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의무
2.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3.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4.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 의무
5.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
6.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7. 공익법인 등의 회계기준 적용의무
8.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제출 의무
9.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





Ⅲ.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1.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의무 [상증법 §48 ⑤, 상증령 § 41]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산에 관한 서류 및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제출 서류

1) 결산에 관한 서류

공익법인은 결산에 관한 서류(「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것에 한함)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익법인 결산보고서 제출제도 [상증령 § 41 ①]

□ 주요내용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수지계산서 등 포함)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결산보고서 주무관청 제출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것이 없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동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 위 결산보고서 제출제도에서 결산보고서란 ① 고유목적사업부문 ② 수익사업부문 ③ 총계부문별로 작성된 것을 의미함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수익사업부문의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부문과 총계부문의 결산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학교법인의 결산에 관한 서류 제출의무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결산에 관한 서류 중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학교회계 관련 세입·세출결산서 포함)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재산-3958, '08. 11. 25.)

2)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상증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는 다음 각 호의 상증규칙 별지서식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별지 제24호 서식)
- ②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2 서식)
- ③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3 서식)
- ④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4 서식)
- ⑤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별지 제26호 서식)
- ⑥ 이사 등 선임명세서(별지 제26호의2 서식)
- ⑦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별지 제26호의3 서식)
- ⑧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고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여 주무부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서류
 - ☞ 주무부장관이 없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인정 필요
 - (13. 2. 15. 이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분부터 적용)



나. 제출 기한

공익법인은 결산에 관한 서류 및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익법인의 사업연도는 당해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며, 사업연도가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상증령 §41①, 상증규칙 §11]

다. 보고서 등 미제출 가산세 부과 [상증법 §78 ③]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에 출연재산·운용소득 및 매각재산 등의 명세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를 가산세로 과세합니다.

- ☞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2 ①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함
-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한도 없음 [국기법 §49 ①]



2.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상증법 §50의3]

가. 개요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13. 12. 31. 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총자산가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이 공시대상에 해당함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공익법인공시 → 공시/공개 등록하기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나. 공시의무 제외대상 공익법인

①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 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 '13. 12. 31. 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총자산가액 10억원 미만인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이 공시의무 제외대상에 해당함

② 상증령 §12 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종교법인)

다. 결산서류 등의 자율서식 공시제도 [상증령 §43의3 ④]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가 없는 공익법인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율서식(상증규칙 §25 ⑦, 별지 제31호의 2서식)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작성하여 공시할 수 있습니다. ↳ '1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라. 공시대상 결산서류 등 [상증법 §50의3, 상증령 §43의3 ③]

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은 다음의 서류를 표준서식(상증규칙 별지 제31호)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① 재무상태표
- ② 운영성과표
- ③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 내용
- ④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 ⑤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 ⑥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와 첨부된 재무제표
- ⑦ 주식보유 현황 등에 관한 사항
 -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사항
 -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한 자와 그 주식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
 - 주식등의 보유로 인한 배당현황, 보유한 주식등의 처분에 따른 수익현황 등
 -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결과’
 - ☞ ‘17.2 7. 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 상증법 §50 ③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현황
 - ☞ ‘13.2 15.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마. 공시요구 및 오류시정 요구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국세청장은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 등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은 공시요구를 하거나 오류시정을 요구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해당 공익법인의 주무부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장의 공시요구 또는 시정요구를 지정된 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 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함)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바. 공익법인 공시자료의 제공

국세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결산서류의 제공을 신청한 자에게 공익법인이 공시한 결산서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증법 §50의3 ③, 상증령 §43의3 ⑥]

- ① 국책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 ② 공시의무를 이행한 공익법인

☞ '19. 2. 12. 이후 공시한 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공시의무 여부 판단 시 제외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없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를 판단할 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은 포함하지 않음 (상증세과-177, '13. 6. 4.)
- 상증법상 공익법인의 경우에 공시의무가 있음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재산-1193, '09. 6. 17.)

3.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상증법 §51]

공익법인은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 및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가. 장부의 작성방법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 및 운용 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이어야 하며, 증빙서류에는 수혜자에 대한 지급명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중으로 대차 평균하게 기록된 전표와 증빙서류 또는 계산서(세금 계산서 포함)와 영수증에 의하여 재산의 보유, 운용상태와 수입·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한편, 소득세법 제160조 및 법인세법 제112조 단서에 따라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 관하여 작성·비치된 장부와 증빙서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작성·비치된 것으로 보며, 장부와 증빙서류에는 마이크로필름·자기 테이프·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 보존 장치에 저장된 것을 포함합니다.

나.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가산세 [상증법 §78 ⑤]

장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할 공익법인이 그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text{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 \text{출연재산가액}^{**}) \times 0.07\%$$

*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합계

**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상증령 §80 ⑨]

다음의 공익법인(상증령 §43 ② 각 호에 해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1)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증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에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평가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면서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되는 수입금액

※ '13. 12. 31. 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은 총자산가액 10억원 미만인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에서 그 적용대상이 확대됨

-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출연자 1인과 그 특수관계자와의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함)

- (3) 국·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서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함)

(비교)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가 있습니다. [법법 §112 단서]

• 법법 §112 【장부의 비치·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4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

• 법법 §75의3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내국법인이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 (단, 비영리내국법인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법인은 제외)

4.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 의무 [상증법 §50]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인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가.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9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자산총액 판정시 부동산(토지·건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1조·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대차대조표상의 가액 중 큰 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상증령 §43 ② 1호]

** 수입금액 :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되는 수입금액 [상증령 §43 ② 1호]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 확대(상증령 § 43 ②, '10년 이후 개정분)

-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11. 7. 25. 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자산총액(10억→5억), 수입금액 등(5억→3억) 기준 하향
(’14. 1. 1. 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나. 세무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 [상증령 §43 ②]

- ①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증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 총자산가액 10억원 미만인 경우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에서 변경('13. 12. 31. 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





- ②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출연자 1인과 그 특수 관계자와의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함)
- ③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서 감사원의 회계 검사를 받는 공익법인(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함)

다. 세무확인 실시·보고 기한 [상증령 §43 ⑥, 상증규칙 §14 ③]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공익법인은 그 결과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보고 미이행 가산세 [상증법 §78 ⑤]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text{MAX}\{(\text{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1 + \text{출연재산가액}^2) \times 0.07\%, 100\text{만원}^3\}$$

- 1)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거나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연도 수입금액
- 2)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속 공익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한 가액과 회계감사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속 공익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한 가액의 합계액을 말함
 - ↳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2 ①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함.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한도 없음 [국기법 §49 ①]
- 3) '1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5항 본문 중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의 수입금액을 의미함 (재산-168, '09. 9. 9.)

마. 외부전문가(2명 이상)

외부전문가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말하며,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되어야 하므로 외부전문가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할 수 없습니다.



◇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 [상증령 § 43 ①]

1. 해당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설립자(이하 “출연자 등”) 또는 임직원
 - * 출연자 :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출연한 사람 제외
 - * 임직원 :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포함
2. 출연자 등과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사람
3. 출연자 등 또는 그가 경영하는 회사(해당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자 등이 영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인 경우를 말함)와 소송대리, 회계감사, 세무대리, 고문 등의 거래가 있는 사람
4. 해당 공익법인 등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
5. 기타 해당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그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6. 제1호(임직원은 제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법인에 소속된 사람

바. 세무확인할 사항

외부전문가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적정하게 공익목적사업에 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주요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출연재산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

- 출연재산의 3년내 공익목적 사용 및 사용내역의 적정 여부



-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주식보유기준 초과 여부
-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중 기준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기준금액 이상 공익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 공익사업 수혜자의 적정 여부 등

② 자기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 출연재산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 또는 낮은 가격으로 사용·수익하게 하였는지 여부 등

③ 기타 공익법인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이사 중 특수관계인의 기준 초과 여부 및 특수관계인의 임직원 채용 여부
- 특정법인에 대한 광고·홍보 여부
-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준수 여부
- 각종 보고서의 제출 여부
- 기타 공익법인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공익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 또는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등

④ 세무확인 보고

- 상증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부록 참조)

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작성 및 보고

외부전문가는 위 세무확인사항을 확인하여 공익법인 등이 작성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각호 서식의 적정여부를 검증하고, 별지 제32호 서식의 세무확인서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등은 공익법인 등이 비치하고 있는 장부, 결산 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외부전문가가 확인한 사실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여부 >

-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5%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는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재산세과-1118, '09. 6. 5.)
- 초, 중, 고와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초, 중, 고 부분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2007년도분 세무확인은 '08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월내에 받아야 하는 것임
(재산-63, '09. 1. 8.)
- 전문대학을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하여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임
(재산-2790, '08. 9. 11.)
- ☞ 상증법 제50조 제3항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는 학교법인이 자진해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 면제
- ☞ (법개정)'17. 1. 1. 이후 사업연도 분부터 외부감사받은 경우에도 세무확인대상에 포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 안 됨
(재삼46014-174, '99. 1. 25.)

< 자산 총액의 범위 >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에 해당 여부
세무확인대상 공익법인 여부 판단 시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된 모든 자산의 가액을 말하며,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은 포함하지 않음
(재산세과-60, '13. 2. 25.)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산총액 30억원 이상('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자산총액 5억)의 공익법인에서 말하는 자산총액은 고유목적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되는 모든 자산가액을 말함
(서면4팀-793, '08. 3. 25, 재삼46014-1295, '97. 5. 23.)

< 가산세 부과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5항 본문 중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에서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의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168, '09. 9. 9.)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보고서 제출기한 내에 세무확인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대구지법2004구합420, '04. 12. 16.)
- 세무확인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총출연재산가액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뿐 당해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1만분의 7을 곱하여 산정
(국심2003서3502, '04. 4. 20.)
-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불성실가산세 적용시,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연재산가액 ‘누계액’이 아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출연받은 ‘연간’ 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3구2247, '03. 10. 15.)
-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보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2000두5944, '02. 4. 12.)

5.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 [상증법 §50 ③]

가. 개요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17.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보고 대상에 포함

나. 제외 대상

- 다음 어느 하나의 공익법인은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 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함)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 상증령 §12 1호(종교), 2호(학교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다. 감사보고서 제출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의무 미이행시 불이익(상증법 §78 ⑤ 3호)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아래 산식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며, '07. 12. 31. 개정된 동일기업 주식출연·취득제한 완화(5% → 10%), 계열기업 주식보유제한 완화(30% → 50%)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 출연재산가액) \times 0.07\%$$

☞ '17.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상증법 §50의2]

가. 개요

공익법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증령 제43조제4항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종교법인)은 제외합니다.

여기서 전용계좌란 ①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으로서 ②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의미하며, 공익법인별로 둘 이상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나. 전용계좌 사용의무 거래

- ①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 수표·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②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 다만, 현금으로 직접 받은 경우로서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날로부터 5일까지 전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는 제외함. 이 경우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의 현금수입 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
- ③ 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 ④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기부금·장학금·연구비·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다. 전용계좌 외 거래명세서 작성 보관

전용계좌 사용대상거래가 아닌 경우 그 거래일자, 거래상대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및 거래금액 등을 기재한 전용계좌외 거래명세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에 수록·보관하여 즉시 출력할 수 있는 상태에 둔 때에는 전용계좌외 거래명세서(상증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를 작성하여 보관한 것으로 봅니다.

□ 전용계좌 외 거래명세서 작성·보관 제외대상

- ① 소득세법 §160의2 ② 3호, 4호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갖춘 경우
- ② 거래건당 금액(VAT 포함)이 1만원('08. 12. 31.까지는 3만원) 이하인 수입과 지출 등
- ③ 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거래 등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208의2 ① 2호~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95의2 2호~4호, 7호, 8호의2~8호의6의 수입과 지출

라. 전용계좌 개설, 변경 및 추가

공익법인은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 개설(변경·추가) 신고서를 납세지(본점이나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16. 1. 1., '17. 1. 1. 또는 '18. 1. 1.이 속하는 과세기간(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으로서 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 6. 30.까지 개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용계좌를 변경·추가하는 때에는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주의) 지점법인에서 지점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음

마. 의무위반시 가산세 [상증법 §78 ⑩]

- ①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





②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MAX[(1), (2)]

- (1)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당해 공익법인 수입금액 총액에서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 관련 수입금액을 차감) 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 (2) 전용계좌 사용의무대상 거래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바. 적용시기

-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 '08. 1. 1. 이후 최초로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 또는 지출 분부터 적용
- 의무위반 가산세 규정 : '0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의 총액에 현물로 출연받은 부동산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과-0243, '17. 10. 30.)
- 공익법인 등이 기부금을 받는 계좌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의 총액에 현물로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1688, '17. 12. 07.)
- 공익법인이 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전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0.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함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09, '17. 10. 17.)
-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출연여부 관계없이 전용계좌 사용의무 및 공시를 이행해야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은 같은 법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출연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재산세과-309, '11. 6. 27.)

- 학교법인의 등록금 계좌는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대상이 아님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학교를 경영하는 「사립학교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좌와 등록금을 교육사업비로 지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3956, '08. 11. 25.)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출연금 수입계좌, 국가연구개발 및 민간연구개발(수익사업 관련) 목적으로 지급받은 연구비 수입계좌 등은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의 개설사용 의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재산-3781, '08. 11. 14.)
-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및 정기에금은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 아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로서 동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기에금으로 운용하는 경우 당해 정기에금계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2789, '08. 9. 11.)





7. 공익법인 등의 회계기준 적용의무 [상증법 §50의4]

가. 개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상증법 §50 ③)와 외부회계 감사(상증법 §50의3)는 의무화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기초가 되는 회계기준은 부재하여 공익법인마다 상이한 회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공익법인 간에 비교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공익법인 회계기준 심의위원회」에서 공익법인 회계기준(기획재정부 고시 2017-35)을 제정하였고 공익법인 등이 외부 회계감사의무,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나. 적용제외 [상증령 §43의4 ②, 상증규칙 §14의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인천대학교

다. 적용시기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18. 1. 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 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18. 1. 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의 총자산 가액의 합계액이 20억원 이하인 공익법인과 '18. 1. 1.부터 '18.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신설되는 공익법인은 '18. 1. 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와 그 다음 회계연도에는 단식부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8.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보관·제출 의무 [법법 §112의2]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작성·보관의무 [법법 §112의2 ①]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부금액 등이 포함된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법규칙 75의2 서식)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 '08. 12. 31. 까지 :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
- '09. 1. 1. ~ '09. 12. 31. :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
- '10. 1. 1. 부터 :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자

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의무 [법법 §112의2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법규칙 제75의3 서식)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납부」 > 「일반신고」에서 보다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화면 접속 방법은 “VI. 부록 - 10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의무 위반시 가산세 [법법 §75의4]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다음과 같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①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신청한 해당 금액으로 함)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② 기부자별 발급명세의 경우 :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제출하는 [별지 제25호의2 서식]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의 경우 연간 출연(기부)금액 50만원 이상분은 출연자별 출연명세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개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1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제10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법규과-93. '13. 1. 28.)



9.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

가. 개요

과세자료는 거래 상대방의 세원을 포착하여 과세의 근거가 되게 하는 자료이며 과세자료 제출의무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협력 의무입니다.

따라서,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공익법인의 경우에도 과세자료제출의 납세협력의무가 있으므로 수취한 (세금)계산서합계표등 과세자료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법 §54 ⑤, 부령 §99]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아래의 법인, 단체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각급학교 기성회·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년 2월 10일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54 ⑤에 따라 제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법법 §120의3, 법인령 §163의2 ①]



이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00분의 5(법인세법 §75의8 ① 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법법 §75의8]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의 경우에는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법인령 §120 ③]

다.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 제출 [법법 §121 ⑤]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매년 2월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00분의 5(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법인세법 §75의8 ① 4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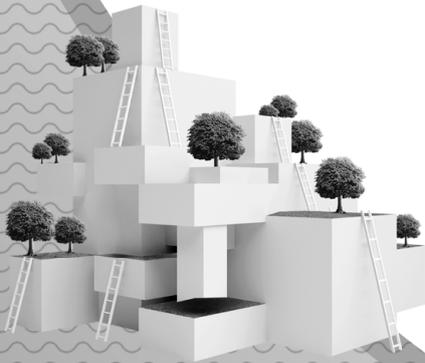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법법 §75의8, 법인령 §120 ③]



IV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1. 출연자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2.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3.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
4. 주식의 취득 및 보유시 지켜야 할 일
5.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시 지켜야 할 일
6.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금지
7. 자기내부거래 시 지켜야 할 일
8.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이 제공 금지
9. 공익법인 해산시 지켜야 할 일



IV.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익사업 지원을 위하여 공익법인에게 다양한 조세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공익법인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출연재산 사용의무 등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여 사후관리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법인이 그 목적사업에서 벗어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또는 가산세 등을 과세하게 됩니다.

1.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상증법 §48 ② 1호, 상증령 §38]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때에는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 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여야 합니다.

가. 개요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이라 함은

- ①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과
- ②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허가 필요

(13. 2. 15. 이후 주무관청에 허가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지 않는 것 [상증령§38 ②]

1.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과다 인건비(법인령 §56⑪)

- 다음의 법인이 임원·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총급여액* 중 8천만원 초과분
 - (1) **법법 §29 ①4호**에 따라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
 - (2) **조특법 §74 ①2호¹⁾ 및 8호²⁾**에 따라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 총급여액(소법 §20 ① 【근로소득】)

- ☞ 해당 사업연도 근로기간1년 미만 : 12개월로 환산 [총급여액을 근로기간 월수(1월미만 1월로 나눈 금액×12)]
-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등
-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른 상여
-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에게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제21조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

○ 과다 인건비 제한 예외

-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기 전에 해당 임원, 종업원의 인건비 지급규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인건비 지급규정 및 주무관청의 승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 '1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전기료·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상증통칙 48-38...2]

- ☞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 1. 출연재산이 현금인 경우
 -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 2. 출연재산이 제1호 외의 재산인 경우
 -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의 금액
 -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금액
 - 당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제1호 각목의 용도에 지출한 금액



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용

출연받은 재산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재원으로서 공익법인이 이를 임의로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조세지원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11. 1. 1. 이후 상속·증여 분부터 적용)

☞ 주무부장관이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인정 필요

(‘13. 2. 15. 이후 인정하는 분부터 적용)

이 경우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출연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 보고서 등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만약에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3년 이내 미사용 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1) 증여세 과세가액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포함)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였거나 미사용된 재산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증여세 과세가액 = ①+②

①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재산의 가액

②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미사용 또는 미달 사용한 재산의 가액

다만, 출연받은 재산·운용소득·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및 잔여재산 중 일부가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출연받은 재산가액 등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상증령 §38 ⑨]

* '04. 1. 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①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사용인의 불법행위로 출연받은 재산 등이 감소된 경우
 - ☞ 출연자 및 그 출연자와 상증령 §2의2 ①1호의 관계(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에 있는 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제외

* 국기령 §1조의2 ① 1호~4호

-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② 출연받은 재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증여시기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등 외에 사용한 경우 그 사용일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년이 되는 때를 증여시기로 봅니다.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외에 사용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외에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일46014-10322, '02. 3. 15.)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서면4팀-63, '08. 1. 9.)
- 공익법인이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사유가 발생하므로 과세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대법원2015두50696, 2017. 8. 18.)

3) 가산세 적용 제외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재산-186, '11. 4. 12.)





계산사례

- A공익법인이 '15. 7. 1. 특정 개인으로부터 토지 1,000㎡를 출연 받아 500㎡는 '16. 12. 1. 공익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500㎡는 '18. 7. 1. 현재 출연 받을 당시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 시점별 토지의 평가액(㎡당)

(단위 : 천원)

'15. 7. 1.	'16. 12. 1.	'18. 7. 1.
100	105	110

- (풀이) ① 고유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분 = $500\text{㎡} \times 105\text{천원} = 52,500\text{천원}$
 ②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미사용 분 = $500\text{㎡} \times 110\text{천원} = 55,000\text{천원}$
 ③ 증여세과세가액 = ① + ② = 107,500천원

※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라. 증여세 등 적용 제외 [상증령 §38 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상증령 §12 1호의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현금, 다만 부동산 및 주식 등으로 출연하는 경우 제외)

마.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상증법 §4의2 ⑤]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이 상증법 §48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여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에 한함)로서 다음의 요건(상증령 §3의3 ②)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① 상증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또는 가산세 부과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재산출연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② 이 기간 중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이사를 제외함)이 아니었어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였을 것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과 공익목적사용 의미>

- 공익법인 사후관리대상은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에 한정해야 하는 것임
공익법인 사후관리규정의 입법취지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사후관리대상은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에 한정해야 할 것임 (조심 2010구3122, '11. 5. 17.)
- 출연자별로 구분이 가능한 종교현금은 출연재산임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가능한 현금의 경우에는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재산-56, '09. 8. 28.)
-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의 의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를 의미함 (재산-3782, '08. 11. 14.)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여부 판단>

-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 [상증통칙 48-38...3 1호]
- 임야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임야를 출연받을 당시 이미 개발 제한구역 내에 있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종교시설의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법률상 장애사유를 알았거나,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으므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1두25807, '14. 1. 29.)



-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총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재산-939, '10. 12. 13.)
- 관리비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재산-428, '09. 10. 9.)
-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범위
교회재산을 부목사, 전도사 등의 사택으로 사용함은 직접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것이나, 경내에 있는 경우로서 그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함 (재산세과-213, '09. 9. 14.)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재경부 재산-322, '08. 2. 25.)
- 출연받은 골동품을 박물관에 전시하는 경우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골동품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서 당해 법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에 전시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에 해당
(서면4팀-1044, '07. 3. 30.)
- 공익법인 등이 이사장에게 지급하는 거마비, 경조사비, 판공비 등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 볼 수 없음 (서일46014-10258, '02. 2. 28.)
- 출연받은 건물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연받은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제도46014-12636, '01. 8. 11.)

<공익목적외 사용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 판단>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 중 일부를 출연자에게 무상임대하고 출연자가 해당 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과세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은 사용·수익하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임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26, '18. 3. 6.)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목사의 개인계좌로 이체되는 등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조심2013중3163, '13. 11. 14.)

- 공익목적사업에 확정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임
의료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됨으로써 각 토지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거기에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1두12580, '13. 6. 27.)

- 산학협력단이 출연재산을 다른 산학협력단에 재출연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출연받은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규재산2013-82, '13. 3. 28.)

- 출연자등이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학교법인이 토지를 출연받은 후 출연자 등에게 건물부지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그 학교법인을 위하여 건물을 물상담보로 제공한 것은 토지의 사용수익과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음

(대법2009두17575, '11. 10. 13.)

-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산-161, '11. 3. 30.)

- 종교시설에 출연한 토지가 어떠한 종교시설도 없이 등산로로 이용되는 등 종교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증여세 과세 (조심2010전2070, '10. 11. 8.)

IV



-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
(재재산-806, '10. 8. 25.)
- 공익법인이 사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재산세과-540, '10. 7. 26. 재재산46014-321, '95. 8. 17.)
 - ☞ 증여세가 과세된 출연재산을 사후관리하여 다시 과세하는 경우 이중과세
 - 공익법인이 사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와 출연재산 보고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 사후관리의무 위반시 공익법인에게 신고납부의무를 부여하지 아니함
-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받은 출연자는 같은법 §31⑤에 의하여 그 반환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서면4팀-2999, '07. 10. 18, 서면4팀-3003, '07. 10. 18.)

<증여세 과세시점 판단>

- 출연재산을 3년 이내 미사용시 과세요인 발생 및 증여재산 평가시점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3년이 되는 때가 증여세 평가 기준일임
(대법원2015두50696, '17. 8. 18.)
-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일을 증여세의 과세요건 성립일로 볼 지 여부
공익법인 기출연재산을 주무부장관 등이 승인한 사용기간내에 목적의 동일 또는,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지 못한 채 공익법인이 설립허가가 취소되었다면 그 설립허가 취소일을 증여세의 과세요건 성립일로 보아 증여세 부과 처분함은 정당함
(조심2008구3556, '09. 6. 9.)

2.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상증법 §48 ② 4호·5호, 상증령 §38 ④·⑦, 상증규칙 §11의2]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매각대금의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가. 개요

매각대금이란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으로 증가한 재산을 포함한 총매각대금에서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지방세를 차감한 것’을 말합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는 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운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재산은 제외)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19. 2. 12.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실적에서 제외됩니다.

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출연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방법 [상증령 §40 ① 3호]

$$\text{증여세 과세가액} = \left(\frac{\text{매각대금}^*}{\text{사용기준금액}^{**}} \times \frac{\text{목적 외 사용금액}}{\text{매각대금}^*} \right) + \text{미달사용금액}$$

* 매각대금에는 증가된 재산이 포함되며 당해 자산의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됨

** 사용기준금액 = 매각대금 × 90%



계산사례

- 출연받은 건물을 '12. 1. 1. 10백만원에 매각하고 제세금 1백만원을 납부하였으며,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 2백만원, 수익사업용 부동산 2백만원 및 고유목적사업비로 1백만원을 사용하였고, 고유목적사업 외로 2백만원을 사용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풀이) ① 매각대금 고유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분

$$= [\text{매각대금}\{10\text{백만원} - \text{제세금}(1\text{백만원})\} \times 90\%] \\ \times \{ \text{목적외사용금액}(2\text{백만원}) / \text{매각대금}(9\text{백만원}) \} = 1.8\text{백만원}$$

② 사용기준 미달금액

$$= \text{매각대금사용기준액}(8.1\text{백만원} \Rightarrow 9\text{백만원} \times 90\%) \\ - \{ \text{직접고유목적사용액}(5\text{백만원}) + \text{①}(1.8\text{백만원}) \} = 1.3\text{백만원}$$

③ 증여세과세가액 = ① + ② = 3.1백만원

다. 사용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

출연재산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30%, 2년 이내에 6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비율에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상증령 §38 ⑦, 상증법 §78 ⑨]



※ 매각대금 사용기준

사용기간	의무 사용비율	미달하여 사용하는 경우
1년 이내	30%	미달 사용액의 10% 가산세 부과
2년 이내	60%	미달 사용액의 10% 가산세 부과
3년 이내	90%	미달 사용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부과



계산사례

- 12월말 공익법인인 A법인이 출연받은 건물을 '15. 5. 1. 10백만원에 매각하고
 제세금 1백만원을 납부하였으며, '15년도에 고유목적사업에 2백만원, '16년도에 2백만원,
 '17년도에 1백만원 사용하였고, '18. 5. 1. 에 고유목적사업 외로 1백만원을 사용
 하였으며, '18년도 중에는 고유목적사업에 1백만원을 사용하였다.
 이 경우 연도별 가산세 및 증여세액은?

IV

(풀이)

일 자	적 요	금 액	누적 사용비율	비 고
2015. 5. 1	매 각 대 금	9,000,000		
2015년도	고 유 목 적 사 업 비	2,000,000		
2016년도	고 유 목 적 사 업 비	2,000,000	44.4%	
2017년도	고 유 목 적 사 업 비	1,000,000	55.6%	
2018. 5. 1.	목 적 외 사 용	1,000,000		
2018년도	고 유 목 적 사 업 비	1,000,000	66.7%	

* 계산편의상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① 2016년도 :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은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1차 연도의
 합계액이 4백만원으로 매각대금 사용비율 44.4%(4백만원/9백만원)로
 30%를 초과하므로 가산세 부과대상 아님
- ② 2017년도 : 사용기준 미달금액 = 40만원(9백만원 × 60% - 5백만원)
 가산세액 = 40만원 × 10% = 4만원



③ 2018년도

(1) 고유목적사업 외 사용

$$\begin{aligned} \text{증여세과세가액} &= \text{매각대금의 } 90\% \times \text{목적 외 사용금액/매각대금} \\ &= (9\text{백만원} \times 90\%) \times (1\text{백만원}/9\text{백만원}) = 90\text{만원} \end{aligned}$$

※ 고유목적사업 외 사용일 '18. 5. 1. 을 기준으로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과세

$$\begin{aligned} \text{(2) 사용기준 미달금액} &= (9\text{백만원} \times 90\% - 90\text{만원}) - 6\text{백만원} - 4\text{만원(가산세)} \\ &= 116\text{만원} \end{aligned}$$

$$\text{(3) 증여세액} = 20\text{만}6\text{천원} \{ (90\text{만원} + 116\text{만원}) \times 10\% \}$$



부동산 매각에 따른 처리요약(처분시점의 부동산 사용 현황에 따른 구분)

처분시점		법인세 과세소득		당기 순이익	운용 소득	사후관리*
고유목적사업용	사용	3년간 계속 사용	×	×	×	매각대금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3년 미사용	○	×	×	
	미사용	○	×	×		
수익사업용		○		○	×	

- * 《분석》 ① 출연재산은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함
 ②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으로 사용되는 것 포함)하다가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은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함
 ③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다가 매각한 경우에도 매각대금은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함

● 영 제38조 제5항 제1호에서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금액”이라 함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 중 매각한 재산의 금액을 말한다. [상증통칙 48-38...4 ②]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여부 판단>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의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1, '16. 6. 7. 법제처 16-0422, '17.1.26.)
-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재산-827, '11. 10. 4.)
- 종교단체가 교인 등에게 매각대금을 대여하는 경우
교회가 교인 등에게 대여기간 6개월 이상으로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대여하는 경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재산세과-213, '09. 9. 14.)
-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전세보증금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건물의 임차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재산세과-3144, '08. 10. 7.)
-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매각대금을 사용한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현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현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재재산-322, '08. 2. 25.)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거주할 사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96, '07.12.27)



- 출연재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고유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불법매각하고 그 대금을 유출해 고유목적사업 외에 임의로 사용한 경우 '3년내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매각시점'에 즉시 증여세 추정 대상임 (국심2000서2243, '01. 2. 21.)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라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과-00805, '16. 7. 15.)
-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제4호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함)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에 미달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사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며, 3년 이내에 90%에 미달하게 사용한 때에는 그 미달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재산세과-4454, '08. 12. 30.)
-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후관리의 적용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출연받은 토지를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됨
(재산-3957, '08. 11. 25.)
- 매각대금 사후관리규정 적용대상 재산
공익법인에 대한 매각대금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및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4팀-2755, '06. 8. 10.)

3.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

[상증법 §48 ② 3호, 5호 및 상증령 §38 ⑤, ⑥]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턴 1년 이내에 70%(성실공익법인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가. 개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이란 정관상의 고유목적에 사용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포함합니다.

다만, 종전에는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용인 인건비 전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았으나, '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다음의 인건비는 직접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과다 인건비 [법인령 §56 ⑩]

- 다음의 법인이 임원·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총급여액* 중 8천만원 초과분
 - (1) 법법 §29 ①4호에 따라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
 - * 해당 사업연도 근기간 1년 미만 : 12개월로 환산 [총급여액을 근기간 월수(1월미만 1월로 나눔) X 12]
 - (2) 조특법 §74 ①2호¹⁾ 및 8호²⁾에 따라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 과다 인건비 제한 예외
 -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기 전에 해당 임원, 종업원의 인건비 지급규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인건비 지급규정 및 주무관청의 승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 '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나. 출연재산 운용소득이란

출연재산을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을 말합니다.

다만,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의 결산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운용소득을 계산하되,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상증통칙 48-38...4 ①]

1) 운용소득의 사용기준 [상증령 §38 ⑤]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결과 발생한 운용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70%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text{사용기준금액} = (\text{A} - \text{B} + \text{C}) \times 70\%$$

- ①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등
 (+)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출연재산과 관계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출연재산 양도차익
 (+)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당해연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
 (+)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분리과세를 선택한 이자소득도 운용소득에 포함됨)
- ②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③ 직전연도 운용소득 미달사용금액 - 미달금액에 대한 가산세

- 운용소득 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기준 [상증통칙 48-38...4]
 - ①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법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 ③ 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및 영 제38조 제5항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함
 - ④ 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이 재원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구분에 의하고,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연재산 운용소득, 출연재산 매각금액, 출연받은 재산, 기타 재산의 순서대로 사용한 것으로 봄
-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하지 않음 [상증통칙 48-38...3 3호]

IV

2) 사용의무의 탄력적 운용 [상증령 §38 ⑥]

운용소득의 「사용의무 기준금액」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개 사업연도와의 5년 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등이 운용소득을 공익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사업연도별로 많이 지출하거나 적게 지출할 수 있으므로 기준금액과 사용실적을 각각 5년 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사업연도의 사용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개 사업연도와의 5년 간의 평균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여 사용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않으면 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사례

- '05년에 설립한 공익법인 甲(12월말 법인)의 매년 운용소득,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다음과 같은 경우 2018년 운용소득 사용의무기준 위반 여부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당해년도)	5년 평균
① 출연재산 운용소득(전년소득)	100	120	100	50	80	90
② 사용의무기준금액(① × 70%)	70	84	70	35	56	63
③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100	120	70	40	50	76
④ 적합 여부 판정	적합	적합	적합	적합	미달	적합

- (풀이) 사용의무 위반여부 검토

(1) 2018년 당해 사업연도 기준

- [사용실적(50백만원)] < [사용의무 기준(56백만원)] → 기준 미달

(2) 2018년부터 5년간 평균 기준

- [사용실적(76백만원)] > [{운용소득의 사용의무 기준(63백만원)}

= (70 + 84 + 70 + 35 + 56)백만원 ÷ 5] → 기준 적합

⇒ 2018년의 운용소득 사용의무 충족(∴ 세법상 사용의무 위반 아님)

다.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 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이 운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증령 §40 ① 2호의 2]

$$\text{증여세 과세가액} = \text{출연재산의 평가가액}^* \times \frac{\text{목적 외 사용금액}}{\text{운용소득금액}}$$

*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분은 제외

□ **출연재산의 평가** [상증법 §48 ②, 상증령 §40 ① 2호의2, 상증규칙 §13 ②, ③]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여 증여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운용소득을 사용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수익용이나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에 대한 대차대조표상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그 가액이 상증법 제4장(재산의 평가)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상증법 제4장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출연재산 중 1년 이상 보유한株式이 있는 경우 그株式은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IV

● **출연재산의 평가** [상증통칙 48-40...8]

공익법인이 1년 이상 보유한株式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1년 이상 보유한株式을 말한다.

라.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운용소득 중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달하게 사용한 운용소득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상증법 §78 ⑨]



계산사례

1. 100억원 상당의 수익용재산으로 10억원의 운용소득을 획득하여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7억원 중 4억원만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3억원을 미사용한 경우의 가산세는?

(풀이) 3억원(미달사용액)×10%(가산세율) = 가산세 3천만원

☞ 미달사용액에 대하여 1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미사용액(3억-0.3억원=2.7억원)은 다음연도 운용소득에 가산합니다.(상증령 §38 ⑤ 후단)

2. '05년에 설립한 공익법인 甲(12월말 법인)의 매년 운용소득, 공익사업 사용실적이 다음과 같은 경우 2017년 운용소득 사용의무기준 위반 여부와 2017년에 발생한 운용소득이 90백만원(이월금액 제외)인 경우 2018년 사용의무 기준금액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당해연도)	2019년
① 출연재산 운용소득(전년소득)	100	120	100	50	80	90
② 사용의무기준금액(①×70%)	70	84	70	35	56	?
③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80	85	70	40	20	
④ 적합 여부 판정	적합	적합	적합	적합	미달	

- (풀이) 사용의무 위반여부 검토

(1) 2018년 당해 사업연도 기준 : 36백만원 기준미달

- [사용실적(20백만원)] < [사용의무 기준(56백만원)]

(2) 2018년부터 5년간 평균 기준 : 4백만원 기준 미달

- [{사용실적(59백만원)} = (80 + 85 + 70 + 40 + 20)백만원 ÷ 5] < [{사용의무 기준(63백만원)} = (70 + 84 + 70 + 35 + 56)백만원 ÷ 5]

⇒ 미달사용액은 4백만원

· MIN(당해연도 미달사용액, 5년 평균 미달사용액)

- (풀이) 가산세액

- 미달사용액(4백만원) × 10% = 0.4백만원(가산세로 추정)

- 2019년 운용소득에 포함하여야 할 금액 : 4백만원 - 0.4백만원 = 3.6백만원

○ (풀이) 2019년 사용의무 기준금액

(1) 당해 사업연도 기준 = $(90 + 3.6)$ 백만원 $\times 70\% = 65.5$ 백만원

(2) 5년간 평균 기준 = $(84 + 70 + 35 + 56 + 65.52)$ 백만원 $\div 5 = 62.1$ 백만원



추가사례

○ 상기 계산사례의 추가로 2019년 중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이 30백만원이고, 2019년에 발생한 운용소득이 100만원(이월금액 제외)인 경우 2019년에 추징할 가산세와 2020년 운용소득 사용의무 기준금액은?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① 출연재산 운용소득(전년소득)	120	100	50	80	90	100*
② 사용의무기준금액(① $\times 70\%$)	84	70	35	56	?	??
③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85	70	40	20	30	
④ 적합 여부 판정	적합	적합	적합	미달		

* 2020년 ①칸에 기재될 운용소득은 전년도(2019년)에 발생한 운용소득임

○ 2019년 가산세 추징

(1) 2019년 당해 사업연도 기준 미달 사용금액

- 65.5 백만원 - 30 백만원 = 35.5 백만원

(2) 5년간 평균 기준 미달 사용금액

- 62.1 백만원 - $[(85 + 70 + 40 + 20 + 30)$ 백만원 $\div 5]$ = 13.1 백만원

⇒ 미달사용액은 13.1 백만원

· MIN(당해연도 미달사용액, 5년 평균 미달사용액)

(3) 가산세액 : 미달사용액(13.1 백만원) $\times 10\% = 1.3$ 백만원

(4) 이월 추가 의무사용 기준금액 : 13.1 백만원 - 1.3 백만원 = 11.8 백만원

○ 2020사업연도 사용의무 기준금액

(1) 2020년 당해 사업연도 기준

- $(100 + 11.8)$ 백만원 $\times 70\% = 78.3$ 백만원

(2) 5년간 평균 사용금액 기준

- $[70 + 35 + 56 + \{(90 + 3.6) \times 70\} + \{(100 + 11.8) \times 70\}]$ 백만원 $\div 5$
= 60.96 백만원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운용소득 해당 여부>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라 함은 출연재산으로 영위하는 수익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만을 의미하고,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대법원2007두26711, '10. 5. 27.)
-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에 대한 사후관리시 정기예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익금불산입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운용소득에 가산하지 아니함
(인터넷방문상담4팀-199, '06. 2. 6.)
- 공익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부터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규정(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의한 익금불산입 금액에 관계없이 현금배당액과 주식배당액 전액을 운용소득으로 보는 것임
(재재산46014-40, '02. 2. 15.)

<운용소득과 사용실적 계산>

-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은 출연받은 재산 중 의료업에 운용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을 말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07, '15. 9. 2.)
-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인 이자소득금액을 다시 정기예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정기예금으로 다시 적립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재산-895, '10. 12. 2.)
- 임대소득금액을 예금으로 적립하거나 임대보증금의 반환에 사용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으나,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의 사용에는 포함되지 않음
(재산-174, '10. 3. 19.)
-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과 관련하여 5년간 평균금액으로 운용소득 사용실적 및 기준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결손이 발생한 연도는 (0)으로 보는 것임
(재산세과-273, '09. 9. 21.)
- 공익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및 사용실적에 포함시키는 것임
(서면4팀-665, '08. 3. 14.)

- 증여세가 과세된 출연재산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과 그 소득에서 공익사업에 지출한 금전은 상증령 제38조 제4항의 운용소득과 같은 조 제5항의 운용소득 사용 실적에서 제외하는 것임 (재산상속 46014-18, '03. 1. 29.)
-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사용기준을 계산할 때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중 미 사용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상속 46014-226, '00. 2. 29.)
- 운용소득 사용실적의 범위
임대소득금액을 예금으로 적립하거나 임대보증금의 반환에 사용한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재산-174, '10. 3. 19.)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용 여부 판단>

- 공익법인에 부과된 법인세 등 납부에 사용한 차입금을 운용소득 등으로 상환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도 포함하지 않음 (재재산-32, '17. 1. 12.)
- 운용소득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상증세과-607, '13.11.8.)
-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병원 등을 신축한 후 의료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의료업 소득은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4, '13. 10. 23.)
- 공익법인이 관리비 및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재산세과-32, '10. 1. 19.)
-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다른 공익법인 등에 조건부 출연 후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반환받은 금전을 그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4팀-3119, '07. 10. 31.)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에 가산된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임 (서일46014-11679, '02. 12. 12.)



4. 주식의 취득 및 보유시 지켜야 할 일

가. 개요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받거나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출연받거나 취득한 주식 등과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 제외)의 상증법 §16 ② 2호(5%, 10%, 20%)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상증법 § 48 ①, ② 2호]

공익법인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 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 등은 제외)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해당 공익법인의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외부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 등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상증법 § 48 ⑨]

구분	판정기준	적용대상		한도	의무 위반시	
출연 · 취득	출연받을때 또는 출연재산으로 취득시 지분율	일반공익법인		5%	초과분 증여세 부과	
		성실 공익 법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특수관계 없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		10%
				의결권 미행사를 정관에 규정한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 법인		20%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 주식으로 주무관청 승인받음		한도없음
				10% 초과 출연분 3년 이내 특수관계 없는자에게 매각		한도없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한도없음				
보유	계열기업의 주식보유시 총재산가액 대비 비율	일반 공익 법인	일반적인 경우	30%	초과보유분 가산세 부과	
			외부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 이행	50%		
		성실공익법인	한도없음			

* 설립허가 법령에 따라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경우 주식보유한도 적용 배제

☞ 상기 표의 자세한 사항은 P.136 ~P.156 참고

나.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수 등의 5%(10%, 2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상증법 §48 ①, 상증령 §37]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주식 등과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 제외)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 등은 10%,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기액에 산입합니다.

1) 주식 등 초과 보유 계산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보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초과 보유 부분을 계산합니다.

- 공익법인이 주식 등을 출연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 : 그 취득일
-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주식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라 배정된 신주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 그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상법」 제354조 규정에 따른 주주명부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 외의 경우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 :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 폐쇄일(주식회사 외의 경우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 초과부분 계산 : ㉠ - ㉡

㉠ [(a) + (b) + (c) + (d)] > ㉡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 등¹⁾의 5%(10%²⁾, 20%³⁾]

<상증법 § 48 ① 1~3호>

- ㉠ :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 등
- ㉡ : 출연받을 당시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1호)
- ㉢ :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2호)
- ㉣ :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3호)

- 1) 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 제외 ☞ '17. 1. 1. 이후 출연 분부터 적용
- 2) '08.1.1. 이후 출연받는 성실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적용하며, '17. 7. 1. 이후 출연받는 분부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에 대하여 적용
- 3) '18. 1. 1. 이후 출연받은 주식 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식 등을 출연받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에 적용

2)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위 기준일에 공익법인이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5%(10%, 20%)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초과부분(A - B)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3) 과세제외 하는 경우 [상증법 §16 ②, ③, §48 ①]

① 지분율 20%까지 과세제외 (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적용)

- i)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성실공익법인 등
- ii) 출연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공익법인 정관에 규정)
- iii)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

*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직접공익 목적사업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활동에 지출하거나,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 '18. 1. 1. 이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② 지분율 한도없이 과세제외 (아래 중 하나에 해당시 적용)

- i)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공익법인 등(성실공익법인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이 그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고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목적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01. 1. 1. 이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 ii)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성실공익법인 등이(공익법인 등이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 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실공익법인 등이 되는 경우 포함)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주식 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출연자와 상증령 §2의2 ①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

☞ '11. 1. 1.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주식 등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

☞ '17. 1. 1.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과세제외 요건에 대한 보충 설명

□ **성실공익법인 [상증령§13 ③, ④, ⑤]**

성실공익법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무관청을 통해 관할 지방 국세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이후 5년마다 재확인 받아야 합니다.

- ①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 운용소득 사용비율 개정 : '10.2.18.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발생분부터 적용(종전 : 90%)
- ②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상증령 §38 ⑫의 사유(1. 이사의 사망 또는 사임 2.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이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로 5분의 1을 초과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입하여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요건을 계속하여 충족한 것으로 봄 ('16.2.5. 이후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 ③ 외부감사 이행
- ④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 ⑤ 결산서류 등 공시이행
- ⑥ 장부의 작성·비치
- ⑦ 상증법 §48 ③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 ⑧ 상증법 §48 ⑩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상증령 §42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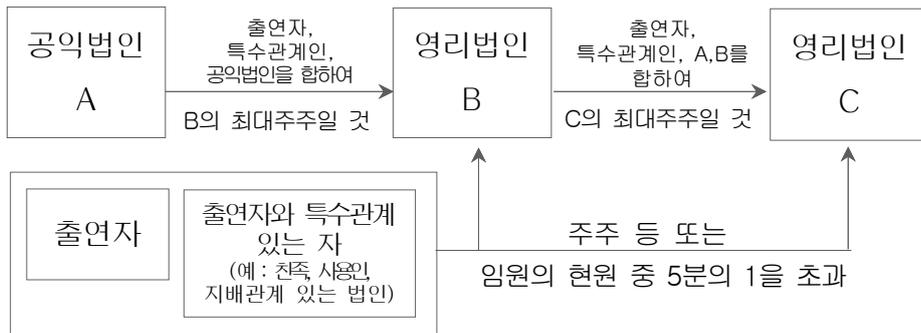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 ② ①의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 ④ ③의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 ‘그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 이란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 [상증령 §13 ⑩]

- ①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공익법인 제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거나 임원의 현원(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당해 공익법인 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 ②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공익법인 제외)이 주주 등이거나 임원의 현원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출연자, 그의 특수관계인 및 공익법인[해당 공익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은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한 내국법인] 등 출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 등 출자법인

□ 그림에 의한 설명

- 공익법인이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리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 (단, 그외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과세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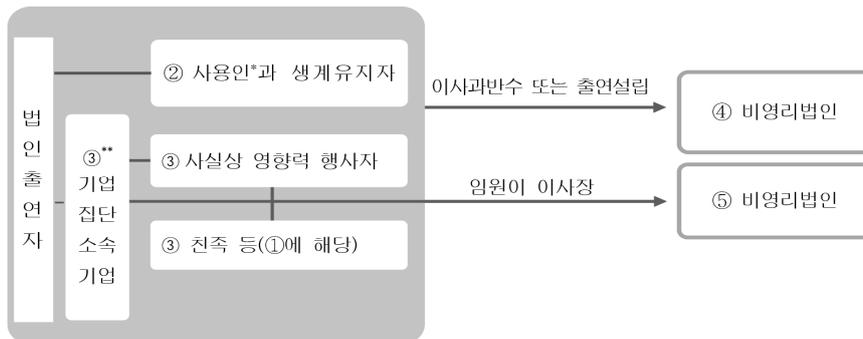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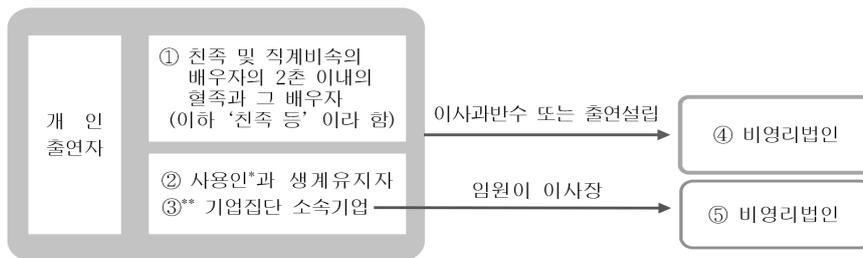
□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 예외를 인정한 이유

- 공익법인의 출연자(특수관계인 포함)가 공익법인이 출연받는 주식의 발행회사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출연자가 공익법인을 통하여 계열 회사를 간접지배할 우려가 없으므로 주식보유 한도에 예외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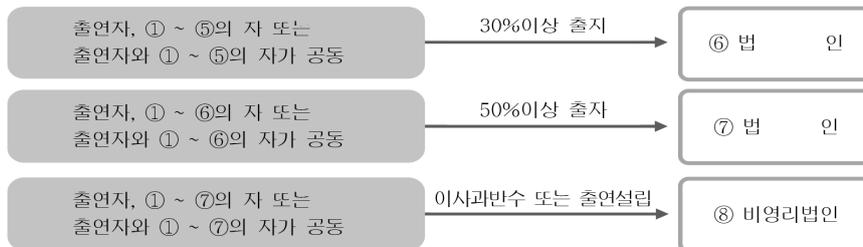
- 예1) 공익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당해 법인의 주주일 수 없으므로 허용
- 예2) 甲그룹의 사주가 출연·설립한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乙그룹 소속법인 주식을 5% 초과 보유하는 경우는 간접지배 우려가 없으므로 허용
- 예3) 그러나 甲그룹의 사주가 출연·설립한 공익법인이 甲그룹 소속법인 주식을 5% 초과 보유하는 경우에는 간접지배의 우려가 있으므로 불허

특수관계인의 범위 [상증령 §2의2]

* 출연자와 다음 ① ~ ⑧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⑥, ⑦, ①~⑦이 5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포함
** 해당 기업의 임원 포함



IV



특수관계인의 범위 설명 (①~⑧의 관계)

- ① 출연자의 친족*,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 *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 (4) 친생자로서 타인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국기령 §1의2 ①)
- ② 출연자의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포함)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출연자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 임원, 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자 [상증령 §2의2 ②]
- ③ 다음에 해당하는 자
 - (1) 출연자가 개인인 경우
 - 출연자가 직접 또는 출연자와 ①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포함)
 - * 법인령 §20 ①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
 - (2) 출연자가 법인인 경우
 - 출연법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포함)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①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④ 출연자, ①부터 ③까지의 자 또는 출연자와 ①부터 ③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 ⑤ ③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 ⑥ 출연자, ①~⑤의 자 또는 출연자와 ①~⑤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등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⑦ 출연자, ①~⑥의 자 또는 출연자와 ①~⑥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⑧ 출연자, ①~⑦의 자 또는 출연자와 ①~⑦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주식 등 5% 초과 여부 판정>

- 주식의 초과부분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하고, 초과부분에 대한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임 (대법원2016두36116, '16. 7. 27.)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등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100분의 10)를 초과하는지 여부 판단시, 공익법인등이 간접소유하는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비율은 포함하지 아니함 (법령해석과-382, '16. 2. 5.)
- 국외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주식 5%(10%)초과 여부는 내국법인의 주식에 한정하여 적용함 (상증세과-552, '13. 9. 16.)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

- 신설 공익법인은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에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적용. 다만, 설립 이후 성실공익법인 확인신청시까지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서면법규과-1319, '14. 12. 16.)
-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해당 주무관청에 확인 신청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성실공익법인 등으로 확인받은 경우, 요건을 충족한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적용 (서면법규과-1167, '14. 11. 6.)
-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외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 해당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에 확인요청할 때에는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법규재산2013-178, '13. 6. 25.)
- 외부회계 감사대상이 아닌 학교법인이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일부만 감사를 받은 경우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산-63, '09. 1. 8.)
- 운용소득 발생이 불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연도 말까지 운용소득의 90%이상 사용치 않으면 전년도 사업연도 말에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4팀-1247, '08. 5. 23.)





<주식보유기준 초과 등에 대한 증여세>

-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5%(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성실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와, ② 성실공익법인이 10% 초과 출연받아 3년 이내에 그 초과 출연분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과-118, '14. 4. 30.)
-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그 합병종속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를 초과한 경우 5%(10%) 초과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재산세과-300, '12. 8. 26.)
- 상증법 제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같은 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공익법인이 공익목적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다시 과세하지 않는 것임 (재재산-974, '11. 11. 14.)
- 공익법인 등이 보유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없는 배당우선주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지게 된 경우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재재산-741, '11. 9.14.)
- 동시 출연시 5%(10%) 초과분 산정방법
내국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3개의 공익법인 등(A,B,C)에 발행주식 총수의 3%씩을 동시에 출연하는 경우 A성실공익법인등과 B성실공익법인은 1.5%를 초과하는 부분 C 일반공익법인등은 3%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됨 (재산-420, '10. 6. 21.)
-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은 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이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 (서면4팀-1385, '08. 6. 10.)

-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날 현재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서면4팀-30, '08. 1. 7.)

<특수관계 해당 여부>

-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판단과 관련하여 재산을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자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작성, 이사선임 등 비영리법인 설립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를 의미함 (서울고등법원2017누154, '17. 12. 6.)
-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임원은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함 (상속증여세과-956, '16. 8. 30.)
-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하는 것임 (대법원2011두6899, '12. 10. 11.)
-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3772, '08. 11. 14.)
- 성실공익법인 판정시 이사의 범위에는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상속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로서 이사의 선임 등 당해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자를 포함함 (재산-125, '09. 9. 3.)
- 성실공익법인 등 판단시 이사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호의 이사의 범위에는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상속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로서 이사의 선임 등 당해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자를 포함하는 것임 (재산세과-125, '09. 09. 03.)

IV



다. 출연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상증법 §48 ② 2호, 상증령 §37]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와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 포함)과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재산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와 지방세 제외)을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 등과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 등은 10%, 2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1) 주식 등 초과 보유 계산

다음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보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초과보유 부분을 계산합니다.

- 공익법인이 주식 등을 매매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 : 그 취득일
-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주식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라 배정된 신주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 그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상법」 제354조 규정에 따른 주주명부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 (주식회사 외의 경우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 :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 폐쇄일 (주식회사 외의 경우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 초과부분 계산: ㉠ - ㉡

㉠ [(a) + (b) + (c) + (d)] > ㉡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 등¹⁾의 5%(10%²⁾, 20%³⁾]

<상증법 § 48 ② 2호가~다>

㉠ : 취득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
 ㉡ : 취득 당시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가)
 ㉢ :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나)
 ㉣ :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다)

- 1) 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 제외 ☞ '17. 1. 1. 이후 취득 분부터 적용
- 2) '08. 1. 1. 이후 취득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적용하며, '17. 7. 1. 이후 취득 분부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에 대하여 적용
- 3) '18. 1. 1. 이후 취득하는 주식 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식 등을 취득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에 적용

2)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의 범위 [상증령 §37 ② 후단]
 출연자가 해당 내국법인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출연자 (상증령 §2의2 ③)

- i) 상증령 §2의2 ① 6호, 7호에 해당하는 법인
- ii) 상증령 §2의2 ① 1호~7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상증령 §40 ① 2호]

5%(10%, 20%)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4) 과세제외하는 경우 [상증법 §48 ② 2호, 상증령 §37 ⑥]

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이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 i)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 ii) 공익법인 등(성실공익법인 또는 국·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이
- iii) 그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 iv)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01.1.1. 이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②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 '17.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i)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여 같은 법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또는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할 것
- ii)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이 기술지주회사인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산학협력단 등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는 각 산학협력단 등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50 이상을 말함),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100분의 30 이상일 것
- iii) 기술지주회사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자회사 외의 주식 등을 보유하지 않을 것

☞ '08.1.1. 이후 주식 등 취득 분부터 적용

IV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 및 취득 제한규정 연혁

- '90. 12. 31. 이전 : 주식에 대한 규제 없음
- '91. 1. 1. ~ '93. 12. 31. :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20%
→ '90. 12. 31. 이전에 20%를 초과하여 출연 또는 취득한 분에 대하여는 적용안함
- '94. 1. 1. 이후 :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5%
→ '93. 12. 31. 이전에 5%를 초과하여 출연하거나 취득한 분에 대하여는 적용안함
- '08. 1. 1. 이후 :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5%
(다만, 성실공익법인에 한해 주식출연·취득제한을 10%로 완화)
- '11. 1. 1. 이후 : 성실공익법인이 10%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과세제외 요건 신설
(초과 보유일부터 3년 이내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17. 7. 1. 이후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주식 등 보유비율 10% 적용
- '18. 1. 1. 이후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주식 등 보유비율 20% 적용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 출연 또는 취득 제한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이란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의미하는 것임
(재산-347, '10. 5. 28.)

<주식 5% 초과 취득 판단시기>

-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보유하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식 취득비율(5%,10%) 초과 여부는 주식전환일을 기준으로 판정함 (서면법규과-419, '13. 4. 12.)
- 감자결의 시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으로 주식 초과 보유 여부 판정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주주총회에서 감자결의한 주식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의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의 주식보유비율 초과여부 판정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 폐쇄일로 하는 것임 (재산-934, '10. 12. 13.)

<주식 5% 등 초과 취득에 대한 증여세 과세>

- 2개의 일반 공익법인과 1개의 성실공익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인 [갑] 법인 주식의 지분율 합계가 5%인 상황에서 현물출자로 인하여 동시에 [갑] 법인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2개의 일반공익법인이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 현재 [갑] 법인 보유지분율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과-380, '14. 10. 2.)
- 2개의 일반 공익법인과 1개의 성실공익법인이 보유한 동일한 내국법인 주식의 지분율 합계가 5%인 상황에서 동시에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일반 공익법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성실공익법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은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지분율 5%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서면법규과-557, '14. 5. 30.)
- 공익법인 등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해당 여부
공익법인이 '93. 12. 31. 이전부터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을 5%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법인의 유상증자에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591, '13. 10. 31.)
-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시 전환일 현재의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공익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발행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함으로써 그 전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당해 공익법인 보유주식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전환일 현재 시가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서면4팀-3004, '07. 10. 18.)
- 5% 초과시 지분율 변동유무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
'93. 12. 31. 현재 동일종목의 주식을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94. 1. 1. 이후 유상증자에 의하여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지분율이 5%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지분율 변동유무에 불구하고 5% 초과지분의 증자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재삼 46014-872, '96. 4. 3.)

IV

라. 5% 초과 보유주식에 대한 매각의무 [상증법 §49]

'90. 12. 31.과 '93. 12. 31. 舊 상증법(§8의2 ①) 개정시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발행주식총수의 각각 20%와 5%를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등을 과세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개정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공익법인이 지주회사화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동일종목의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하지 않고 보유주식을 우량종목 주식 등으로 대체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96. 12. 31. 현재 공익법인이 특정법인의 주식을 20%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5년('01. 12. 31. 까지)내에, 5% 초과 20% 이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3년('99. 12. 31. 까지)내에 그 초과분을 다른 주식으로 대체하여 보유하거나 처분하도록 하는 「5% 초과 보유주식 매각의무 기준」을 '96. 12.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시 신설하였습니다.

1) 5% 초과 보유주식 판정 [상증령 §42 ⑤, 상증법 §48 ①, ②]

$[\text{㉑} + \text{㉒} + \text{㉓} + \text{㉔}] > \text{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 등*의 5\%}$

- ㉑ : 출연 또는 취득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
- ㉒ : 출연 또는 취득 당시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 ㉓ : 출연 또는 취득 당시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 ㉔ : 출연 또는 취득 당시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 해당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상증법 §16 ②, §48 ① 본문]

2) 주식 처분유예기간

- 5% ~ 20% 이하 보유 : 3년 이내 → '99. 12. 31. 까지 처분
- 20% 초과 보유 : 5년 이내 → '01. 12. 31. 까지 처분

3) 주식매각 의무 적용 제외 공익법인 등

다음의 공익법인은 주식 매각 의무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1) 성실공익법인
- (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및 이에 준하는 공익법인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 ② ①의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 ④ ③의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IV

4) 주식매각 의무 미이행에 대한 가산세 부과 [상증법 §78 ④]

공익법인 등이 주식처분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그 보유기준(5%)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과세합니다. 다만, 이 경우 가산세의 부과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text{가산세} = 5\% \text{ 초과보유주식의 매사업연도말 현재의 시가} \times 5\%$$

※ 나중에 취득한 주식부터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2 이상의 공익법인이 동일한 법인 주식 보유 시
 주식보유기준을 초과해 2 이상의 공익법인이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여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 주식수 산정시, '성실공익법인' 보유분은 제외됨 (재재산46014-81, '01. 3. 21.)
-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의 적용 배제
 공익법인 등이 '97. 1. 1. 이후 내국법인의 주식 5%를 초과 취득해 취득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규정은 적용 안 됨 (재산상속46014-849, '00. 7.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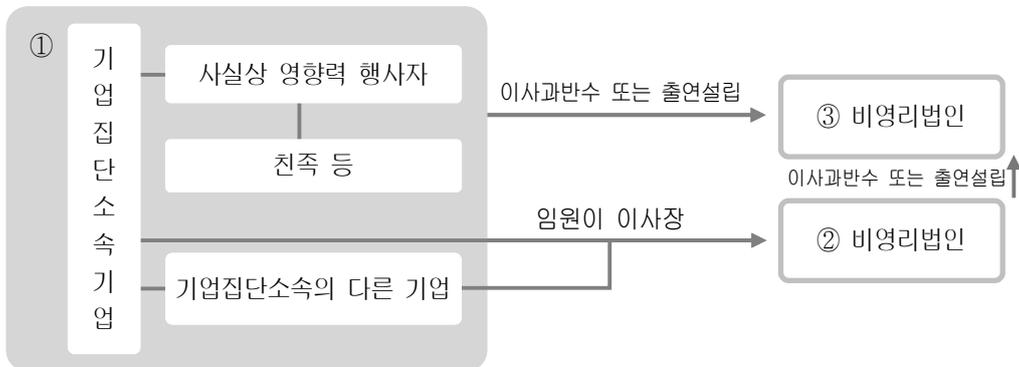
마.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한도 [상증법 §48 ⑨]

공익법인의 지주회사화 방지를 위한 규정(동일한 내국법인 주식 5% 또는 10%, 20% 초과 보유 금지) 외에 공익법인 등의 총재산가액 중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30%(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를 이행하는 경우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99. 12. 28. 개정 시 신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 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 등은 제외

1)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

다음 ①~③에 해당하는 자가 ①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출연하거나 보유한 경우의 해당 기업(해당 기업과 함께 ①에 해당하는 자에 속하는 다른 기업을 포함)을 말합니다.



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또는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i)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
- ii)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iii) ii)의 자와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 ② 상기 ①의 본문 또는 i)에 따른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 ③ ① 및 ②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2) 초과보유분에 대한 주식 등 처분유예기간 [법률 부칙 제6048호 §7 ③]

- 그 초과분 중 1/2이상은 '00. 12. 31. 까지
- 나머지는 '01. 12. 31. 까지 처분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3) 초과보유에 대한 가산세 부과 [상증법 §78 ⑦]

공익법인이 주식처분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총자산가액의 30%(회계감사, 전용계좌의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매 사업연도 말 현재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50% 완화규정은 '0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text{가산세} = 30\%(\text{또는 } 50\%) \text{ 초과보유주식의 매 사업연도 말 현재의 시가} \times 5\%$$

4)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상증령 §38 ⑭]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text{초과하는 주식 등의 가액} = \text{㉠} - (\text{㉡} \times 30\% \text{ 또는 } 50\%)$$

- ㉠ : 이동평균법(법인령 § 74 ① 1호 마목)에 의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취득가액과 대차대조표상의 가액 중 적은 금액
- ㉡ : 공익법인 등의 총재산(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함)에 대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에 ㉠ 가액을 가산한 가액





5) 가산세 부과 예외

다음의 공익법인 등에는 계열기업 주식보유 한도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성실공익법인

(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 등 및 이에 준하는 공익법인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 ② ①의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 ④ ③의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계열기업주식 보유 적용대상>

- 계열기업 주식보유제한규정은 내국법인 주식에만 적용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가액이 공익법인의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주식가액의 5%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즉 내국법인 주식에만 계열기업 주식보유제한규정이 적용됨 (서면4팀-441, '05. 3. 24.)
- 계열기업 주식보유제한규정은 의결권 있는 주식에 대해 적용
공익법인 등이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여 계열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 등의 시가의 100분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바, 당해 주식 등에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의미함[주식(출자지분)명세서 작성요령 참조] (서일46014-11705, '03. 11. 25.)
cf)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포함한다는 서일46014-11301('03. 9. 17.)는 잘못된 예규임

<계열기업주식 초과 보유 가산세>

● 계열법인 주식 초과보유 가산세 적용 방법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개정된 것)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같은 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과 사용,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8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부 감사와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와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재산-549, '11. 11. 22.)

● 계열기업 주식보유에 따른 가산세 부과 해석사례

공익법인 등(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을 제외함)이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매 사업연도말 현재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3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임 (서면4팀-3490, '07. 12. 6.)





바. 성실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의무 사용 [상증법 §48 ② 7호]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그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 등은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상증법 §78 ⑨ 1호와 3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 적용

☞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 사용 기준금액 [상증령 §38 ⑱·㉑]

① 출연재산가액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의 [총자산가액-(부채가액+당기순이익)]

다만, 대차대조표상 가액이 상증법 제4장(재산의 평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함

② 보유비율별 사용 기준금액

- 5 ~ 10% 보유 시 : 출연재산가액의 1%
- 10% 초과 보유 시 : 출연재산가액의 3%

2) 가산세 부과 [상증법 §78 ⑨ 3호]

기준금액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사용 기준금액 -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 × 100분의 10

5.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시 지켜야 할 일 [상증법 §48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료법인은 제외)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가. 개요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출된 직간접 경비 전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①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 ② 상증령 §38 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의료법인 제외) 등의
- ③ 현재 이사 수(5명 미만은 5명으로 봄)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 ④ 임·직원(이사 제외)이 되는 경우

※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임·직원 범위

- 의사(중전과 동일)
- 학교의 교직원*
-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 도서관의 사서(중전과 동일)
-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
-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신설)
- * 교사, 교장, 교감, 총장, 학장 등 (직원은 「사립학교법」 §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만 해당)

나. 출연자의 범위 [상증령 §38 ⑩]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

다. 특수관계인의 범위

상증령 §2의2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p.141 참고)



라. 공익법인 등(의료법인 제외)의 범위 [상증령 §38 ⑪]

- ① 출연자와 상증령 §2의2 ① 3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 ② 출연자와 상증령 §2의2 ① 4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 ③ 출연자와 상증령 §2의2 ① 5호 또는 8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

마. 이사 기준 등 위반에 대한 가산세[상증법 §78 ⑥, 상증령 §80 ⑩]

이사 수 기준(1/5)을 초과하는 이사 또는 임·직원이 된 출연자 등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차량 유지비 등 직·간접경비 상당액 전액을 매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다만,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① 상증령 §38 ⑫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이사의 사망 또는 사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이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로 1/5을 초과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
 - ☞ '16. 1. 1. 이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 ② 임·직원 중 의사, 학교의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와 관련된 경비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적용하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적용합니다.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이사 수 기준·특수관계자 범위>

- 공익법인 등의 이사에 대한 가산세 적용시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각 출연자별로 판단함

(서면4팀-333, '07. 1. 24.)

- 이사 초과 가산세 적용시 특수관계자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때 임원은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임
 (재산-1119, '09. 6. 5.)
- 이사 현원이 16명인 경우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이사의 수는 3명이며, ‘학교의 교사’의 범위에는 대학교의 교수 등 학생을 교육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서면4탐-84, '05. 1. 11.)
- 이사의 범위 [상증통칙 16-13...3 ②]
 이사에는 이사회 의결권을 갖지 아니하는 감사는 포함되지 아니함

IV

<가산세 부과>

- 이사 기준 초과시 의료법인은 가산세 부과 제외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사를 제외)으로 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나 의료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함
 (재산-299, '10. 5. 17.)
- 공익법인 등의 이사취임 관련 제한 위반으로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로서, 해당 직·간접경비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환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음
 (재산-210, '09. 9. 14.)
- 적정이사 수 초과 가산세 적용시 초과한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서면4탐-985, '06. 4. 18.)
-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지출된 직접 또는 간접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은 동 임·직원이 공익법인의 중요사항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가산세를 부과함
 (국심2004구2559, '04. 11. 30.)



6.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 금지 [상증법 §48 ⑩]

'00. 1. 1. 부터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상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가.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

152쪽의 마. 1)의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나. 광고·홍보의 범위 [상증령 §38 ⑮]

가산세를 부과하는 광고·홍보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신문·잡지·텔레비전·라디오·인터넷 또는 전자광고판 등을 이용하여 내국 법인을 위하여 홍보하거나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는 제외)
- ② 팸플렛·입장권 등에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는 제외)

다. 광고·홍보에 대한 가산세 [상증법 §78 ⑧, 상증령 §80 ⑫]

나.의 ①의 경우 : 당해 광고·홍보매체의 이용비용

나.의 ②의 경우 : 당해 행사비용 전액

7. 자기내부거래 시 지켜야 할 일

[상증법 §48 ③, 상증령 §39]

자기내부거래라 함은 특수관계인간에 내부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된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가. 과세대상 자기내부 거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수익하는 경우(예 : 임대차, 금전소비대차, 사용대차 등)에는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상증령 §39 ②]

- ① 출연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이 사용하는 경우
- ②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이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경우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i) 상증법상 시가 (상증령 §32 ③)
 - a. 부동산임대용역 : 부동산가액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2%)
 - b. 그 외의 경우 : 법인령 §89 ④ 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 ii) 법인세법상 시가(법법 §52 ②, 법인령 §89)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 금액) ('18.2.13.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사용)
- ③ 교육기관이 특정 연구시험용 시설 및 건물 등 출연받아 출연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 * 출연받은 기부금에 의하여 설립한 건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시험연구용 자산의 내용연수표에 규정된 시설 및 설비
- ④ 해당 공익법인 등이 의뢰한 연구용역 등의 대가 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경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특수관계인 등의 범위 [상증법 §48③, 상증령 §39①]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
3. 출연자가 「민법」 §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출연자 및 그 출연자와 상증령 §2의2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4. 출연자가 위 3. 이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상증령 §2의2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 *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5. 출연자의 사용인
6.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의 임원
7. 출연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상증령 §2의2③)
8. 출연법인이 속한 기업집단 소속기업(임원포함)과 해당 기업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친족 등
9. 출연자가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법인

자기내부거래 예시



☞ 영리법인(병)의 주주(가)가 공익법인(을)에 토지를 출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하고 공익법인은 토지를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실상 지배 관계에 있는 대기업에 토지를 무상 임대하는 경우임

- 공익법인 등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상증통칙 48-39...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공무원,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영 제39조 제1항에 규정하는 그 공익법인 등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증여세 과세방법

- ① 출연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증여가액으로 과세
- ②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증여가액으로 과세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 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상증통칙 48-39...6]
 -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영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가액은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1. 대가없이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 해당 출연재산가액
 2. 낮은 대가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

$$\text{당해 출연재산가액} \times \frac{(\text{정상적인 대가} - \text{실제 지급한 대가})}{\text{정상적인 대가}}$$

- ② 삭제
- ③ 영 제39조 제3항, 영 제40조 제1호 및 동조 제4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은 각 규정에 의한 가액을 과세요인 발생일 현재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출연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자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출연하는 경우 당해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임대차·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과세함 (서일46014-10948, '02. 7. 22.)



8.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 제공 금지

[상증법 §48 ② 8호, 상증령 §38 ⑧ 2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회전체의 불특정다수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가.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정계층에 제공된 재산가액이나 경제적 이익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그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 또는 정관의 변경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익사업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 대부분의 장학회가 여기에 해당됨
- ☞ (사례) 공익법인이 특정지역 자녀의 장학금 지원사업을 정관에 명시하고 출연자도 같은 목적으로 출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국심2003서1779, '03. 10. 15.)

이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설립허가 등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해당 공익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이 협의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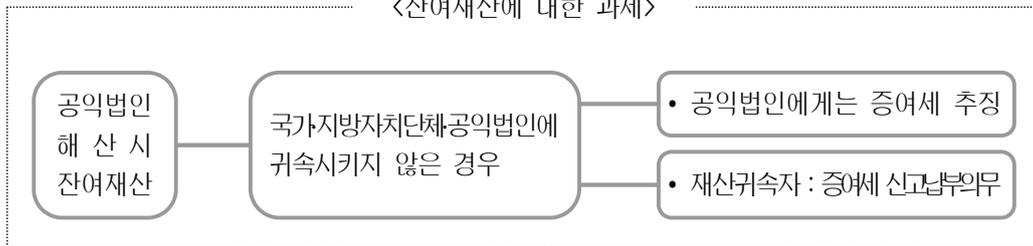
-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등에는 제외되는 것임 (재산-288, '10. 5. 13.)

9. 공익법인 해산시 지켜야 할 일

[상증법 §48 ② 8호, 상증령 §38 ⑧ 1호]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출연된 재산이므로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하고 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잔여재산에 대한 과세>



IV

가.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일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재산가액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잔여재산을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합니다.(p.115 참고)

- ①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사용인의 불법행위로 잔여재산이 감소된 경우
 - 다만, 출연자 및 그 출연자와 상증령 §2의2 ① 1호의 관계(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에 있는 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제외
- ② 출연받은 재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나.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대한 과세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일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공익법인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귀속자에 대하여 증여세 (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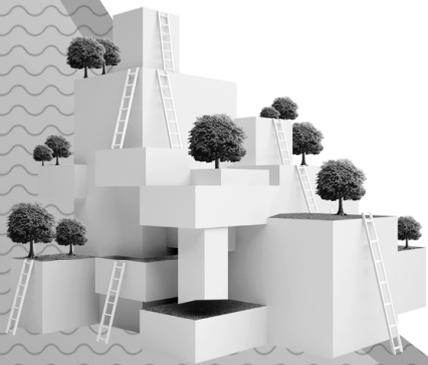
- 통합공익법인이 「민법」 제80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받아 포괄적으로 승계(정관에 해산하는 공익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에는 해산하는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을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경우에 해당 (법령해석재산-0050, '16. 2. 25.)
-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에 흡수합병됨으로써 종료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전부가 다른 학교법인에 귀속되어 동일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26, '13. 7. 26.)
- 공익법인 기출연재산을 주무부장관 등이 승인한 사용기간내에 목적의 동일 또는,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지 못한 채 공익법인이 설립허가가 취소되었다면 그 설립허가취소일을 증여세의 과세요건 성립일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함은 정당함 (대구고등법원2013누1219, '13. 11. 22.)
- 특정 법령의 개정으로 비영리법인이 설립되고 해당 법령에 따라 다수의 다른 비영리법인의 조직·직원 및 재산을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시키는 등 다수의 비영리법인을 하나의 비영리법인으로 단순히 통합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재산-345, '10. 5. 28.)
-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재산세과-840, '09. 11. 24.)
- 농어촌지역 등에 소재한 학교를 폐교조치하면서 그 잔여재산을 '03. 12. 31. 이전에 출연자의 자녀 등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일46014-11270, '02. 9. 27.)



V

기부금단체

1. 공익법인과 비교
2. 기부금의 개념
3. 기부금단체의 범위
4. 기부금단체의 의무사항
5. 기부금단체 사후관리
6. 주무관청과 국세청간 협조



V. 기부금단체

1. 공익법인과 비교

세법상 기부금단체가 불특정다수를 위한 사업(사회복지, 장학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대부분 공익법인에도 해당하는 점에서 기부금단체와 공익법인은 그 성격이 매우 유사합니다.

2. 기부금의 개념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법인령 §35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을 말합니다.[법법 §24①]

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열거된 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비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부금 구분>

- 법정기부금 : 법법 §24 ③, 법인령 §38에 열거된 법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 지정기부금 : 법인령 §39에 열거된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 비지정기부금 : 법정·지정기부금단체 이외의 단체(우리사주조합 제외)에 지출한 기부금

3. 기부금단체의 범위

세법상 기부금단체는 법정기부금단체, 당연지정기부금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법정기부금단체'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는 각 단체의 요건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법정기부금단체 [법법 §24 ③, 법인령 §38]

법법 §24 ③ 각 호에 열거된 법정기부금을 받아 정관상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단체를 말합니다.

(예시)

-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수령하는 아래 각 단체
 -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 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 등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지급목적 설립)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 舊 법법§24 ②7호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은 '18. 1. 1. 이후부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로 변경됨 (단, '18. 1. 1.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관의 경우 종전 규정의 지정기간까지는 법정기부금단체로 봄)

나. 당연지정기부금단체 [법인령 §39]

법인령 §39 ① 1호(바목 제외)에 열거된 기부금단체를 말합니다.

(예시)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등
-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소속단체 포함)

* 舊 법인령§36 ①1호 다목 및 라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장학·문화예술·환경보호 등 단체'와 아목의 '기타 지정기부금단체(舊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2)'는 '18. 1. 1. 이후부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로 변경됨 (단, '18. 2. 13. 전 해당단체는 '20. 12. 31.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법정기부금단체

[법인령 §39 ① 1호 바목, §38 ⑥]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등으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부금단체로 지정하는 단체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지정기부금단체 확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 법령 > '고시·공고·지침'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법정기부금단체〉

구 분	지정 대상	관련 법령
지정기부금단체	민법 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단체*	법인령 § 39 ① 1호 바목
법정기부금단체	한국학교, 사회복지사업 등 지원을 위한 법인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단체	법법 § 24③ 4호(지목), 6호 법인령 § 38 ③, ④

* '18. 2. 13.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법인령 §39 ① 1호 바목]

다음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등이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등을 말합니다.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 지정기부금 단체지정 요건>

-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 나) 사회적협동조합 :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 2) 해산을 하면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재지정의 경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였을 것
- 4) 지정·고시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 5) 법인령 § 39 ⑩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법인령 § 39 ⑤ 1호의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한편, 법인령 §39 ① 2호 다목에서는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합니다.



2)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정기부금단체 [법인령 §38 ③,④]

다음에 해당하는 단체 중 법인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무관청이 기부금단체로 추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등을 말합니다.

- 한국학교 [법법 §24 ③ 4호 자목, 법인령 §38 ③]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에 한함)
- 사회복지사업 등 지원을 위한 비영리법인 [법법 §24 ③ 6호, 법인령 §38 ④]
 -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3) 지정절차와 지정기간

가) 지정기부금단체 [법규칙 §18 ④, ⑤]

- (지정절차)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상기의 1]) 대하여 주무관청은 매 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을 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분기별로 지정합니다.
- (지정기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지정기간이라 함) '지정기부금'으로 봅니다.

나) 법정기부금단체 [법인령 §38 ⑥]

- (지정절차)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제4항에 따른 학교 또는 법인 [상기의 2])에 대하여 주무관청은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을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분기 말일까지 지정합니다.
- (지정기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지정기간이라 함) '법정기부금'으로 봅니다.

4. 기부금단체의 의무사항

가. 기부금단체별 의무사항

1) 당연지정기부금단체 및 '기재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법인령 §39 ① 1호의 지정기부금단체(종교단체는 제외)는 지정기간 동안 (아래 (4)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법인령 §39 ⑤]

☞ 법인령 §39 ① 1호 가목~라목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초·중등·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의료법인 등은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 법인령 §39 ① 1호 바목 1)~3)의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 (p.171 1)~3))

(2) 다음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비영리외국법인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할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할 것

□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역(시·도의 관할 구역을 말하되,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할 것



(3)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비영리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이 경우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 서식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공익법인공시 > 법정·지정기부금단체공개 ☞ VI 부록-11번 참고

(4)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제4호의 결산서류등을 해당 비영리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단, 의무공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제외)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해당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 직전 사업연도(과세기간)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종교단체, 학교 등은 제외

☞ (6), (7), (8) 의무사항은 '1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기재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정기부금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정기부금단체는 지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법인령 §38 ⑧]

- (1)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해당 학교 등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법규칙 별지 제63호의7 서식)로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공익법인공시]>[법정·지정기부금단체공개]에 공개 ☞ ‘VI 부록 - 11번’ 참고

-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제출 의무 [법법 §112의2]

상기 지정기간 동안의 의무 외에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기부금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법규칙 제75의2 서식)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 영수증 총 발급건수와 금액 등이 적힌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법규칙 제75의3 서식)를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신고/납부]> [일반신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VI 부록 - 10번’ 참고



5. 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주무관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로부터 의무이행 여부 등 내용을 보고받아 점검하여 국세청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실이 발견되면 기재부장관은 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령 §39 ① 1호 가목~라목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학교, 의료법인 등이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의무이행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2회 이상 확인 된 경우 불성실기부금단체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보고 [법인령 §39 ⑥, §38 ⑨]

- **(보고대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1호의 지정기부금단체(종교단체는 제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및 제4항의 법정기부금단체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라목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 의료법인은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의무 이행 및 점검 보고 적용

- **(보고기한)** 기부금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주무관청에 의무이행 여부 등 내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법규칙 §18의2 ①]

1.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의무이행 여부 등
 -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2.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의무이행 여부 등
 - 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3. 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의무이행 여부 등
 - 지정일부터 6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는 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보고

- **(보고서식)** 법규칙 별지 제63의10 서식(지정기부금단체용), 제63의11 서식(법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전문모금기관용), 제63의12 서식(법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한국학교용)

- **(보고요구)** 주무관청은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하지 않은 기부금단체에 대하여 보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법규칙 §18의2 ②]

*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는 보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요구

나. 주무관청의 점검결과 통보 [법규칙 §18의2 ③]

주무관청은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보고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보고 사실을 주무관청의 점검서식에 기재하여 보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는 보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통보

다.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등 [법인령 §39 ⑧·⑨·⑬, §38 ⑪·⑬·⑭]

국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3항 및 제8항부터 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사업연도별로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가산세 포함) 또는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추징당한 경우

☞ 가산세 포함은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 지정요건 및 의무사항을 위반한 사실 또는 주무관청의 보고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4) 대표자, 임원, 대리인, 직원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5) 해산한 경우

또한, 국세청장은 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지정기간 중 상기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재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재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기부금단체로 재지정 받을 수 없습니다.



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국기법 §85의5, 국기령 §66 ⑩]

(1) 개요

국세청장은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의 인적사항, 국세추징 명세,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건수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2) 공개 대상

- 가.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불복청구기간은 제외) 이내에 상증법에 따른 의무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나.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불복청구기간은 제외)간의 「소득세법」 제160조의3에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다.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불복청구기간은 제외) 이내에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거짓영수증'이라 한다)을 5회 이상 발급 하였거나 그 발급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라. 사회복지법인 및 학교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라목의 지정기부금단체가 같은 영 같은 조 제5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나 주무관청의 요구에도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된 경우
- ☞ '1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공개 방법

명단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4) 공개 절차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업무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대상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
- 나. 통지일부터 6개월(소명기간)이 지난 후,
- 다. 해당 단체들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보관 의무 이행 등을 고려 하여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
- 라. 공개대상자 최종 선정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국가 등의 기부금영수증 작성·교부>

-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 기부금을 모집하는 법인의 기부금 영수증 작성 방법
 법인이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 기부금을 모집하는 (사)○○동문화발전위원회에 기부하고 모집자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부금영수증(별지 제63호의 3 서식)에 기부처는 서울시로 기부금 모집처는 (사)○○동문화발전위원회로 기재하여 법인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6, '05. 9. 23.)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시 기부금품 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 발급자 명의는 기관장의 명의로 된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을 적용 받는 경우에는 동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 한도내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때 기부금품 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 발급자 명의는 기관장의 명의로 된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7, '05. 2. 11.)



<기부금 해당 여부>

- 지방자치단체에게 토지 무상 임대시 기부금 및 업무무관 자산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481, '14. 11. 19.)
- 기부금 단체에 용역제공 후 대가의 일부를 기부하면서 차액만을 수취하는 경우 기부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 단체(이하 "해당단체")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의 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면서 그 익금계상한 금액 중 일부를 해당단체에 기부하고 차액만을 수취하는 경우 그 기부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362, '12. 11. 20.)



- 내국법인이 국내외 아동을 돕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지정기부금단체에 자사가 수행하는 컨설팅용역이나 자사가 공연하는 공연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규과-1350, '11. 10. 13.)
-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경우 세무처리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지정기부금단체에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고 당해 단체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시가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지정기부금단체는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법인세과-1082, '10. 11. 22.)
- 기본통칙 24-35...1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 임대시 기부금 의제】 법인이 영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영 제35조 각 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기부금영수증의 작성>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에 의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실제 기부금을 수령한 일자로 하여 발급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3230, '18. 1. 19.)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연합회의 소속단체가 아닌 회원교단과 회원단체는 동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해당 회원교단과 회원단체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회원교단·회원단체와 그에 소속된 개별교회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법규과-180, '12. 2. 22.)

6. 주무관청과 국세청간 협조

주무관청에서 인·허가한 비영리법인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 설립허가 사실 등을 공익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이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증여세 등을 부과한 때에는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가. 설립허가 등 통보 [상증법 §48 ⑦, 상증령 §41 ③]

주무관청은 다음과 같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통보사항)** ① 세법상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설립허가의 취소 사실
 - * 주무관청에서 추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지정한 비영리법인(지정기부금단체 또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 ☞ 설립허가 시점에는 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기부금대상 민간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에 해당함
 - * (통보서식) 공익법인설립허가 등 통보서(상증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 ②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독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

- **(통보기한)** 설립허가 등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나. 증여세 등 부과내용 통보 [상증법 §48 ⑥, 상증령 §41 ②]

세무서장은 다음과 같이 공익법인 등의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통보사항)** 공익법인 등에 대한 상속세나 증여세 부과 내용
 - * (통보서식) 공익법인 과세내용 통보서(상증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 **(통보기한)** 부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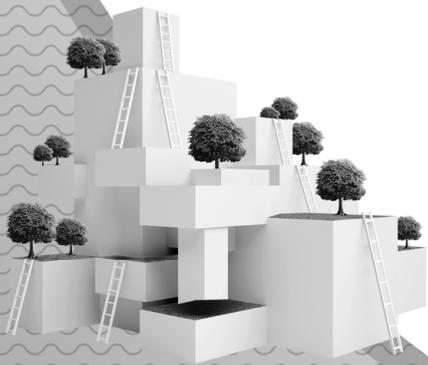




VI

부 록

1.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서류
2.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활용실적 공개
3. 공익법인의 제출서류
4. 출연재산 보고서 서식
5. 결산서류 등 공시 서식
6.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서식
7.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서식
8.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서식
9. 기타 공익법인 관련 서식
10. 출연재산 보고 등 전자신고 서비스
11. 결산서류 등 공시 및 기부금공개시스템





1.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서류

구분	의무공시 공익법인	자율공시 공익법인
대상 법인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5억이상 이거나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및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이 3억 이상인 공익법인	공시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 중 공시하고자 하는 공익법인
공시 대상 서류	1.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의무공시 [별지 제31호 서식] 2. 결산서(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3.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 4.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별지 제31호 서식 _ 부표 1] 5.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별지 제31호 서식 _ 부표 2] 6.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별지 제31호 서식 _ 부표 3] 7.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 등의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별지 제31호 서식 _ 부표 4] 8.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별지 제31호 서식 _ 부표 5]	1.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자율공시 [별지 제31호의2 서식]
공시 방법	-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 공익법인공시 > 결산서류 등 공시 - (공시기한) 사업연도 종료후 4개월 내	
제출 제외 법인	1. 총자산가액 5억 미만인면서 수입금액,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 미만인 공익법인 2. 종교법인	

2.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구분	내 용
대상 법인	-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부금단체로 지정하는 법정·지정기부금단체
공개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 공익법인공시 > 법정·지정기부금단체 공개 - (공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3. 공익법인의 제출서류

구분	출연재산 보고서제출대상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 공익법인
대상 법인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모든 공익법인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5억이상 이거나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및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이 3억 이상인 공익법인
제출 대상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2.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 내역서 3.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4.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5. 운용소득의 사용 명세서 6. 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 7. 이사 등 선임명세서 8.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2.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3.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4. 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 5. 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 명세서 6. 정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 7. 보유부동산 명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서면제출)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 공익법인은 일반공익법인이 제출하는 서식 외에 세무확인서, 세무확인결과 집계표 등을 추가제출 하여야 함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등 제출제외 공익법인은 일반공익법인이 제출하는 보고서 제출하여야 함 	
제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제출 제외 법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자산가액 5억 미만이면서 수입금액,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 미만인 공익법인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공익법인(출연자 등이 5%미만 출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감사원의 회계 검사를 받는 공익법인 	





4. 출연재산 보고서 서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2.2.28>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1. 인적사항

① 공익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 대표자		④ 사업연도	
⑤ 소재지		⑥ 전자우편주소	
		⑦ 전화번호	
⑧ 공익사업 유형	1.교육 2.학술·장학 3.사회복지 4.의료 5.종교 6.문화 7.기타		
⑨ 외부세무확인대상	1.여 2.부	⑩ 수익사업 운영	1.여 2.부
⑪ 회계감사이행여부	1.여 2.부	⑫ 성실공익법인여부	1.여 2.부

2. 자산보유현황

⑬ 총자산가액 (⑭+⑮+⑯+⑰+⑱)	⑭ 토지	⑮ 건물	⑯ 주식·출자 지분 등	⑰ 예금·적금 등 금융자산	⑱ 기타

3. 수입원천별 수입금액현황

구분	⑲ 합계 (⑳+㉑+㉒+㉓+㉔)	수익사업							㉕ 기타 수익 사업	㉖ 고유 목적 사업
		금융				부동산				
		㉗ 소계	㉘ 이자	㉙ 배당	㉚ 기타	㉛ 소계	㉜ 임대	㉝ 매각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별지 제24호서식) 2.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2서식) 3.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3서식) 4.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4서식) 5.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별지 제26호서식) 6. 이사 등 선임명세서(별지 제26호의2서식) 7.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별지 제26호의3서식) 8.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수혜자 선정 부정명명세서,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 부정명명세서,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명세서, 보유부동산명세서(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성 방법

1. 인적사항(①~⑫)

- 가. 인적사항란(①~⑦)은 제출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 나. ④사업연도란은 공익법인의 회계기간인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 예) 결산일이 없거나 12월말일인 경우 → 'X1.1.1 ~ 'X1.12.31
 - 결산일이 2월말일인 경우 → 'X1.3.1 ~ 'X2.2.28
- 다. ⑧공익사업 유형란은 주된 공익사업의 유형을 선택하여 “○”표시를 합니다.
- 라. ⑨외부세무확인대상란은 해당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에 따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대상인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 마. ⑩수익사업 운영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여부를 표시합니다.
- 바. ⑪회계감사이행여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이행여부를 표시합니다. (회계감사대상에 상관없이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여’로 표시)
- 사. ⑫성실공익법인여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의 해당여부를 표시합니다.

2. 자산보유현황(⑬~⑱)

- 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의 각 자산종류별 장부가액(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되는 모든 자산의 장부가액)을 적습니다.
- 나. ⑬총자산가액란은 대차대조표상 총자산의 장부가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3. 수입원천별 수입금액현황(⑲~㉘)

- 가. 수입금액란은 수입총액을 적습니다.
- 나. 필요경비란은 각 수입원천별 수입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원가·경비 등 비용을 적으며, 고유목적사업의 필요경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경비를 적습니다.
- 다. 소득금액란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 라. 수입원천별 수입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금융(㉑~㉓): ㉑이자란은 예금의 이자 등을 적고(「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2호), ㉒배당란은 주식의 배당금 등을 적으며(「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3호), ㉓기타란은 주식과 채권 등의 매도에 따른 금액(「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적습니다.
 - (2) 부동산(㉔~㉖): 부동산임대소득 및 부동산 매각금액(「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제5호)을 적습니다.
 - (3) 기타수익사업(㉗): 부동산임대소득 외의 수익사업의 금액(「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제5호)을 적습니다.
 - (4) 고유목적사업(㉘): 금융·부동산 또는 수익사업 외의 것으로서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적습니다.
 - 예) 회비수입, 교비수입, 기부금수입(출연받은 재산)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2.2.28>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구분	①공익법인명		②사업연도					③사업연도					
	①공익법인명		②사업연도					③사업연도					
구분	③출연(운용소득 발생, 매각) 사업연도		④재산종류				⑤용도	⑥기간 ⑥ 사용 시작일 ⑦ 사용 종료일	⑧금액	⑨ 사용금액			
	③출연(운용소득 발생, 매각) 사업연도		분류 코드	과목명	⑤용도					⑩ 직전 연도까지의 사용금액	⑪ 해당 연도 사용금액	⑫ 계 (⑩+⑪)	⑬ 기준미달 사용금액 (⑨-⑫)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													

364mm×257mm(백상지 80g/㎡(제활용품))

작성 방법

1. 이 서식은 출연재산·운용소득 및 재산매각대금에 대하여 사용계획과 그에 따른 연도별 사용내역을 적고, 출연 또는 소득의 발생연도부터 사용이 완료되는 사업연도까지 매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용의무기한 : 출연재산은 3년 이내에 전액 사용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운용소득은 1년 이내에 70% 이상을 사용하고, 매각대금은 3년 이내에 90%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2. 각 재산의 사용계획 및 사용금액은 재산에 따라 나누어 적지 아니하고, ③출연(운용소득발생, 매각)사업연도별, ④재신종류별로 합산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3. ③출연(운용소득발생, 매각)사업연도란은 출연재산의 경우에는 출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운용소득의 경우에는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매각대금의 경우에는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적으며, 사업연도 종료일의 연월(예 : 2005.12)만 적습니다.
4. ④재신종류란은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종류를 다음 분류에 따라 선택하여 코드와 과목명을 적습니다.

코드	1	2	3	4	5	6	7	8	9	10
과목명	헌금	예·적금	토지	건물	주식·출자지분	기계장치	의료장비	채권	차량운반구	기타

5. ⑤용도란은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할 구체적인 내용을 적습니다.
예) 교육사업 중 교사 신축, 도서관 신축, 학교운영비, 수익용 임대건물 등
6. ⑥사용시작일, ⑦사용종료일란은 출연재산·운용소득 또는 매각대금의 사용계획기간을 적습니다.
예) 헌금 10억원을 '05. 3. 1 출연받아 '06. 2. 28까지 학교건물 신축에 사용할 계획인 경우 → '05.3.1 ~ '06.2.28
7. ⑧금액란은 출연재산의 경우 당초 출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출한 출연일분 재산의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2서식)의 ⑩가액과 일치하여야 하고, 운용소득의 경우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4서식)의 ㉞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과 일치하여야 하며, 매각대금의 경우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3서식)의 ① 매각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8. ⑨해당연도 의무사용 기준금액란은 출연재산의 경우 ⑩금액과 동일하게 적고, 운용소득의 경우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4서식)의 해당사업연도 사용실적란(또는 5년간의 평균란)의 ④사용기준액을 적으며, 매각대금의 경우 해당 연도 의무사용 기준금액의 합계액은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3서식)의 ⑥사용기준금액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9. ⑩작성 연도까지의 사용금액, ⑩해당 연도 사용금액란의 출연재산 및 매각대금 사용금액 각 합계액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2서식)와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3서식)의 사용내역란 합계액과 각각 일치하여야 하고, 운용소득의 경우에는 ⑩해당 연도 사용금액란에만 해당 연도의 사용실적을 적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서식] <개정 2012.2.28>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①공익법인명			②사업연도							
③ 사업연도 구분	④ 출연일	⑤출연자 ⑥ 주민등록번호 등 소액계	출 연 재 산				⑪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사용금액	해당 사업연도		
			⑦ 종류		⑧ 소재지	⑨ 수량 (면적)		⑩ 가액	⑫ 사용금액	⑬ 사용처
			코드	과목명						
⑭ 해당 사업연도										
	합 계									
⑮ 직전 사업연도										
	합 계									
⑯ 직전전 사업연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 방법

1. 이 서식은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및 사용명세, 그리고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이 완료되지 아니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해당 사업연도 사용분)를 작성하며, 출연재산별로 출연일이 빠른 순으로 적습니다.
2.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출연받은 재산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사용을 완료한 경우에는 금년도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에 적지 않습니다.
3. 소액계의 ⑩가액란에는 1개 사업연도 중에 50만원 미만을 출연한 자(법인인 제외합니다)가 있는 경우에 소액 출연재산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4. ④출연일란은 출연재산이 공익법인에 귀속된 날짜를 적습니다.
5. ⑤출연자란은 출연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적고, ⑥주민등록번호등란에는 출연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6. 출연재산란(⑦~⑩)은 아래의 설명에 따릅니다.

가. ⑦종류란은 출연재산의 종류를 다음 분류에 따라 선택하여 코드와 과목명을 적습니다.

코드	1	2	3	4	5	6	7	8	9	10
과목명	현금	예·적금	토지	건물	주식· 출자지분	기계 장치	의료 장비	채권	차량 운반구	기타

- 나. ⑧소재지란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적고, 주식 및 유가증권 등의 경우에는 발행회사를 적으며, 그 밖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다. ⑨수량란에는 부동산은 “㎡”단위로, 주식은 “주”단위로, 현물출연은 현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기본단위(예: 기계장치의 경우 “대”)로 적습니다.
예1) 토지 1,000㎡의 경우 ⇨ 1,000 입력
예2) 주식 500주의 경우 ⇨ 500 입력
예3) 기계장치 30대의 경우 ⇨ 30 입력
- 라. ⑩가액란은 출연당시의 시가로 적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따른 평가가액으로 적습니다.
7. ⑫해당 사업연도 사용금액란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⑬해당 사업연도 사용처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습니다.
예) 도서관 신축, 학교운영비, 수익용 임대건물 취득, 장학금 지급 등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3서식] <개정 2012.2.28>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①공익법인명				②사업연도							
③ 매각 연월일	매각재산					⑧ 사용 기준금액 [⑦ × 30 (60, 90) /100]	사용명세			⑫ 미사용 금액 (⑧-⑨-⑩)	
	④종류		⑤ 소재지	⑥ 수량	⑦ 매각 금액		⑨ 직전 사업 연도까지의 사용금액	해당사업연도			
	코드	과목명						⑩ 사용 금액	⑪ 사용처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사업연도(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재산을 매각한 경우로서 매각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이후 3년 동안 매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출연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의 사용을 완료한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④종류란은 매각한 재산의 종류를 다음 분류에 따라 선택하여 코드와 과목명을 적습니다.

코드	1	2	3	4	5	6	7	8	9	10
과목명	현금	예·적금	토지	건물	주식·출자지분	기계·장치	의료·장비	채권	차량·운반구	기타

- ⑤소재지란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적고, 주식 및 유가증권 등의 경우에는 발행회사를 적으며, 그 밖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⑥수량란에는 부동산은 “㎡”단위로, 주식은 “주”단위로, 현물출연은 현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기본단위(예: 기계장치의 경우 “대”)로 적습니다.
 예1) 토지 1,000㎡의 경우 ⇨ 1,000 입력
 예2) 주식 500주의 경우 ⇨ 500 입력
 예3) 기계장치 30대의 경우 ⇨ 30 입력
- ⑦매각금액란은 매각금액총액에서 매각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 ⑧사용기준금액란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경과연수에 따라 ⑦매각금액에 기준율(30/100, 60/100, 90/100)을 곱하여 적습니다.
 예) 매각연월일이 'X1년 4월이고 12월말 법인인 경우
 1차연도('X2년 12월말) : 매각금액에 30/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차연도('X3년 12월말) : 매각금액에 60/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차연도('X4년 12월말) : 매각금액에 90/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⑩해당 사업연도 사용금액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 ⑪해당 사업연도 사용처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매각대금을 사용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습니다.
 예) 도서관 신축, 학교운영비, 수익용 임대건물 취득, 장학금 지급 등
- ⑫미사용금액란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4서식] <개정 2016.3.21.>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①공익법인명	②사업연도
--------	-------

1. 전년도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구분	⑦ 해당 사업연도	⑧ 1년 전 사업연도	⑨ 2년 전 사업연도	⑩ 3년 전 사업연도	⑪ 4년 전 사업연도	⑫ 5년간의 평균 (⑦~⑪의 평균)
③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						
④ 사용기준액 (③× $\frac{(\quad)}{100}$)						
⑤ 1년내 사용실적						
⑥ 과부족액 (⑤ - ④)						

2.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⑬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	가산액			차감액			
	⑭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⑮ 기타	⑯ 소계 (⑭+⑮)	⑰ 출연재산 양도차익	⑱ 법인세 등	⑲ 이월결손금	⑳ 소계 (⑰+⑱+⑲)
㉑ 차가감소득 (⑬+⑯-⑳)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 미달사용액				㉕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㉑+㉒)		
	㉒ 기준미달사용액	㉓ 운용소득 미달사용가산세	㉔ 소계 (㉒-㉓)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작성방법

1. 전년도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 가. "⑥"란부터 "⑫"란까지는 "⑦해당사업연도"의 사용실적이 부족한 경우["⑥과부족액"란이 음수(-)인 경우를 말합니다]에만 적습니다.
- 나. "③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란은 직전 사업연도에 제출한 이 서식의 "⑫해당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다. "④ 사용기준액"란은 "③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 금액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적용합니다.
- 라. "⑤ 1년내 사용실적"란에는 각 사업연도 중 아래 사항에 대한 사용실적을 합하여 적습니다.
 - (1)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데 소요된 비용
 - (2)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한 비용
 - (3)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한 비용
 ※ 수익용 재산 취득에 사용한 운용소득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 가. "⑬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 나. "⑭ 고유목적사업준비금"란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한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다. "⑮ 기타"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 중 "⑬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예 : 분리과세 예금이자소득 등)을 적습니다.
- 라. "⑰ 출연재산 양도차익"란은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출연재산 양도차익을 적습니다.
- 마. "⑱ 법인세 등"란은 해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주민세·농어촌특별세 및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바. "⑲ 이월결손금"란은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 사. "㉑ 기준미달사용액"란은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 중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을 적고, 이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의 "⑦해당사업연도"(또는 "㉒5년간의 평균")란의 "⑥과부족액"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직전 사업연도의 "⑥과부족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절대값을 적습니다).
- 아. "㉓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란은 운용소득 기준미달사용액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2.2.28.>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①법인명				②사업연도							
주식발행법인				공익법인 보유주식							
③ 법인명	④ 사업자 등록번호	⑤ 총발행 주식수	⑥ 계열법인 여부	⑦ 주식수	⑧ 지분을	⑨ 취득 구분	⑩ 취득일	⑪ 취득 가액	⑫ 장부 가액	⑬ 총재산 가액	⑭ 비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성 방법

1.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법인과 그 밖의 법인을 구분하여 따로 적습니다.
(⑥계열법인여부란, 1. 여, 2. 부로 기재)
2. ③법인명란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의 회사명을 적고, ④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주식발행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⑤총발행주식수란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회사가 발행한 총주식수(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합니다)를 적습니다.
4. ⑧지분율란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적습니다.

$$\frac{\text{⑦주식수}}{\text{⑤총발행주식수(의결권없는 주식은 제외)}} \times 100$$

5. ⑨취득구분란은 출연·매입·유상증자·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⑩취득일란에는 주식을 취득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7. ⑪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가액을 적습니다.
8. ⑫장부가액은 대차대조표의 가액을 적습니다.
9. ⑬총재산가액은 보유주식을 제외한 재산의 대차대조표상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10. ⑭비율란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적습니다.

$$\frac{\text{기업집단 내 계열법인별 주식의 ⑪취득가액, ⑫장부가액 중 적은 금액}}{\text{⑬총재산가액}} \times 100$$

VI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 <개정 2012.2.28>

이사 등 선임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공익법인명		사업연도
-------	--	------

1. 이사 등 선임명세

이사 등 인적사항			④ 선임일	⑤ 해임일	⑥ 출연자와의 관계	⑦ 출연법인과의 관계	⑧ 다른 이사 와의 관계	⑨ 초과 여부	⑩ 비고
① 성명	② 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2. 기준초과 이사 및 임·직원에 대한 경비 명세

⑪ 성명	⑫ 주민등록 번호	⑬ 직책	⑭ 취임· 근무일	해당연도 경비 명세						⑰ 합계	⑱ 비고
				⑮ 급료	⑯ 판공비	⑰ 차량 유지비	⑱ 비서실 운영비	⑲ 그 밖의 경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 방법

VI

1. 이사 등 선임명세(㉠~㉡)란에는 공익법인의 전체 이사 및 임원의 명세를 적습니다.
2. 기준초과 이사 및 임직원에 대한 경비 명세(㉢~㉣)란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봅니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원으로 되는 경우에 그 초과한 이사 및 임원에 대한 직접·간접 경비 명세를 적습니다.
 - ※ 이사 또는 임원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 또는 임원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많은 이사 또는 임원분부터 적습니다.
 - 나. 직원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제10항에 따른 의사·교직원 등의 경우를 제외합니다)에는 그 해당직원의 경비 명세를 적습니다.
3. ㉤비고란 및 ㉥비고란에는 이사·임원·직원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서식] <개정 2012.2.28>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공익법인명			사업연도						
특정기업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④ 특정기업 소유주식수	광고·홍보행위 관련비용				⑩ 비고	
① 법인명	② 소재지	③사업자 등록번호		⑤ 계정 과목	⑥ 행위 내용	지출처			⑨ 지출 금액
						⑦ 사업자 등록번호	⑧ 지출처명		

작성 방법

1. 이 서식은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를 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2. ④특정기업 소유주식수란에는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기업의 주식수를 적습니다.
3. 광고·홍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⑤~⑨)란은 계정과목의 분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출된 내역을 적되, ⑥행위내용란에는 다음의 코드에 따라 1·2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코드	행위내용
1	신문, 잡지,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또는 전자광고판을 이용하여 특정기업을 위하여 홍보하거나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는 제외합니다.
2	팸플렛, 입장권 등에 내국법인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는 제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 결산서류 등 공시 서식

가. 의무공시 서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2019년 개정 예정 서식>
 * 시행규칙 개정 이후 확정된 개정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의무공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1. 기본사항

사업연도(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정기공시 [] 해산공시
① 공익법인등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 대표자		④ 설립연월일	
⑤ 소재지		⑥ 전화번호/팩스	/
⑦ 홈페이지 주소		⑧ 전자우편주소	
⑨ 주무관청		⑩ 기부금(단체) 유형	[] 법정 [] 지정 [] 기타
⑪ 설립근거법			
⑫ 설립유형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공공기관 [] 기타		
⑬ 공익사업유형			
⑭ 설립주체	[] 개인 [] 기업 [] 개인-기업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기타		
⑮ 이사수	명	⑯ 자원봉사자 연인원 수	명
⑰ 고용직원수	명		

2. 재무현황

(단위: 원)

구분	⑬ 총자산가액	⑰ 부채	⑳ 순자산			
			㉑ 소계	㉒ 기본순자산	㉓ 보통순자산	㉔ 순자산조정
㉕ 총계 (a=b+c)						
㉖ 공익목적사업						
㉗ 기타사업						

3. 자산현황

(단위: 원)

구분	㉕ 총자산가액	㉖ 토지	㉗ 건물	㉘ 주식 및 출자지분	㉙ 금융자산	㉚ 기타자산
㉕ 총계 (a=b+c)						
㉖ 공익목적사업						
㉗ 기타사업						

4. 수익현황

(단위: 원)

구분	㉑ 총계	㉓ 사업수익					㉙ 사업외수익	㉚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환입액
		㉓ 소계	㉔ 기부금	㉕ 보조금	㉖ 회비 수익	㉗ 기타		
㉕ 총계 (a=b+c)								
㉖ 공익목적사업								
㉗ 기타사업								

5. 비용현황

(단위: 원)

구분	㉑ 총계	㉒ 사업비용				㉔ 사업외 비용 등 기타	㉕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전입액
		㉒ 소계	㉓ 사업 수행비용	㉔ 일반 관리비용	㉕ 모금 비용		
㉕ 총계 (a=b+c)							
㉖ 공익목적사업							
㉗ 기타사업							

6. 세무확인과 회계감사

㉘ 복식부기 여부	[] 여 [] 부	㉙ 적용회계기준	
㉚ 세무확인 여부	[] 여 [] 부	㉛ 외부 회계감사 여부	[] 여 [] 부

210mm×297mm [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2쪽)

7. 확인란

본인은 본 결산서와 결산서에 첨부된 명세 및 보고서들을 검토하였으며, 해당정보를 진실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 _____ 확인일자 : _____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익법인등의 결산서(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2.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 3.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4.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 5.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6.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의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7.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3쪽)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다만,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 제외)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 * 이 서식을 작성할 때는 통합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작성을 위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후의 금액을 적습니다.

1. 기본사항

- 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대하여 공시하는 경우 "해산공시"에, 그 외의 경우 "정기공시"에 √표를 합니다.
- 나. "㉑주무관청"란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주무관청 명칭을 기재하고, 주무관청으로 부터 공익법인등을 관리, 감독 권한을 위임 받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위임 받은 기관의 명칭을 괄호에 기록합니다. (예: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 장학재단인 경우 교육부(교육청), 서울시의 관리 감독을 받는 종교법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 주무관청이 없는 단체의 경우 관할세무서를 주무관청으로 기록합니다.)
- 다. "㉒기부금(단체)유형"란은 해당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제3항 또는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대상 단체인 경우 "법정"에, 「법인세법」 제24조제4항 또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인 경우 "지정"에, 그 밖의 경우 "기타"에 √표를 합니다.
- 라. "㉓설립근거법"란은 아래의 설립 근거법 중에서 해당되는 법을 선택하여 모두 적습니다.

1. 민법,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3. 사회복지사업법, 4. 사립학교법, 5. 의료법, 6. 협동조합기본법, 7. 기타 법률, 8. 해당없음

- 마. "㉔설립유형"란은 해당되는 단체유형에 √표를 합니다.
- 「민법」이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표를 합니다.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표를 합니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등은 기타에 √표를 합니다.
- 바. "㉕공익사업유형"란은 1. 교육, 2. 학술·장학, 3. 사회복지, 4. 의료, 5. 예술·문화, 6. 기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 사. "㉖설립주체"란은 설립주체(기본재산 출연자)에 √표를 합니다.

※ 설립주체

- (개인) 개인 또는 가족이 설립한 단체, (기업) 기업이 설립한 단체, (개인-기업) 개인과기업이 동일한 출연금으로 설립한 단체
- (국가) 국가(정부) 및 공공기관이 설립한 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단체
- (기타) 그 밖의 주체가 설립한 단체
- 개인과 기업이 함께 출연하여 설립한 경우에는 개인출연금이 기업출연금보다 크면 '개인'을, 기업출연금이 개인출연금보다 크면 '기업'을 선택합니다.

- 아. "㉗이사 수"란은 사업연도 말 현재 이사회 구성원(등기사항증명서상 이사)인 이사 수를 적습니다(법인이 아닌 단체는 정관요건 충족한 이사 기재).
- 자. "㉘자원봉사 수"란은 자원봉사자 연인원을 적습니다.
(예: 1명의 자원봉사가 365일 봉사활동을 수행했을 경우, 1×365=365명)
- 차. "㉙고용직원 수"란은 공익법인 등의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을 포함한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상시인원을 합하여 기재하고 일용직은 제외)를 기재합니다.
※ 연 평균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상시 고용직원 수 합계 / 사업연도 월수)

2. 재무현황

- 가. "㉚총자산~㉜순자산조정"란은 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상 총자산가액 및 부채, 순자산 가액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공익목적사업"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을 말합니다(예: 문화예술 전시사업, 연주회 등 공익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입장료 수익 등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지만 공익목적사업부문으로 구분합니다).
 - * "기타사업"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

※ 공익목적사업 부문과 기타사업 부문 구분 시 참고사항

- 정관에 기재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공익목적 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업은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하며, 공익목적활동의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이라도 기념품 판매, 카페 운영, 금융소득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자산 투자 등은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방법

3. 자산현황

- 가. "㉞주식및출자지분"란은 공익법인등이 보유한 주식(보통주, 우선주 포함)이나 출자지분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 나. "㉟금융자산"란은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보통예금, 당좌예금, 취득 시 만기가 3개월인 금융상품등)과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고 있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펀드상품, 저축성 보험상품 등 및 국채, 회사채등 유가증권(㉞주식 및 출자지분 제외)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정기예금 등에서 발생한 미수이자는 금융자산란에서 제외합니다.
- 다. "㊱기타 자산"란은 공익법인등이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미수이자, 미수임대료, 선금급 등 ㉞부터 ㉞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적습니다.

4. 수익현황

- 공익법인등의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상 사업수익과 사업외수익,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가. "㉞기부금"란은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기부금 합계를 공익목적사업에 적습니다.(예: 00모금회로부터 수령한 지원금)
 - 나. "㉟보조금"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 등과 같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적습니다.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받은 보조금(예 :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축진 지원금 등)은 사업외수익에 적습니다.
 - ※ 보조사업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
 - 다. "㊱회비수익"란은 공익법인등이 회원을 대상으로 받는 회비를 적습니다. 회원을 대상으로 발생하지만 일반적인 매출(재화·용역 제공) 거래는 회비수익이 아닙니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이지만 납부에 따른 혜택이 없거나, 납부가 강제되지도 않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경우에는 명목상 회비일 뿐 기부금과 동일한 성격이므로 "㉞기부금"란에 적습니다.
 - 라. "㊲기타"란은 기부금, 보조금, 회비수익 외의 사업수익을 적습니다.
 - 마. "㉞사업외수익"란은 사업수익이 아닌 수익 또는 차익으로서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에 사업외수익으로 기재되는 유형·무형 자산처분이익, 유형·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바. "㉞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란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부문에서 고유목적사업부문에 전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된 금액과 미사용되어 임의 환입된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 ※ 공익목적사업의 수익에 대한 세부현황은 6쪽 "9. 공익목적사업의 수익 세부현황"에 적습니다.
 - ※ 기타사업의 수익에 대한 세부현황은 6쪽 "10. 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에 적습니다.

5. 비용현황

- 공익법인등의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상의 사업비용과 사업외비용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가. "㉞사업수행비용"란은 공익법인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혜자, 고객, 회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6쪽 "11.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의 사업수행비용 총 합계)을 적습니다.
 - 나. "㉟일반관리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의 기획, 인사, 재무, 감독 등 제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6쪽 "11.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의 일반관리비용 총 합계)을 적습니다.
 - 다. "㊱모금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의 모금 홍보, 모금 행사, 기부자 리스트 관리, 모금 고지서 발송 등의 모금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6쪽 "11.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의 모금비용 총 합계)을 적습니다.
 - ※ 공익목적사업의 비용에 대한 세부현황은 6쪽 "11. 공익목적사업비용 세부현황"에 각각 적습니다.
 - ※ 기타사업의 비용에 대한 세부현황은 6쪽 "10. 기타사업손익 세부현황"에 적습니다.

6. 세무확인과 회계감사

- 가. "㉞복식부기 여부"는 공익법인등이 복식부기 회계처리 방식을 적용한 경우 '복식'에 √표를 하고, 그 외의 경우는 '단식'에 √표를 합니다.
- 나. "㉟적용회계기준"은 공익법인이 회계처리 시 적용한 다음의 회계기준 중 하나를 기재하며, 기타의 경우 적용한 해당회계기준 명칭을 괄호 안에 기재합니다.

1. 공익법인 회계기준, 2.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3.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4.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 5. 기타(****기준)

- 다. "㊱세무확인 여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경우 "여"에, 받지 않은 경우 "부"에 √표를 합니다.
- 라. "㊲외부 회계감사 여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여"에, 받지 않은 경우 "부"에 √표를 합니다.(예 : 공익법인등의 상근 혹은 비상근 내부감사에게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부"에 √표를 합니다.)



(제5쪽)

8.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①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현황

② 사업내용(중복체크 가능)

- []문화예술(코드1100) []스포츠(코드1200) []기타 레크리에이션 및 봉사 클럽(코드1300)
- []초등 및 중등 교육(코드2100) []고등교육(코드2200) []기타교육(코드2300) []학술연구(코드2400)
- []장학(코드2500) []영유아보육(코드2600)
- []병원 및 재활시설(코드3100) []요양원(코드3200) []정신 건강 및 위기게임(코드3300) [] 기타 보건서비스(코드3400)
- []사회복지(코드4100) []긴급상황 및 구호(코드4200) []소득 지원 및 보존(코드4300)
- []환경(코드5100) []동물(코드5200)
- []경제, 사회 및 지역사회개발(코드6100) []주거(코드6200) []고용 및 훈련(코드6300)
- []시민 및 옹호단체(코드7100) []법률 및 법률서비스(코드7200) []정치단체(코드7300)
- []배분(지원) 재단(코드8100) []봉사증진(코드8200) []모금활동(코드8300)
- []국제활동(코드9100)
- []종교단체 및 종교 관련 단체(코드10100)
- []비즈니스연합(코드11100) []전문가연합(코드11200) []노동조합(코드11300)
- []기타(코드12100)

③ 사업대상

- []모두 해당,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다문화), []가족·여성, []일반대중, []기타

④ 국내 주요 사업지역

- []전국,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세종, []제주, []해당 없음

⑤ 국외 주요 사업지역

- []전세계,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 []해당 없음

⑥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

1	코드	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원
사업내용			사업지역	
2	코드	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원
사업내용			사업지역	
3	코드	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원
사업내용			사업지역	
4	그 외 사업		개 사업수행비용	원
합 계	총 공익목적사업		개 사업수행비용 합계	원

작성방법

8.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 가. "①공익목적사업 현황"란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주요 업무, 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적습니다.
- 나. "②사업내용"은 공익법인등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모두 √표를 합니다. 모금 후 모금액을 불특정 단체에 배분하거나 지원하는 경우는 "배분(지원) 재단(코드8100)"에 √표를 하고, 모금 후 모금액을 소수의 특정한 단체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모금활동(코드8300)"에 √표를 합니다. 사업내용은 중복체크가 가능합니다(예: 재단이면서 사회복지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배분(지원) 재단"과 "사회복지" 모두 √표를 합니다).
- 다. ③부터 ⑤까지 []에는 공익법인등이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대상, 국내주요사업지역, 국외주요사업지역에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를 합니다.
- 라. ⑥란은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사업내용, 사업지역)을 적습니다. 코드는 "②사업내용"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공익법인등이 수행하는 사업이 3개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비용이 많은 3개 사업의 사업실적은 별도로 적고, 나머지는 '그 외 사업'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 마. ⑥란의 사업수행비용 합계는 1쪽 "5. 비용현황"의 사업수행비용 총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6쪽)

9. 공익목적사업의 수익 세부현황

(단위: 원)

구 분	사업연도(과세기간)	
	당 기	전 기
1. 사업수익		
1) 기부금품		
① 개인기부금품		
② 영리법인기부금품		
③ 모금단체, 재단 등 다른 공익법인등의 지원금품		
④ 기타기부금품		
* 기부물품	당기	전기
①-④에 포함된 기부물품		
2) 보조금		
3) 회비수익		
4) 기타공익목적사업수익		
2. 사업외 수익		
3.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환입액		
4. 총 합계 (1+2+3)		

10. 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

(단위: 원)

구분	① 합계	기타사업손익								⑩ 사업외손익
		사업손익				부 동 산			⑨ 기타	
		② 소계	③ 이자	④ 배당	⑤ 기타 금용	⑥ 소계	⑦ 임대	⑧ 매각		
수익금액										
비용										
이익(손실)										

11.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

(단위: 원)

구 분	사업연도(과세기간)				전 기
	당 기				
	합계	사업 수행비용	일반 관리비용	모금 비용	
1. 사업비용					
① 분배비용(장학금, 지원금 등 수혜자(단체)에게 직접 지급비용)					
1) 국 내					
2) 국 외					
② 인력비용					
③ 시설비용					
④ 기타비용					
2. 사업외비용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4. 총 합계 (1+2+3)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7쪽)

작성방법

9. 공익목적사업 수익 세부현황

가. 기부금(①~④의 합)

- 1) "①개인기부금"란은 개인기부자(후원회원 포함)의 기부금액(기부물품 포함)을 적습니다.
 - 2) "②영리법인기부금"란은 기업의 사회공헌으로 기업과 계약을 맺은 기부금 등 영리법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액(기부물품 포함)을 적습니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기부금은 "③모금단체, 재단 등 다른 공익법인등의 지원금"란에 적습니다.
 - 3) "③모금단체, 재단 등 다른 공익법인등의 지원금"란은 전문모금 및 기금배분단체(예:모금회 등)와 외부공모,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예 : 기업이 출연한 재단, oo협회 등)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지원받은 물품포함)을 적습니다.
 - 4) "④기타기부금"란은 ①부터 ③까지 외의 기부금을 적습니다.
 - 5) "* 기부물품"란은 ①~④ 기부금 항목에 포함된 상품, 제품 등 물품(주식·채권 제외)으로 기부받은 금액을 적습니다.
- 나. "보조금"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 등과 같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적습니다. 사업과 관련 없이 받은 보조금(예 :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축진 지원금 등)은 사업외수익에 적습니다.
- 다. "회비수익"란은 기부금이 아닌 회원의 의무에 의해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수입을 적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수입금액은 여기에 작성하지 않습니다.
- 라. "기타공익목적사업수익"란은 위 항목에서 작성하지 않은 공익목적사업수익금액을 적습니다.(예 : 학교법인의 등록금 수익, 사회복지시설의 사용자부담금 등)을 적습니다.
- 마. "사업외수익"란은 사업수익이 아닌 수익 또는 차익으로서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에 사업외수익으로 기재되는 유형·무형 자산처분이익, 유형·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바.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란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부문에서 고유목적사업부문에 전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된 금액과 미사용되어 임의 환입된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10. 기타사업손익 세부현황

- "기타사업손익"란은 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영성과표상 사업수익, 사업외수익의 합계와 사업비용, 사업외비용의 합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손실)을 금융, 부동산 등 발생 원천별로 구분하여 각각 수익금액, 비용, 이익(손실)에 적습니다.
- 가. "①합계"란은 "사업손익"란의 수익금액, 비용, 이익(손실)금액을 합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나. "⑤ 기타금융"란은 주식과 채권 등의 매도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익 등을 적습니다.
- 다. "⑨ 기타"란은 금융,부동산 임대·매각 수익 외의 기타사업의 사업수익,사업비용 및 사업이익을 적습니다.
"⑩ 사업외손익"란은 공익목적사업 외 기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의 손익을 적습니다.
(예, 부동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처분손익 등)

11. 공익목적사업비용 세부현황

- "공익목적사업비용 세부현황"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영성과표상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을 적습니다.
- 가. "①분배비용(장학금, 지원금 등 수혜자(단체)에게 직접 지급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이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에 직접 지급하는 비용을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나. "②인력비용"란은 공익법인등에 고용된 인력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다. "③시설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의 운영에 사용되는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등 시설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시설보험료, 시설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라. "④기타비용"란은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외의 비용으로서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용역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대손상각비 등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1] <2019년 개정 예정 서식>
 * 시행규칙 개정 이후 확정된 개정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1. 기부금품의 수입·지출 명세서

(단위: 원)

① 월별	② 수입	③ 지출	④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8월			
1월				9월			
2월				10월			
3월				11월			
4월				12월			
5월				합계			
6월				차기이월	-	-	
7월							

2.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 (국내사업)

(단위: 원)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 단체명)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지출목적	④수혜인원 (단체) 수	⑤지출액		
				⑥현금	⑦물품	⑧합계
			명/개			
			명/개			
			명/개			
			명/개			
			명/개			
			명/개			
			명/개			
⑨ 합 계						

3.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 (국외사업)

(단위: 원)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 단체명)	②국가명	③지출목적	④수혜인원 (단체) 수	⑤지출액		
				⑥현금	⑦물품	⑧합계
			명/개			
			명/개			
			명/개			
			명/개			
			명/개			
			명/개			
			명/개			
⑨ 합 계						



(뒤 쪽)

작성 방법

이 서식은 「공익법인 회계기준」상 기부금 수익인식 방법에 따라 작성합니다. (예: ①현금·현물을 기부받은 경우 → 실제 기부받은 시점, ②가상계좌, CMS, 지로, 신용카드 등 납부방법으로 기부받은 경우 → 기부 결제시점(기부금 납부, 출금요청, 신용카드 승인시점 등) 기부금수익으로 계상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직접 반영되는 기부금(출연금)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 다른 공익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

- 가. ①란은 사업연도 개시월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 (앞쪽의 ①란은 12월말 법인을 예로 든 것임)
- 나. ②란과 ③란은 월 두개액을 적습니다.
- 다. 합계란은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전체 수입 및 지출금액을 적습니다.

2. 기부금품 지출명세서 (국내사업)

사업연도(과세기간) 중 동일한 목적으로 유사한 금액을 지출한 비용은 지출목적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연간 100만 원 이상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에 지출한 경우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한 경우는 인적사항 대신 지출사유를 간략히 기재합니다.

- 가. "①(대표)지급처명(성명/단체명)"란은 사업연도 기간동안 수혜받은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개인이나 단체를 합산하여 적는 경우 지출금액이 가장 큰 대표적인 수혜자의 성명 또는 수혜단체명(지급처)을 적고,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개별 수혜자(수혜단체)의 성명(수혜단체명)을 적습니다.

나. "⑤지출액"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한 목적을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구분	수혜자(단체)에게 지출					자산 취득				각종 경비 지출		
	장학	학술	사회복지	문화	기타	금융자산*	부동산	미술품	기타	인건비	임대료	기타
코드	11	12	13	14	15	21	22	23	24	31	32	33

* 금융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보통예금, 당좌예금, 취득 시 만기가 3개월인 금융상품 등)을 제외한 정기예금, 정기적금, 펀드상품, 저축성 보험상품 등 및 국채, 회사채, 주식 및 출자지분 등 유가증권을 취득한 경우 적습니다.

- 다. "④수혜인원(단체) 수"란은 지급된 지원금을 수혜받은 인원 또는 단체 수를 적습니다.
- 라. "⑤지출액"부터 "⑦물품"까지는 사업연도 기간 동안 지급처에게 지출한 금액을 현금지급과 물품지급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마.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작성예시 : 홍길동 외 100명에게 사업연도 기간동안 개인별로 10만원씩 장학금이 지급되고, A복지시설에 노인복지를 위해 물품으로 200만원을 지원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국외의 내국인에게 지급한 장학금 등 포함).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지출목적	④수혜인원 (단체)	⑤지출액		
				⑥현금	⑦물품	⑧합계
홍길동 외	SSSSSS-SSSSSS	장학	101명	10,100,000		10,100,000
A복지시설	111-11-11111	사회복지	1개		2,000,000	2,000,000

3. 기부금품 지출명세서 (국외사업)

사업연도(과세기간) 중 동일한 목적으로 유사한 금액을 지출한 비용은 지출목적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연간 100만 원 이상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에 지출한 경우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한 경우는 인적사항 대신 지출사유를 간략히 기재합니다.

- 가. "①부터 ⑦란"은 "2. 기부금품 지출명세서(국내사업)"의 작성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작성예시 : A국가에 소재하는 B복지시설 외 49개 단체에게 사업연도 기간 동안 아동복지 목적으로 현금 각 40만원, 물품 각 40만원을 지급하고, B국가에 거주하는 외국인(해외동포 등)에게 장학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①(대표)지급처명 (단체명)	②국가명	③지출목적	④수혜인원 (단체)	⑤지출액		
				⑥현금	⑦물품	⑧합계
B복지시설 외	A국가	노인복지	50개	20,000,000	20,000,000	40,000,000
홍길동	B국가	장학금	1명	1,000,000		1,000,000

210mm×297mm [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2] <2019년 개정 예정 서식>
 * 시행규칙 개정 이후 확정된 개정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1. 주식 등의 보유현황

(단위 : 주식 수, 원)

주식명	보유 주식수	주식가액 (장부가액)	보유경위			배당현황	비고
			출연	유상 취득	기타		
합 계							

2. 보유주식 등 변동사항

(단위 : 주식 수, 원)

일자	변동 사유	주식명	주식수	주식가액 (장부가액)	출연자와 주식 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

3. 주식 등의 보유비율

(단위 : 주식 수, %)

주식명	주식수	보유비율			비고
		총발행주식	보유주식수	보유 비율	

4.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주식 등이 차지하는 비율

(단위 : 주식 수, %, 원)

자산총액	주식총액	비율	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뒤 쪽)

5.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 결과

주식명	의결권 행사일	의결권 행사 주식 수	의결권 행사 주식 비율	비 고

작성 방법

1. 주식 등의 보유현황

가. 사업연도말 현재 해당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주식 등의 발행회사별로 적습니다.

나. 주식발행회사별 주식의 장부가액을 그 보유한 사유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

예) 1.10일 대한(주) 발행주식 1,000주(시가 100백만원)를 무상으로 출연받음

2.10일 대한(주) 발행주식 2,000주를 250백만원에 유상 취득

3.10일 대한(주)가 100% 무상증자를 실시해 무상주 3,000주 수령

⇒ 주식이액(장부가액) : 350백만원

보유경위(출연) : 100백만원, 보유경위(유상 취득) : 250백만원, 보유경위(기타) : 0원

* 출연 : 무상으로 수증받은 경우만을 적음

* 유상 취득 : 출연재산, 매각대금 등을 재원으로 유상 취득하는 경우만을 적음

2. 보유주식 등 변동사항

가. 기중 보유주식 변동사항을 적습니다.

나. 변동사유란에는 보유주식이 증감하게 된 사유를 적되, 다음 구분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1. 무상 수증 2. 유상 취득 3. 매각 4.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 5. 기타

다. 주식이액(장부가액)란에는 증가의 경우에는 (+) 금액을 적고 감소의 경우에는 (-) 금액을 적습니다.

3. 주식 등의 보유비율 : 사업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4.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주식 등이 차지하는 비율 : 사업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5.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 결과 :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 공익법인이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 주식명, 의결권 행사일,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 수 및 비율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3] <2019년 개정 예정 서식>
 * 시행규칙 개정 이후 확정된 개정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1. 출연자(기부자)

(단위 : 원)

(1) 설립시 출연자(기부자)

①성명 (사업자명)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출연재산 종류	④출연가액	⑤이사장과의 관계	⑥비고

(2) 당해 사업연도 출연자(기부자)

⑦성명 (사업자명)	⑧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⑨출연재산 종류	⑩출연가액	⑪이사장과의 관계	⑫비고

2. 이사 등 구성원 현황

⑬성명	⑭상임, 비상임 구분	⑮출연자와의 관계	⑯출연법인과 의 관계	⑰다른 이사 와의 관계	⑱직전 5년 계열기업 임원 근무여부	⑲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성 방법

1. 출연자(기부자)

가. 이 서식의 작성대상은 설립시와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기부)한 출연자이며,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장부가액 기준)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을 출연한 자는 제외합니다.

나. "출연재산 종류"에는 다음 표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코드	1	2	3	4	5	6	7	8	9	10
재산종류	현금	예금·적금	토지	건물	주식·출자지분	기계장치	의료장비	채권	차량운반구	기타

다. "이사장과의 관계"에는 사업연도말 현재 출연자가 이사장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표에서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코드	특수관계 설명
1	친족,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4) 친생자로서 타인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국기령§1의2 ①)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포함, 이하 같음)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임원, 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자(상증령§2의2 ②)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코드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포함) * 법인령§20 ① 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포함)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코드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코드1]부터 [코드3]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코드1]부터 [코드3]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코드3]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코드1]~[코드5]의 자 또는 본인과 [코드1]~[코드5]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등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코드1]~[코드6]의 자 또는 본인과 [코드1]~[코드6]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코드1]~[코드7]의 자 또는 본인과 [코드1]~[코드7]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2. 이사 등 구성원 현황

이사 등 구성원 현황(㉓~㉙)란에는 공익법인의 전체 이사 및 임원의 명세를 적습니다.

가. "㉓출연자와의 관계", "㉔출연법인과와의 관계", "㉕다른 이사와의 관계"란에는 이사 등의 구성원이 출연자, 출연법인, 다른 이사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위 "1.다."의 표를 참고하여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나. "㉖직전 5년 계열기업 임원근무여부"란은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사외이사 제외)으로 퇴직 후 5년 경과여부를 기재합니다.

다. "㉗비고"란에는 이사와 임원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 방법

1. 이 서식은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에 대하여 출연받은 사업연도부터 사용이 완료되는 사업연도까지 매년 작성합니다.
2. "③ 출연받은 사업연도"란은 출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예: 2013. 1. ~ 2013. 12.)를 적습니다.
3. "④ 코드", "⑤ 종류"란은 다음 분류에 따라 적습니다.

코드	1	2	3	4	5	6	7	8	9	10
재산종류	현금	예금·적금	토지	건물	주식·출자지분	기계장치	의료장비	채권	차량운반구	기타

4. "⑥ 가액"은 출연당시의 시가로 적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따른 평가가액을 적습니다.
5. "⑧, ⑩ 직접공익목적사용금액"란은 출연재산을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6. "⑨, ⑫ 수익사업사용금액"란은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7. "⑬ 미사용금액"란은 출연재산을 해당 사업연도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적습니다.
8. "⑭ 미사용사유 또는 사용계획"란은 출연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 출연재산을 이후 사업연도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 그 사용계획을 적습니다.
(예: 정관상 사용이 제한된 재산, 20xx년 전액 사용 예정)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5] <2019년 개정 예정 서식>
 * 시행규칙 개정 이후 확정된 개정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①공익법인명	②사업연도
--------	-------

1. 전년도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구분	⑦ 해당 사업연도	⑧ 1년 전 사업연도	⑨ 2년 전 사업연도	⑩ 3년 전 사업연도	⑪ 4년 전 사업연도	⑫ 5년간의 평균 (⑦~⑪의 평균)
③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						
④ 사용기준액 (③ × $\frac{(\quad)}{100}$)						
⑤ 1년내 사용실적						
⑥ 과부족액 (⑤ - ④)						

2.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⑬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	가산액				차감액			
	⑭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⑮ 해당 사업연도 (과세기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	⑯ 기타	⑰ 소계 (⑭+⑮+ ⑯)	⑱ 출연재산 양도차익	⑲ 법인세 등	⑳ 이월결 손금	㉑ 소계 (⑱+⑲+⑳)
㉒ 차감소득 (⑬+⑰-㉑)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 미달사용액				㉕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㉒+㉔)			
	㉓ 기준미달사용액	㉔ 운용소득 미달사용가산세	㉖ 소계 (㉓-㉔)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성 방법

1. 전년도 운용소속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 가. "㉔"란부터 "㉖"란까지는 "㉑해당사업연도"의 사용실적이 부족한 경우["㉔과부족액"란이 음수(-)인 경우를 말합니다]에만 적습니다.
 - 나. "㉓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란은 직전 사업연도에 대해 제출한 이 서식의 "㉒해당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다. "㉔사용기준액"란은 "㉓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 금액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적용합니다.
 - 라. "㉕1년내 사용실적"란에는 각 사업연도 중 아래 사항에 대한 사용실적을 함하여 적습니다.
 - (1)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데 소요된 비용
 - (2)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한 비용
 - (3)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인의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한 비용(「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급산입한 법인 등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적습니다.)
 - (4) "㉓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직전 사업연도에 대해 제출한 이 서식의 "㉒해당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사업연도에 대해 제출한 이 서식의 "㉑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급에 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 ※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에 사용한 운용소득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속의 계산

- 가. "㉑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 나. "㉒고유목적사업준비금"란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한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습니다.
- 다. "㉒기타"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 중 "㉑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예 : 분리과세 예금이자소득 등)을 적습니다.
- 라. "㉑출연재산 양도차익"란은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출연재산 양도차익을 적습니다.
- 마. "㉑법인세 등"란은 해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주민세·농어촌특별세 및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바. "㉑이월결손금"란은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 사. "㉑기준미달사용액"란은 직전 사업연도에 사용기준금액보다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운용소득을 적고, 이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에 대해 제출한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의 "㉑해당사업연도"(또는 "㉑5년간의 평균")란의 "㉑과부족액"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직전 사업연도에 대해 제출한 운용소득사용명세서의 "㉑과부족액"이 음수인 경우에만 그 금액을 절대값으로 적습니다).
- 아. "㉑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란은 운용소득 기준미달 사용액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나. 자율공시 서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 <2019년 개정 예정>
 * 개정서식은 시행규칙 개정 이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자율공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1. 기본사항

사업연도(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정기공시	[] 해산공시
① 공익법인등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 대표자			④ 설립연월일	
⑤ 소재지			⑥ 전화번호/팩스	/
⑦ 홈페이지 주소			⑧ 전자우편주소	
⑨ 주무관청			⑩ 기부금(단체) 유형 [] 법정 [] 지정 [] 기타	
⑪ 설립근거법				
⑫ 설립유형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공공기관 [] 기타			
⑬ 공익사업유형				
⑭ 설립주체	[] 개인 [] 기업 [] 개인·기업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기타			
⑮ 이사수	명		⑯ 자원봉사자 연인원 수	명
⑰ 고용직원수	명			

2. 재무현황

(단위: 원)

구분	⑬ 총자산가액	⑰ 부채	⑳ 순자산			
			㉑ 소계	㉒ 기본순자산	㉓ 보통순자산	㉔ 순자산조정
㉕ 총계 (a=b+c)						
b 공익목적사업						
c 기타사업						

3. 자산현황

(단위: 원)

구분	㉕ 총자산가액	㉖ 토지	㉗ 건물	㉘ 주식 및 출자지분	㉙ 금융자산	㉚ 기타자산
㉕ 총계 (a=b+c)						
b 공익목적사업						
c 기타사업						

4. 수익현황

(단위: 원)

구분	㉑ 총계	㉒ 사업수익					㉓ 사업외수익	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㉕ 소계	㉖ 기부금	㉗ 보조금	㉘ 회비수익	㉙ 기타		
㉕ 총계 (a=b+c)								
b 공익목적사업								
c 기타사업								

5. 비용현황

(단위: 원)

구분	㉕ 총계	㉖ 사업비용					㉗ 사업외비용 등 기타	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㉙ 소계	㉚ 사업수행비용	㉛ 일반관리비용	㉜ 모금비용	㉝ 기타		
㉕ 총계(a=b+c)								
b 공익목적사업								
c 기타사업								

6. 세무확인과 회계감사

㉙ 복식부기 여부	[]여 []부	㉚ 적용회계기준	
㉛ 세무확인 여부	[]여 []부	㉜ 외부 회계감사 여부	[]여 []부

210mm×297mm [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2쪽)

7. 확인란

본인은 본 결산서와 결산서에 첨부된 명세 및 보고서들을 검토하였으며, 해당정보를 진실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

확인일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제출서류	해당없음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VI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다만,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 제외)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 이 서식을 작성할 때는 통합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작성을 위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후의 금액을 적습니다.

1. 기본사항

- 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대하여 공시하는 경우 "해산공시"에, 그 외의 경우 "정기공시"에 √표를 합니다.
- 나. "㉔주무관청" 란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주무관청 명칭을 기재하고, 주무관청으로 부터 공익법인등을 관리, 감독 권한을 위임 받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위임 받은 기관의 명칭을 괄호에 기록합니다. (예: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 장학재단인 경우 교육부(교육청), 서울시의 관리 감독을 받는 종교법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 주무관청이 없는 단체의 경우 관할세무서를 주무관청으로 기록합니다.)
- 다. "㉕기부금(단체) 유형"란은 해당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제3항 또는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대상 단체인 경우 "법정"에, 「법인세법」 제24조제4항 또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인 경우 "지정"에, 그 밖의 경우 "기타"에 √표를 합니다.
- 라. "㉖설립근거법"란은 아래의 설립 근거법 중에서 해당되는 법을 선택하여 모두 적습니다.

1. 민법,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3. 사회복지사업법, 4. 사립학교법, 5. 의료법,
6. 협동조합기본법, 7. 기타 법률, 8. 해당없음

- 마. "㉗설립유형"란은 해당되는 단체유형에 √표를 합니다.
 - 「민법」이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표를 합니다.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표를 합니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등은 기타에 √표를 합니다.
- 바. "㉘공익사업유형"란은 1. 교육, 2. 학술·장학, 3. 사회복지, 4. 의료, 5. 예술·문화, 6. 기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 사. "㉙설립주체"란은 설립주체(기본재산 출연자)에 √표를 합니다.
 - ※ 설립주체
 - (개인) 개인 또는 가족이 설립한 단체, (기업) 기업이 설립한 단체, (개인·기업) 개인과기업이 동일한 출연금으로 설립한 단체
 - (국가) 국가(정부) 및 공공기관이 설립한 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단체
 - (기타) 그 밖의 주체가 설립한 단체
 - 개인과 기업이 함께 출연하여 설립한 경우에는 개인출연금과 기업출연금보다 크면 '개인'을, 기업출연금이 개인출연금보다 크면 '기업'을 선택합니다.
- 아. "㉚이사 수"란은 사업연도 말 현재 이사회 구성원(등기사항증명서상 이사)인 이사 수를 적습니다(법인이 아닌 단체는 정관요건 충족한 이사 기재).
- 자. "㉛자원봉사 수"란은 자원봉사자 연인원을 적습니다. (예. 1명의 자원봉사자가 365일 봉사활동을 수행했을 경우, 1+365=365명)
- 차. "㉜고용직원수"란은 공익법인 등의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을 포함한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상시 인원을 합하여 기재하고 일용직은 제외)를 기재합니다.
 - ※ 연 평균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상시 고용직원 수 합계 / 사업연도 월수)

2. 재무현황

- 가. "㉝총자산~㉞순자산조정"란은 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상 총자산가액 및 부채, 순자산 가액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공익목적사업"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을 말합니다(예 : 문화예술 전시사업, 연주회 등 공익목적으 로하는 사업의 입장료 수익 등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지만 공익목적사업부문으로 구분합니다).
 - ※ "기타사업"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

※ 공익목적사업 부문과 기타사업 부문 구분 시 참고사항

- 정관에 기재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공익목적 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업은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하며, 공익목적활동의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이더라도 기념품 판매, 카페 운영, 금융소득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자산 투자 등은 기타 사업부문으로 구분합니다.



(제4쪽)

작성방법

3. 자산현황

- 가. "주식및출자지분"란은 공익법인등이 보유한 주식(보통주, 우선주 포함)이나 출자지분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 나. "금융자산"란은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보통예금, 당좌예금, 취득 시 만기가 3개월인 금융상품)과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고 있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펀드상품, 저축성 보험상품 등 및 국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주식 및 출자지분 제외)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정기예금 등에서 발생한 미수이자도 금융자산란에서 제외합니다.
- 다. "기타 자산"란은 공익법인등이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미수이자, 미수입대료, 선금금 등 ㉠부터 ㉢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적습니다.

4. 수익현황

- 공익법인등의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상 사업수익과 사업외수익,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가. "기부금"란은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기부금 합계를 공익목적사업에 적습니다.(예: 모금회로부터 수령한 지원금)
 - 나. "보조금"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 등과 같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적습니다.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받은 보조금(예 :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축진 지원금 등)은 사업외수익에 적습니다.
 - * 보조사업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
 - 다. "회비수익"란은 공익법인등이 회원을 대상으로 받는 회비를 적습니다. 회원을 대상으로 발생하지만 일반적인 매출(재화·용역 제공) 거래는 회비수익이 아닙니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이지만 납부에 따른 혜택이 없거나, 납부가 강제되지도 않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경우에는 명목상 회비일 뿐 기부금과 동일한 성격이므로 "기부금"란에 적습니다.
 - 라. "기타"란은 기부금, 보조금, 회비수익 외의 사업수익을 적습니다.
 - 마. "사업외수익"란은 사업수익이 아닌 수익 또는 차익으로서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에 사업외수익으로 기재되는 유형·무형 자산차분이익, 유형·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바.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란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부문에서 고유목적사업부문에 진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된 금액과 미사용되어 임의 환입된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 * 공익목적사업의 수익에 대한 세부현황은 6쪽 "9. 공익목적사업의 수익 세부현황"에 적습니다.
 - * 기타사업의 수익에 대한 세부현황은 6쪽 "10. 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에 적습니다.

5. 비용현황

- 공익법인등의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상의 사업비용과 사업외비용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가. "사업수행비용"란은 공익법인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혜자, 고객, 회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6쪽 "11.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의 사업수행비용 총 합계)을 적습니다.
 - 나. "일반관리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의 기획, 인사, 재무, 감독 등 제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6쪽 "11.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의 일반관리비용 총 합계)을 적습니다.
 - 다. "모금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의 모금 홍보, 모금 행사, 기부자 리스트 관리, 모금 고지서 발송 등의 모금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6쪽 "11.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의 모금비용 총 합계)을 적습니다.
 - * 공익목적사업의 비용에 대한 세부현황은 6쪽 "11. 공익목적사업비용 세부현황"에 각각 적습니다.
 - * 기타사업의 비용에 대한 세부현황은 6쪽 "10. 기타사업손익 세부현황"에 적습니다.

6. 세무확인과 회계감사

- 가. "복식부기 여부"는 공익법인등이 복식부기 회계처리 방식을 적용한 경우 '복식'에 √표를 하고, 그 외의 경우는 '단식'에 √표를 합니다.
- 나. "적용회계기준"은 공익법인이 회계처리 시 적용한 다음의 회계기준 중 하나를 기재하며, 기타의 경우 적용한 해당회계기준 명칭을 괄호 안에 기재합니다.

1. 공익법인 회계기준, 2.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3.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4.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 5. 기타(****기준)

- 다. "세무확인 여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경우 "여"에, 받지 않은 경우 "부"에 √표를 합니다.
- 라. "외부 회계감사 여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여"에, 받지 않은 경우 "부"에 √표를 합니다.(예 : 공익법인등의 상근 혹은 비상근 내부감사에게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부"에 √표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5쪽)

8.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①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현황

② 사업내용(중복체크 가능)

- [] 문화예술(코드1100) [] 스포츠(코드1200) [] 기타 레크리에이션 및 봉사 클럽(코드1300)
 [] 초등 및 중등 교육(코드2100) [] 고등교육(코드2200) [] 기타교육(코드2300) [] 학술연구(코드2400)
 [] 장학(코드2500) [] 영유아보육(코드2600)
 [] 병원 및 재활시설(코드3100) [] 요양원(코드3200) [] 정신 건강 및 위기개입(코드3300) [] 기타 보건서비스(코드3400)
 [] 사회복지(코드4100) [] 긴급상황 및 구호(코드4200) [] 소득 지원 및 보존(코드4300)
 [] 환경(코드5100) [] 동물(코드5200)
 [] 경제, 사회 및 지역사회개발(코드6100) [] 주거(코드6200) [] 고용 및 훈련(코드6300)
 [] 시민 및 옹호단체(코드7100) [] 법률 및 법률서비스(코드7200) [] 정치단체(코드7300)
 [] 배분(지원) 재단(코드8100) [] 봉사증진(코드8200) [] 모금활동(코드8300)
 [] 국제활동(코드9100)
 [] 종교단체 및 종교 관련 단체(코드10100)
 [] 비즈니스연합(코드11100) [] 전문가연합(코드11200) [] 노동조합(코드11300)
 [] 기타(코드12100)

③ 사업대상

- [] 모두 해당, [] 아동, [] 청소년, [] 노인, [] 장애인, [] 외국인(다문화), [] 가족·여성, [] 일반대중, [] 기타

④ 국내 주요 사업지역

- [] 전국, [] 서울, [] 부산, [] 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 울산, [] 강원, [] 경기, [] 경남, [] 경북,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세종, [] 제주, [] 해당 없음

⑤ 국외 주요 사업지역

- [] 전세계, [] 유럽, [] 아시아, [] 북아메리카, []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 남아메리카, [] 해당 없음

⑥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

1	코드	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원	
사업내용			사업지역		
2	코드	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원	
사업내용			사업지역		
3	코드	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원	
사업내용			사업지역		
4	그 외 사업		개	사업수행비용	원
합 계	총 공익목적사업		개	사업수행비용 합계	원

작성방법

8.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 가. "①공익목적사업 현황"란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주요 업무, 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적습니다.
 나. "②사업내용"은 공익법인등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모두 √표를 합니다. 모금 후 모금액을 불특정 단체에 배분하거나 지원하는 경우는 "배분(지원) 재단(코드8100)"에 √표를 하고, 모금 후 모금액을 소수의 특정한 단체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모금활동(코드8300)"에 √표를 합니다. 사업내용은 중복체크가 가능합니다(예 : 재단이면서 사회복지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배분(지원) 재단"과 "사회복지" 모두 √표를 합니다).
 다. ③부터 ⑤까지 []에는 공익법인등이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대상, 국내주요사업지역, 국외주요사업지역에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를 합니다.
 라. ⑥란은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사업내용, 사업지역)을 적습니다. 코드는 "②사업내용"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공익법인등이 수행하는 사업이 3개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비용이 많은 3개 사업의 사업실적은 별도로 적고, 나머지는 '그 외 사업'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마. ⑥란의 사업수행비용 합계는 1쪽 "5. 비용현황"의 사업수행비용 총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6쪽)

9. 공익목적사업의 수익 세부현황

(단위: 원)

구 분	사업연도(과세기간)	
	당 기	전 기
1. 사업수익		
1) 기부금품		
① 개인기부금품		
② 영리법인기부금품		
③ 모금단체, 재단 등 다른 공익법인등의 지원금품		
④ 기타기부금품		
* 기부물품	당기	전기
①~④에 포함된 기부물품		
2) 보조금		
3) 회비수익		
4) 기타공익목적사업수익		
2. 사업외 수익		
3.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환입액		
4. 총 합계 (1+2+3)		

10. 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

(단위: 원)

구분	① 합계	기타사업손익								⑩ 사업외손익
		사업 손익					부 동 산			
		② 소계	③ 이자	④ 배당	⑤ 기타 금융	⑥ 소계	⑦ 임대	⑧ 매각	⑨ 기타	
수익금액										
비용										
이익(손실)										

11.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

(단위: 원)

구 분	사업연도(과세기간)				
	당 기				전 기
	합계	사업 수행비용	일반 관리비용	모금 비용	
1. 사업비용					
① 분배비용(장학금, 지원금 등 수혜자(단체)에게 직접 지급비용)					
1) 국 내					
2) 국 외					
② 인력비용					
③ 시설비용					
④ 기타비용					
2. 사업외비용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4. 총 합계 (1+2+3)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방법

9. 공익목적사업 수익 세부현황

가. 기부금(①~④의 합)

- 1) "①개인기부금"란은 개인기부자(후원회원 포함)의 기부금액(기부물품 포함)을 적용합니다.
 - 2) "②영리법인기부금"란은 기업의 사회공헌으로 기업과 계약을 맺은 기부금 등 영리법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액(기부물품 포함)을 적용합니다.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기부금은 "③모금단체, 재단 등 다른 공익법인등의 지원금"란에 적용합니다.
 - 3) "③모금단체, 재단 등 다른 공익법인등의 지원금"란은 전문모금 및 기금배분단체(예:oo모금회 등)와 외부공모,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예 : 기업이 출연한 재단, oo협회 등)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지원받은 물품포함)을 적용합니다.
 - 4) "④기타기부금"란은 ①부터 ③까지 외의 기부금을 적용합니다.
 - 5) "* 기부물품"란은 ①~④ 기부금 항목에 포함된 상품, 제품 등 물품(주식·채권 제외)으로 기부받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 나. "보조금"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 등과 같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적용한다. 사업과 관련 없이 받은 보조금(예 :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축진 지원금 등)은 사업외수익에 적용한다.
- 다. "회비수익"란은 기부금이 아닌 회원의 의무에 의해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수입을 적용한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수입금액은 여기에 작성하지 않습니다.
- 라. "기타공익목적사업수익"란은 위 항목에서 작성하지 않은 공익목적사업수익금액을 적용한다.(예 : 학교법인의 등록금 수익, 사회복지시설의 사용자부담금 등)을 적용한다.
- 마. "사업외수익"란은 사업수익이 아닌 수익 또는 차익으로서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에 사업외수익으로 기재되는 유형·무형 자산처분이익, 유형·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의 합계액을 적용한다.
- 바.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란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부문에서 고유목적사업부문에서 전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된 금액과 미사용되어 임의 환입된 금액을 합하여 적용한다.

10. 기타사업손익 세부현황

- "기타사업손익"란은 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영성과표상 사업수익, 사업외수익의 합계와 사업비용, 사업외비용의 합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손실)을 금융, 부동산 등 발생 원천별로 구분하여 각각 수익금액, 비용, 이익(손실)에 적용한다.
- 가. "①합계"란은 "사업손익"란의 수익금액, 비용, 이익(손실)금액을 합한 금액을 각각 적용한다.
- 나. "⑤ 기타금융"란은 주식과 채권 등의 매도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익 등을 적용한다.
- 다. "⑨ 기타"란은 금융,부동산 임대·매각 수익 외의 기타사업의 사업수익,사업비용 및 사업이익을 적용한다.
- "⑩ 사업외손익"란은 공익목적사업 외 기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외 손익을 적용한다.
(예,부동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처분손익 등)

11. 공익목적사업비용 세부현황

- "공익목적사업비용 세부현황"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영성과표상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을 적용한다.
- 가. "①분배비용(장학금, 지원금 등 수혜자(단체)에게 직접 지급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이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에 직접 지급하는 비용을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 나. "②인력비용"란은 공익법인등에 고용된 인력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 다. "③시설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의 운영에 사용되는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등 시설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시설보험료, 시설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 라. "④기타비용"란은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외의 비용으로서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용역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대손상각비 등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6.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서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신설 2012.2.28>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 인 명	
③ 대 표 자 성 명		④ 전 화 번 호	
⑤ 소 재 지		⑥ 사 업 목 적	
⑦ 사 업 연 도		⑧ 설 립 근 거 법	

1. 자산보유현황

구 분		금 액
⑨ 총 자 산 가 액		
자 산 종류별	⑩ 토 지	
	⑪ 건 물	
	⑫ 예·적금등 금융자산	
	⑬ 주 식	
	⑭ 기 타	

2. 수입금액 현황

구 분		금 액
⑮ 총 수 입 금 액		
수 입 원천별	⑯ 금 용	
	⑰ 부 동 산	
	⑱ 기 타 수 익 사 업	
	⑲ 고 유 목 적 사 업	

3. 세무확인결과

⑳ 위 반 금 액		㉑ 외부전문가 종합의견	
-----------	--	--------------	--

4. 외부전문가의 인적사항

㉒ 구 분	㉓ 성 명	㉔ 사업자등록번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공익법인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무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무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제출서류	1.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집계표(별지 제32호서식 부표 1) 2.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 3. 수혜자 선정 부적정 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 부표 3) 4. 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 부적정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 부표 4) 5.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불이행 등 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 부표 5) 6. 보유부동산 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 부표 6) 7.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수지계산서)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작성 방법

1. 자산보유현황

- 가. ⑨란의 총자산가액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는 세무확인 대상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을 적습니다.
- 나. ⑩란부터 ⑭란까지의 자산종류별 가액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해당 계정과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2. 수입금액 내역

- ⑮총수입금액란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수입총액을 적습니다.

3. 세무확인결과

- 가. ⑳란은 부표 1의 ⑮위반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 나. ㉑란은 세무확인 결과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종합검토의견을 간략히 적습니다.

4. 외부전문가의 인적사항

- 가. ㉒란의 구분은 외부전문가의 직업인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 및 합동사무소 등 소속법인명을 적습니다.
- 나. ㉓란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외부전문가의 사업자등록번호(법인소속 등의 경우 해당법인 또는 합동사무소 등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다. 외부전문가가 4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인적사항을 별지로 적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1] <신설 2012.2.28>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사업연도	공익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 원)				
구분	세 무 확 인 항 목		적정여부 ⑮	위반금액 ⑯
	① 합 계			
출연재산 보고 등	②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별지 제23호서식]			
	③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및 진도내역서 [별지 제24호서식]			
	④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의2서식]			
	⑤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의3서식]			
	⑥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의4서식]			
	⑦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별지 제26호서식]			
	⑧이사 등 선임명세서 [별지 제26호의2서식]			
	⑨특정기업을 위한 광고 등 명세서 [별지 제26호의3서식]			
	⑩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 명세서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			
	⑪수혜자 선정 부적정 명세서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3]			
외부전문가 의 세무확인	⑫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 내역 부적정 명세서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4]			
	⑬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명세서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5]			
	⑭ 보유부동산 명세서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6]			
세무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VI

작성 방법

가. ⑮란은 공익법인 제출서류의 관련 법 규정에 대한 위반 여부 등 세무확인 결과를 적습니다.
 나. ⑯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유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51조를 위반한 경우 해당 출연재산의 가액 또는 운용소득금액 및 지출비용 등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 <신설 2012.2.28>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연도	법인명	사업지등록번호	(앞 쪽)
------	-----	---------	-------

① 재산 종류	사 용 수 익 의 재 산				사 용 수 익 의 귀 속 자				⑩ 정상 대가	⑪ 사용 대가	⑫ 사용 수익금액 (⑩-⑪)	⑬ 비교	
	② 출연(취득) 일자	③ 출연자	④ 소재지	⑤ 수량 (면적)	⑥ 액가	⑦ 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사업지등록번호)	⑨ 출연자 등과의 관계					
	합 계												

(단위 : 원, m²)

364mm×257mm [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작성방법

- ※ 작성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및 그 친족 등에게 임대차·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재산을 적습니다.
1. ⑥사용수익재산 가액란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2. ⑨출연자등과의 관계란은 해당 공익법인 또는 출연자외의 관계를 적습니다.
 3. ⑫사용수익금액란은 ⑩란의 정상대기에서 ⑩란의 실제 사용대기를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4. ⑬비고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세제외 사유를 적습니다.





■ 상순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3] <신설 2012.2.28>

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사업연도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 원, m ²)									
			수혜자의 인적사항									
① 재산 종류	② 소재지	③ 수량 (면적)	④ 가액	⑤ 성명	⑥ 직업 (근무처)	⑦ 직위	⑧ 주소	⑨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⑩ 출연지등의 관계			
									합	계		

364mm×257mm [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작성 방법

※ 작성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혜자 선정이 부적당한 경우를 적용합니다.

1. ④가액란은 부적당한 수혜자 선정으로 제공된 재산 또는 경제적이익 등 수혜금액을 적용합니다.
2. ⑩출연자등과의 관계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과 출연자등과의 관계를 적용합니다.
* 친족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4] <신설 2012.2.28>

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연도	법인명	사업지등록번호	(앞 쪽)							
			(단위 : 원, m ²)							
① 재산 종류	출 연 재 산		운 용 현 황			⑩ 적 요				
	② 소 재 지	③ 수량 수령 (면적)	④ 출연재산가액	⑤ 구 분	⑥ 수익금액		⑦ 적정수익금액	⑧ 유 형	⑨ 금 액	
합 계										

364mm×257mm [백상지 80g/m² 또는 종필지 80g/m²]

작성방법

※ 작성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의 내역상 운용·수익사업소득에 대한 탈루사항 등을 적습니다.

*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에 따라 세무사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수익사업에 대한 신고를 한 것과,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이 임대차 등 사용·수익으로 그들에게 귀속되는 경제적인 상당액을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에 따라 작성한 것은 제외합니다.

1. ㉠적정수익금액란은 정상적인 시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시기를 적습니다.
2. ㉡유형란은 수익금액의 오류 또는 탈루유형을 적습니다.
(예) 수입이자누락, 매출누락 등
3. ㉢금액란은 누락된 수익금액 및 ㉠란의 적정수익금액과 실제 수익금액의 차액을 적습니다.
4. ㉣적요란은 해당 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소득의 부정당한 내용을 간략히 적습니다.
(예) - 출연재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 그 내용 등
- 무수익자산의 취득 등 수익사업 운용상의 부정당한 내용 등

364mm×257mm [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5] <신설 2012.2.28>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사업연도		공익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1.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내역

구 분	①	②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및 출연재산금액	③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장부 등	④ 비 고
공익목적 사 업				
수 익 사 업 명				

2. 출연재산 명세 보고 등 불이행 내역

구 분	⑤	⑥ 제 출 여 부	⑦ 미제출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	⑧ 누락 또는 오류 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별지 제23호서식]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 내역서 [별지 제24호서식]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의2서식]				
재산매각대금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의3서식]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의4서식]				
주식(출자지분)보유 명세서 [별지 제26호서식]				
이사 등 선임명세서 [별지 제26호의2서식]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별지 제26호의3서식]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성방법

1.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내역

※ 작성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의 운용내역, 수익 사업에 대한 장부와 중요한 증빙서류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적습니다.

*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에 따라 세무사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수익사업에 대한 신고를 한 것은 제외합니다.

- 가. ①공익목적사업 및 수익사업명란은 해당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명칭을 적습니다.
- 나. ②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및 출연재산금액란은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불이행한 금액을 적습니다.
- 다. ③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장부 등란은 해당 공익목적사업 및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작성·비치해야 할 복식부기형식의 장부로서 의무를 불이행한 주요 장부 또는 장부와 관련된 중요한 증빙서류를 적습니다.

2. 출연재산 명세 보고 등 불이행 내역

※ 작성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출연 재산명세 등의 이행여부에 대한 사항을 적습니다.

VI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6] <신설 2012.2.28>

보유부동산명세서

사업연도		범인명		사업지등록번호				
출연자 (취득일자)	소재지	수량 (면적)	장부가액	재산 종류	출연자 (취득일자)	소재지	수량 (면적)	장부가액
합				계				

364mm×257mm [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7.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서식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 <2019년 개정 예정 서식>

* 시행규칙 개정 이후 확정된 개정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1. 기본사항

① 법인명		② 사업지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기부단체 구분	
⑤ 전자우편주소		⑥ 사업연도	
⑦ 전화번호		⑧ 기부금단체 지정일	
⑨ 소재지			

2.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단위: 원)

⑩ 월별	⑪ 수입	⑫ 지출	⑬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8월			
1월				9월			
2월				10월			
3월				11월			
4월				12월			
5월				합계			
6월				차기이월	-	-	
7월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⑭ 지출월	⑮ 지급목적	⑯ 지급건수	⑰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⑱ 금액
⑲ 연도별	⑳ 지급목적	㉑ 수혜인원	㉒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㉓ 금액
합계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단위: 원)

㉔ 지출월	㉕ 국가명	㉖ 지급목적	㉗ 지급건수	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㉙ 금액
㉚ 연도별	㉛ 국가명	㉜ 지급목적	㉝ 수혜인원	㉞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㉟ 금액
합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또는 제38조제8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제출합니다.

제출인: _____ 년 월 일
(단체의 직인) [인]

국세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 방법

1. 기본사항 : ① ~ ⑨란에는 기부금 단체의 기본사항을 적으며, ④ 기부단체 구분은 전문모금기관, 한국학교, 민법상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등, 비영리외국법인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 ⑩란은 사업연도 개시월부터 사업연도 종료월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앞쪽의 ⑩란은 12월말 법인을 예로 든 것임).
 - ⑪란과 ⑫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
 - 합계란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전체 수입 및 지출 금액을 적습니다.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 국내사업 관련 ○○지원사업(장학금지급 등), 일반관리비, 기금조성비(정기예금 또는 적금 등), 그 밖의 비용(구체적인 내용 기재) 등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매월 같은 목적으로 동일한 사람에게 유사한 금액을 지급한 비용은 ⑭ 지출월란에 적지 않고 ⑰ 연도별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 ⑱란은 연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㉑란 수혜인원은 연간 지급한 실제 인원을 적습니다. 예시) 10명에게 10만원씩 2회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수혜인원은 10명으로 적습니다.

※ 예시(장학금 지급: 10명에게 10만원씩 1월, 2월에 각각 지급, 복지단체 지원: A 복지단체에 2월에 1,000만원, 1회 지원(수혜인원 50명))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1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2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2월	복지단체 지원	1	A복지단체	10,000,000
∴	∴	∴	∴	∴
연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13년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2,000,000
	복지단체 지원	50	A복지단체	10,000,000
합 계		63		12,000,000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대표 지급처명은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구분된 지급처 중 가장 큰 대표 지급처를 적으며,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되, 그 지급금액과 지급내용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 국외사업이 있는 단체는 국가별 지출명세를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㉒란은 해당 연도의 국가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국가명,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8.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서식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서식] <2019년 개정 예정 서식>

* 시행규칙 개정 이후 확정된 개정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1. 단체 인적사항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기부금단체 지정일	
⑤ 소재지		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의무이행 여부		⑧ 의무이행 여부	⑨ 점검결과
⑦ 의 무			
가. 정관 및 실제운영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할 것)			
나. 정관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			
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각 공개할 것			
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마.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2012. 2. 2. 이후 지정된 단체의 경우 해당)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등을 해당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귀하
 제출인 : _____ 년 월 일
 (단체의 직인) [인]

위 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_____ 년 월 일
 국세청장 귀하 (통보기관의 장) [인]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가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 ⑦ 의무란년부터 이까지의 항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한 의무이행 여부등을 점검하는년부터 작성합니다.
- ⑧ 의무이행 여부란은 지정기부금단체가 작성하며, ⑨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1서식] <2019년 개정 예정 서식>

* 시행규칙 개정 이후 확정된 개정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정기부금단체(전문모금기관) 요건충족 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1. 단체 인적사항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기부금단체 지정일	
⑤ 소재지		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		⑧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	⑨ 점검결과
⑦ 지정 요건 및 의무			
가.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마. 5개 사업연도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총 지출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고 기부금의 모집·배분 및 법인의 관라운영에 사용한 비용이 기부금 수입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바.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개별 법인(단체를 포함)별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전체 배분 지출액의 100분의 25 이하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에 따른 출연자 및 같은 영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같은 항 제4호·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없을 것			
사.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각 공개할 것			
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9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귀하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위 단체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국세청장 귀하

(통보기관의 장)

[인]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정기부금단체(전문모금기관)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 ⑧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란은 기부금단체가 작성하며, ⑨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2서식] <2019년 개정 예정 서식>

* 시행규칙 개정 이후 확정된 개정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정기부금단체(한국학교) 요건충족 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1. 단체 인적사항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기부금단체 지정일	
⑤ 소재지		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		
⑦ 지정 요건 및 의무	⑧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	⑨ 점검결과
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일 것		
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학교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다.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교육목적 사업에 지출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9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귀하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위 단체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국세청장 귀하

(통보기관의 장)

[인]

작성 방법

1.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정기부금단체(한국학교)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⑧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란은 기부금단체가 작성하며, ⑨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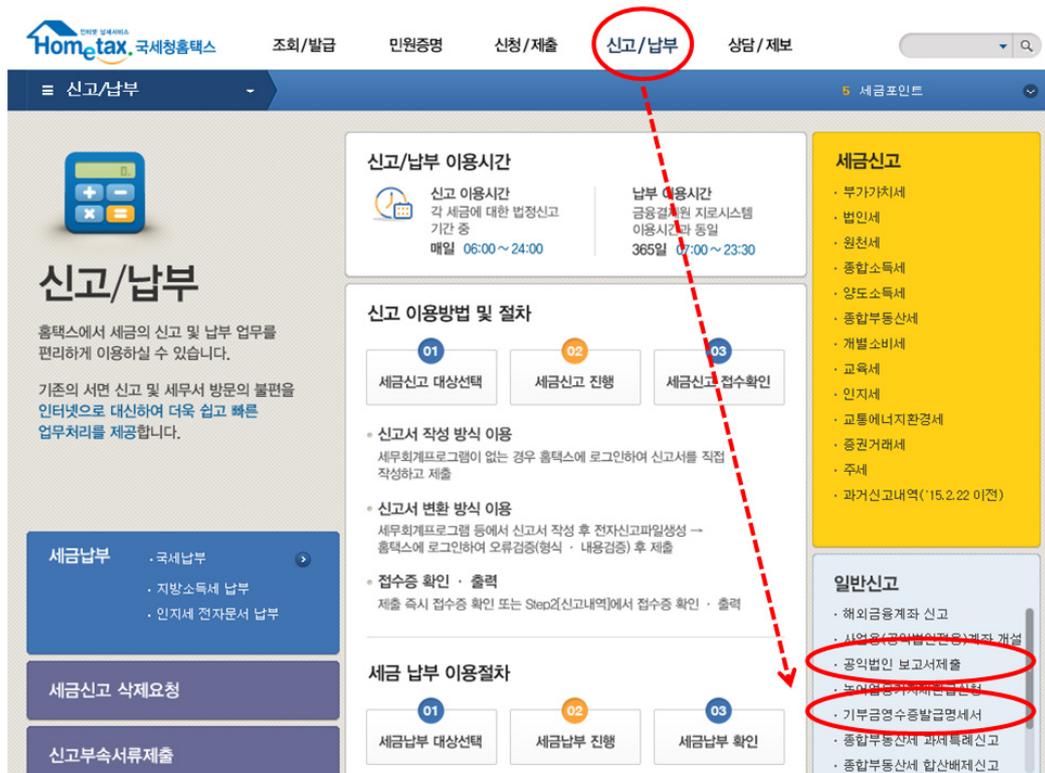


9. 기타 공익법인 관련 서식

서 식 명	내 용	서식번호
기부금단체추천서	주무관청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비영리 법인 등을 기획재정부에 기부금단체로 추천할 때 제출	법규칙 서식 제63호의2
기부금영수증	공익법인 등이 기부금을 받은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작성·보관 ☞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제출	법규칙 서식 제63호의3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법규칙 서식 제75호의2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법규칙 서식 제75호의3
공익법인 과세내용 통보서	세무서장이 공익법인에 증여세 등을 과제한 경우 주무관청에 통보	상증규칙 서식 제27호
공익법인설립허가 등 통보서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을 설립허가·취소 등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	상증규칙 서식 제28호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	전용계좌 사용대상 거래가 아닌 경우 거래일자 등을 작성·보관	상증규칙 서식 제29호
전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	공익법인을 설립한 경우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용계좌 신고	상증규칙 서식 제30호
기부장려금단체지정신청서	기부장려금단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단체가 국세청장에게 신청	조특규칙 서식 제53호의2
기부장려금단체 해당 요건충족 여부 검토서	기부장려금단체가 요건 등을 자체 점검 하여 국세청에 보고	조특규칙 서식 제53호의3
기부장려금신청서	기부장려금단체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부자가 단체에 제출	조특규칙 서식 제53호의4
기부장려금신청명세	기부자의 장려금 신청내용을 기재한 신청명세를 기부장려금단체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조특규칙 서식 제53호의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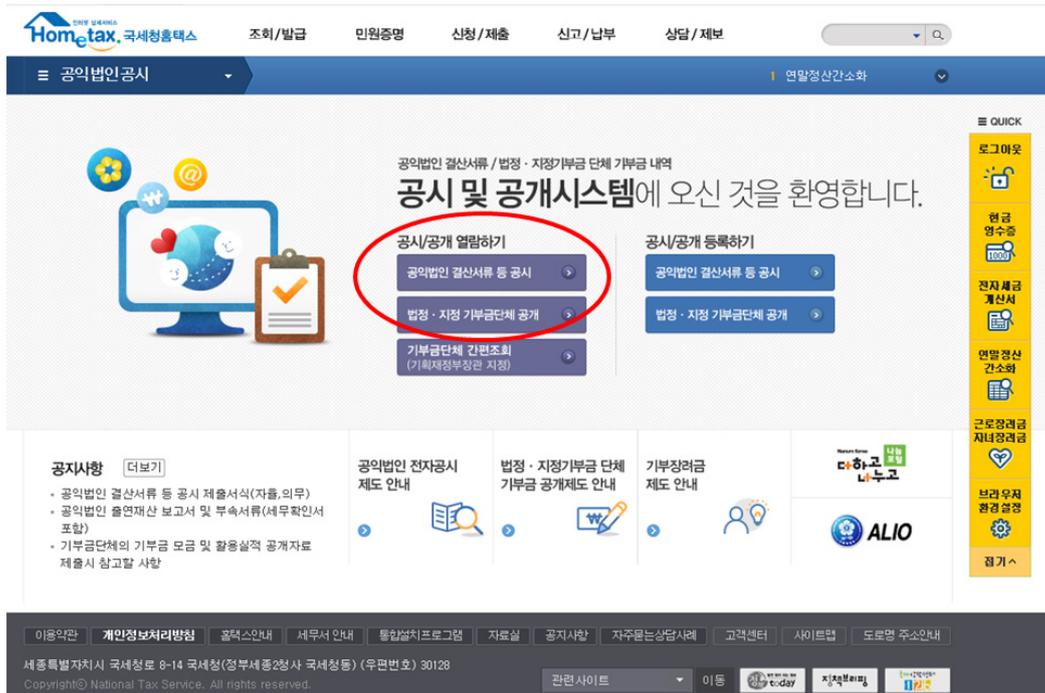
10. 출연재산 보고 등 전자신고 서비스(http://www.hometax.go.kr)



VI



11. 결산서류 등 공시 및 기부금공개시스템(http://www.hometax.go.kr)





공익법인 세무안내

발행일자 : 2019년 2월 일

발행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집필·편집 : 법인세과장 김성환

행정사무관 정승태

국세조사관 박승효

국세조사관 박병진

국세조사관 임정근

인쇄처 : (주)아트팰리스 (02)2277-1088

* 본 책자를 복사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044-204-3327~3330)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